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on Human Rights Education:
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일시·장소 ||

◇ 수도권역

- 일시 : 2007. 2. 22.(목) 10:00 ~ 17:30
- 장소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대회의장

◇ 영남권역

- 일시 : 2007. 2. 23.(금) 10:00 ~ 17:3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 호남권역

- 일시 : 2007. 2. 26.(월) 10:00 ~ 17: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회의장

목 차

진행일정표

- 【 국문 】
- 【 영문 】

초청인사 프로필

개회식

- 【 개회사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환영사 】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
- 【 축 사 】 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

주요 발표문

- 【 발 표 1 】 인권교육 도입하기 - 도전,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 【 발 표 2 】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 【 발 표 3 】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지역별 토론문

- 【 수도권 】
- 【 영남권 】
- 【 호남권 】

부 록

- 【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관련 결정례 】

진행 일정표

<1일차> 수도권(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대회의실)

일시	프 로 그 램
09:30-10:00	◇ 등록 전체진행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장)
10:00-10:30	◇ 개회사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Guy Warrington(주한영국대사관 대리대사) 심은석(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장)
제1부 :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사회 : 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10:30-11:20	◇ 주제발표 - 주제 : 인권교육도입하기-도전,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오슬러 교수(Prof. Audrey Osler, 리즈대학, 영국)
2.22 (목) 11:20-11:40	◇ 지정토론 -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 도입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학장)
11:40-12:00	◇ 자유토론
12:00-13:00	◇ 점심식사 (과학전시관 구내식당)
제2부 :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사회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3:00-13:20	◇ 주제발표 - 주제 :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13:20-14:10	<p>◇ 패널토론 : 한국 학교인권의 현 주소</p> <p>① 학교 인권현황 및 과제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교사)</p> <p>② 학교내 인권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신정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p> <p>③ 가고싶은 학교의 첫걸음,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윤지희(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p> <p>④ 학생인권을 위한 정부의 역할 유윤중(청소년인권교육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p> <p>⑤ 학교에서 인권 인식하기 고옥경(서울 청담중학교 교사)</p>
14:10-15:00	자유토론
15:00-15:20	휴 식
<p style="text-align: center;">제3부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 : 강순원(한신대 교수)</p>	
15:20-16:10	<p>◇ 주제발표</p> <p>- 주제 :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휴 스타키 교수(Prof. Hugh Starkey, 런던대학, 영국)</p>
16:10-16:30	<p>◇ 사례발표 : 아름다운 도전</p> <p>- 도전! 인권교육과 함께 한 1년 지선아 (경기 북창초등학교 교사)</p> <p>- 학교 인권문화 개선 방안 김유성 (경기 죽전고등학교 교감)</p>
16:30-17:30	<p>◇ 종합토론 : 휴 스타키, 오슬러 교수와 함께</p> <p>-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역할 모색</p> <p>- 영국 사례의 한국내 창조적 적용 및 실천방안</p>
17:30	- 폐회

<2일차> 영남권(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일시		프 로 그 램
2.23 (금)	09:30-10:00	◇ 등록 전체 진행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장)
	10:00-10:30	◇ 개회사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Judith Gough(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이상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 시상식 : 동변중학교(인권교육연구학교)
	제1부 :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사회 : 김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0:30-11:20	◇ 주제발표 - 주제 : 인권교육도입하기 - 도전,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오슬러 교수(Prof. Audrey Osler, 리즈대학, 영국)
	11:20-11:40	◇ 지정토론 -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보장체계의 강화 김중섭 (경상대학교 교수) -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해 학교를 참여와 자치의 민주공화국으로 심정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1:40-12:00	◇ 자유토론
	12:00-13:00	◇ 점심식사 (회의장 앞 산마루골프터)
	제2부 :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사회 : 심정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3:00-13:20	◇ 주제발표 - 주제 :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13:20-14:10	◇ 패널토론 : 한국 학교인권의 현 주소 ① 학교 인권실태와 인권개선 방향 김민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교사)

		<p>② 구호, 논의, 정책속에 갖혀 있는 학생인권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김정숙(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p> <p>③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교육현실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p> <p>④ 학교의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이수남(대구 영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p>
14:10-15:00	자유토론	
15:00-15:20	휴식	
제3부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사회 : 김중섭 (경상대학교 교수)
15:20-16:10	<p>◇ 주제발표</p> <p>- 주제 :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휴 스타키 교수(Prof. Hugh Starkey, 런던대학, 영국)</p>	
16:10-16:30	<p>◇ 사례발표 : 아름다운 도전</p> <p>- 학교를 '어울림'의 공간으로 이성일(대구 동변중학교 교사)</p> <p>- 학교 인권문화 개선방향 지경진(경북 교육연구원 연구사)</p>	
16:30-17:30	<p>◇ 종합토론 : 휴 스타키, 오슬러 교수와 함께</p> <p>-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역할 모색</p> <p>- 영국 사례의 한국내 창조적 적용 및 실천방안</p>	
17:30	- 폐회	

<3일차> 호남권(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일시		프 로 그 램
2.26 (월)	09:30-10:00	◇ 등록 전체진행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장)
	10:00-10:30	◇ 개회사 : Warwick Morris(주한 영국 대사) ◇ 환영사 : 김호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영찬(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제1부 :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사회 : 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10:30-11:20	◇ 주제발표 - 주제 :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휴 스타키 교수(Prof. Hugh Starkey, 런던대학, 영국)
	11:20-11:40	◇ 지정토론 - 학교에서 인권문화 만들기: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영국 인권교육의 시사점 정경수(전남대학교 교수)
	11:40-12:00	◇ 자유토론
	12:00-13:00	◇ 점심식사 (고양부패)
	제2부 :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사회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13:00-13:20	◇ 주제발표 - 주제 :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13:20-14:10	◇ 패널토론 : 한국 학교인권의 현 주소 ① 학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인가? 김재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p>② 교원의 입장에서 보는 학교 인권현황 및 과제 기노확(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지부, 교장)</p> <p>③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 윤민자(참교육학부모회 광주전남지부, 정책실장)</p> <p>④ 청소년 단체에서 바라본 학교 인권방향 이재웅(광주YMCA청소년인권센터, 활동가)</p> <p>⑤ 학생인권 인식하기 배이상헌(전남여자고등학교 교사)</p>
14:10-15:00	자유토론	
15:00-15:20	휴 식	
<p>제3부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사회 : 안 진 (광주신학대 교수)</p>		
15:20-16:10	<p>◇ 주제발표</p> <p>- 주제 : 인권교육도입하기-도전,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오슬러 교수(Prof. Audrey Osler, 리즈대학, 영국)</p>	
16:10-16:30	<p>◇ 사례발표 : 아름다운 도전</p> <p>-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체험프로그램 운영사례 이경아(전북 옥구초등학교 교사)</p> <p>-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방안 최형찬(전북 설천고등학교 교사)</p>	
16:30-17:30	<p>◇ 종합토론 : 휴 스타키, 오슬러 교수와 함께</p> <p>-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역할 모색</p> <p>- 영국 사례의 한국내 창조적 적용 및 실천방안</p>	
17:30	- 폐회	

Programme

○ **February 22, 2007, Seoul**

09:30	10:00	Registration <i>Moderator: Mr. Chul-hong Kim Director of School Education Team, NHRCK</i>
10:00	10:30	Opening Statement <i>Mr. Kyong Whan Ahn, Presiden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i> Welcoming remarks <i>Mr. Guy Warrington, Chargé d'Affaires, British Embassy Seoul</i> <i>Mr. Eun-Seog Sim, Director General of School Policy Development Bureau,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i>
Session 1. Introduction of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School Education <i>Moderator: Ms. Young-hee Na Director General of Human Rights Education Department in NHRCK</i>		
10:30	11:20	Theme Presentation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i>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i>
11:20	11:40	Panel Discussion The Need for Both Universality and Differentiation in Human Rights Education <i>Prof. Soon-Won Kang, Hanshin University</i> The Introduction of a Children's Rights Perspective into Korean Schools <i>Prof. Yeon-jae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i>
11:40	12:00	Open Discussion
12:00	13:00	Lunch
Session 2.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Korean Experiences <i>Moderator: Ms. Ok-kyeong Hwang Professor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i>		
13:00	13:20	Theme Presentation 2006 Survey of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Prof. Kum-joo Cho, Department of Education of Sangmyung University</i>
13:20	14:10	Panel Discussion :

	<p>The Human Rights Situation - The Stakeholders' Perspectives</p> <p>① Human Rights Situation and Challenges in Korea <i>Hee-wan Chun, Teacher, Association of Parents for True Education</i></p> <p>②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and Challenges <i>Jeong-ki Shin, Director of Educational Authority Dept.,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i></p> <p>③ Promoting Students' Rights - The First Step Towards Making Better Schools <i>Ji-hee Yun, Co-President, Education and Society</i></p> <p>④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Students' HR <i>Yoon-jong Yoo, Activist in Youth Human Rights Education Network</i></p> <p>⑤ Recognizing Human Rights at School <i>Ok-gyeong Ko, Cheongdam Middle School Teacher</i></p>
14:10 15:00	Open Discussion
15:00 15:20	Break
<p>Session 3. Successful Implanta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p> <p style="text-align: right;"><i>Moderator: Ms. Soon-won Kang Professor of Hanshin University</i></p>	
15:20 16:10	<p>Theme presentation</p> <p>Creating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Lessons from the British Experience <i>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i></p>
16:10 16:30	<p>Case Studie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hallenge! My First Year Teaching the Human Rights Programme <i>Gyeong-ah Lee, Teacher, PokChang Elementary School</i> - How to Enhance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i>Yu-seong Kim, Vice-schoolmaster, Jukjeon High School</i>
16:30 17:30	<p>Open Discussion with Profs. Starkey & Osler modera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in Promoting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Lessons from the British Experience
17:30	Closing Remarks

○ February 23, 2007, Busan

09:30	10:00	Registration <i>Moderator: Mr. Chul-hong Kim (Director of School Education Team, NHRCK)</i>
10:00	10:30	Opening Statement <i>Mr. Kyong Whan Ahn, President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i> Welcoming remarks <i>Ms. Judith Gough, Political Counsellor, British Embassy Seoul</i> <i>Mr. Sang-jin Lee, vice- superintendent, office of educat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i>
Session 1. Introduction of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School Education		<i>Moderator: Mr. Chil-Jun Kim Secretary General of NHRCK</i>
10:30	11:20	Theme speech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i>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i>
11:20	11:40	Panel Discussion Spreading Human Rights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to Protect HR <i>Prof. Joong-seop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i> Making Schools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to Promote Student's Rights <i>Prof. Seong-bo Sim,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i>
11:40	12:00	Open Discussion
12:00	13:00	Lunch
Session 2.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Korean Experiences		<i>Moderator: Prof. Seong-bo Sim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i>
13:00	13:20	Theme Presentation 2006 Survey of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Prof. Kum-joo Cho, Department of Education of Sangmyung University</i>
13:20	14:10	Panel Discussion : The Human Rights Situation - The Stakeholders' Perspectives ①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chools and the Way to Improve It <i>Min-su Kim, Teacher,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i>

	<p>② Students' Human Rights Must Develop Beyond Slogans, Discussions and Policies <i>Jung-sook Kim, Director, Association of Parents for True Education</i></p> <p>③ Looking at the Reality of Korean Education with an Eye to Making Human Rights Open and as Widespread as Possible <i>Wan-ho Oh, President of Korean Human Rights Action</i></p> <p>④ To Enhance Human Rights Culture at School <i>Su-nam Lee, Teacher, Yeungjin High School</i></p>
14:10 15:00	Open Discussion
15:00 15:20	Break
<p>Session 3. Successful Implanta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p> <p style="text-align: right;"><i>Moderator: Prof. Joong-seop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i></p>	
15:20 16:10	<p>Theme speech</p> <p>Creating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Britain <i>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i></p>
16:10 16:30	<p>Case Studies: The Beautiful Challen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Schools Places for "Getting Along" <i>Seong-il Lee, Teacher, Dongbyeon Middle School</i> - How to Improve Human Rights Culture at School <i>Gyeong-jin Ji, Supervisor, Gyeongsangbukdo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e</i>
16:30 17:30	<p>Open Discussion with Profs. Starkey & Osler modera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in Promoting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Lessons from the British Experience
17:30	Closing Remarks

○ February 26, 2007, Gwangju

09:30	10:00	Registration
Opening session		
<i>Moderator: Mr. Chul-hong Kim, Director of School Education Team, NHRC</i>		
10:00	10:30	<p>Opening Statement</p> <p><i>HE Mr. Warwick Morris,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i></p> <p>Welcoming remarks</p> <p><i>Mr. Ho-joon Kim, Senior Commissioner of the NHRCK</i></p> <p><i>Mr. Yeong-chan Lee, Vice-superintendent, office of education of Gwanggu metropolitan city</i></p>
Session 1. Introduction of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School Education		
<i>Moderator: Ms. Young-hee Na</i> <i>Director General of Human Rights Education Department in NHRCK</i>		
10:30	11:20	<p>Theme speech</p> <p>Creating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Britain</p> <p><i>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i></p>
11:20	11:40	<p>Panel Discus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HR Culture in School <i>Prof. Yong-gyo Lee, Gwangju National University</i> - Implications of British Human Rights Education <i>Prof. Kyeong-soo J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i>
11:40	12:00	Open Discussion
12:00	13:00	Lunch
Session 2.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Korean Experiences		
<i>Moderator: Prof. Yong-gyo Lee</i> <i>Gwangju University</i>		
13:00	13:20	<p>Theme Presentation</p> <p>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p> <p><i>Prof. Kum-joo Cho, Department of Education of Sangmyung University</i></p>
13:20	14:10	<p>Panel Discussion :</p> <p>The Human Rights Situation - The Stakeholders' Perspectives</p> <p>① Are Schools Still a Human Rights Blind Spot?</p> <p><i>Jae-hwang Kim, Teacher, The Gwangju Chapter of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i></p>

	<p>②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Human Rights at School from the Teachers' Perspective <i>Noh-hwak Gi, Principal,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i></p> <p>③ Children's Efforts to Make a Better World <i>Min-cha Yun, Policy Director, Association of Parents for True Education</i></p> <p>④ Future Prospects for Human Rights Guidelines at School from Youth Groups' Perspective <i>Woong-jae Lee, Gwangju YMCA Youth Human Rights Centre</i></p> <p>⑤ Recognising Students' Human Rights <i>Sang-heon Bae Lee, Teacher, Cheonnam Girls' High School</i></p>
14:10 15:00	Open Discussion
15:00 15:20	Break
<p>Session 3. Successful Implanta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p> <p style="text-align: right;"><i>Moderator : Mrs, Jin Ahn Professor of Kwang-Ju Theological university</i></p>	
15:20 16:10	<p>Theme speech</p> <p>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i>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i></p>
16:10 16:30	<p>Case Studie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Reality of Running a Human Rights Experience Programme to Raise Awareness of Human Rights <i>Gyeong-ah Lee, Teacher, Okgy Elementary School</i> - How to Make a Human Rights Friendly Culture in Schools <i>Hyeong-chan Choi, Teacher, Seolcheon High School</i>
16:30 17:30	<p>Open Discussion with Profs. Starkey & Osler modera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in Promoting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Lessons from the British Experience
17:30	Closing Remarks

초청인사 프로필

Hugh Starkey

□ 소속 및 직위

- 영국 런던대학교 예술·인문대학 교수



□ 주요 경력

- 유럽위원회 상호 문화적이며, 활동적인 시민의식교육 프로젝트
- “교사교육과 인권”(1996), “인권교육의 도전과제”(1991), “시민의식의 변화 :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의 포함”(2005) 등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인권교육, 반인종주의, 유럽에서의 다문화교육, 개발교육, 언어교육법의 방법론 및 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교재 및 전문보고서 집필

Audrey Osler

□ 소속 및 직위

- 영국 리즈대학 연구교수
- 동 대학 시민의식 및 인권교육센터 소장



□ 주요 경력

-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자문가로 활동 중이며, 영국정부의 지속발전교육 자문단 위원
-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에서 다양한 연구, 훈련, 자문 활동
- “교사, 인권 그리고 다양성 -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의식 교육”(2005), “여성과 배재 : 주제의 재고찰”(2003), “시민의식 및 언어학습 : 국제적 관점에서”(2005) 등 다양한 교재 및 전문보고서 집필

개 회 사

안 경 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주한영국대사관, 교육인적자원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관련 연구학교 및 일선 초·중등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시·도 교육청 장학사님을 모시고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Think UK"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인권교육 및 학교 인권문제에 대한 영국과 한국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이런 뜻 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주한 영국대사관과 교육인적자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 자신이 대학에서 교수로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또한 인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교인권문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생소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용어,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권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인권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선생님, 교장선생님, 장학사님 등 교육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단계를 실시하면서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인권교육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개정안이 고시되어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면 앞으로 인권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도부터 학생인권보호 정책연구학교 32개교를 자체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인권교육 및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영국 등 인권선진국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인권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교육이 학교교육을 방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종종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인권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UN 등 국제사회의 인권교육 기준이 무엇인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경험을 듣고 우리사회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 여러분과 영국의 경험을 매개로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인권적 관점의 도입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인권교육 발전의 디딤돌을 놓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영국의 경험과 한국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인권 존중적 아름다운 문화가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는 지식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서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실과 환경 그 자체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인권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에서의 '인권존중적 분위기'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인권교육은 교사·학생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의 인권신장으로 이어지는 '인권을 위한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현장의 중심이신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행하시는 작은 인권적 실천은 학교 교문 밖으로 흘러 우리 사회 인권향상을 위한 큰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 인권향상이란 책무를 가장 무겁게 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학교내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학기 준비로 여념이 없으실 텐데 먼 거리에서 참석해 주신 선생님, 교장선생님과 장학사님 등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 워크숍을 위해 귀중한 발제문을 준비하시고 영국에서 한국을 방문해 주신 스타키(Hugh Starkey)교수님과 오슬러(Audrey Osler)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의 인권전문가, 교육전문가, 현장 활동가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pening remarks

Ahn, Kyong-whan, President of NHRCK

First of all, I am very pleased to host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human rights education attended by teachers from role model schools for human rights and teachers from othe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uperintendents of regional education offices and co-sponso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British Embass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y special thanks go to Professors Hugh Starkey and Audrey Osler who came a long distance to participate in this workshop and took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s

The British Embassy has launched the "Think UK" campaign this year to promote the United Kingdom in Korea and further upgrade exchanges between Seoul and London. This international workshop demonstrates the spirit of the campaign in its sharing ideas and experiences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s of both countries. Once again, I deeply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cooperation of the British Embass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I, myself, w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now I am in charge of improving human rights in this country. In that context, I am very impressed to see many of you all gather together here to talk about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issues once overshadowed by other issues and deemed negative, have increasingly drawn attention in Korea and I believe someday in the near future, the term "human rights " will become a very familiar and important value.

To make this happen, students should start learning about and practising their human rights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n this respect, you, teachers, principals and superintendents, are the ones who can lead these students along this path. We need your attention and cooperation in this respect.

The United Nations has launched the first stage for the World Program of Human Rights Education from 2005 to 2007 emphasizing that the formal education system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hould incorporate Human Rights into their curricula.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human rights into the formal education system in its seventh curriculum revision this year. If it goes well, this year will be a decisive year for develop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Education intends to designate 32 schools for policy research on students' human rights and this is very encouraging news.

However, compared to human rights advanced countries such as Britain,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 is in its infancy. Due to this slow development, human rights education sometimes has been misunderstood in society. To upgrade human rights education, we should understand w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e and listen to other countries' cases so that we can devise our own method. This workshop has been organized for that purpose.

Based on your experiences in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he Commission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reflect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school governance and the curriculum, thereby encouraging human rights education. Here we could share your difficulties, figure out ways to cooperate, create a human rights friendly culture and gather your wisdoms. I wish this workshop would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nurture such a culture.

Human rights education is not effective if it only consists of teaching students all of the article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closely linked to students' daily lives and experiences. Also, the classroom and other school environments should respect their human rights. That is, students should be able to not only "learn about human rights" but also "learn through human rights."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respects human rights" in school. Moreover,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a "learning for human righ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all agents in education including teachers and students.

I truly believe you working in the field can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and subsequently affect the mind-set and attitude of members of society in the future. As presid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would not spare any effort to nurture schools where everybody's human rights are respected.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thank the education experts and activists for their presentations and debate. Thank you very much.

February, 2007

Ahn, Kyong-whan,

Presid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환영사]

인권 교육 워크숍에 보내는 주한영국대사 메시지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주한 영국대사

처음 한국에 부임했던 1970대 중반부터 한국과 한국민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평화롭게 활발한 민주주의로 변모해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에 널리 잘 알려져 있지만 인권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권 분야의 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입니다. 반기문 장관이 UN사무총장으로 선출되고 강경화 국장이 UN인권이사회 부 판무관으로 임명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오늘과 같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한 영국대사관, 한국 정부, 한국의 주요 인권 기구, 영국에서 온 두 명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 주제를 논의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참석하실 수 있다는 것도 무척 고무적입니다. 이분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인권을 논의하도록 격려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면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완벽한 인권 기록을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정규교과과정에 포함되고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사기획에서부터 장소 선정 참석자 초청까지 오늘 이 행사를 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두 명의 영국인 연사들에게도 개인적인 일정을 포기하고 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참석하셔서 전문지식을 공유해 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광주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다시 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Welcoming remarks

HE Mr. Warwick Morris,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my association with South Korea since the mid-1970s, I have seen for myself the tremendous economic success this country and its people have achieved as well as the peaceful transformation to a lively democracy. The world is now well aware of these achievements, but perhaps less so of the very considerable progress there has also been in regard to human rights. Noteworthy among this progress, has bee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outh Korea's growing international involvement in this field is further reflected in the recent appointments of Ban Ki-moon as the UN Secretary General in New York and Kang Kyung-wha as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30 years ago one could not have held in Seoul an event such as the one taking place today. I am very pleased that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the Korean Government, the country's leading human rights organisation and two experts from the UK have come together to discuss this important subject, of interest not just to our two countries but around the world. It is encouraging too that so many school principals and teachers are participating. They are at the frontline when it comes to stimulating young people to think about and to discuss human rights. There is much we can all learn from exchanging views and discussing together how to move forward. No country has a perfect record. But by ensuring that human rights is a core part of the curriculum and that as many young people as possible understand the rights that they and others should have, we may be able to stop abuses happening in the future. Prevention is always better than cure.

I sh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 their assistance in finding venues, bringing this event to the attention of the participants, providing advice and carrying out a great number of planning and organisational tasks. I also thank the two UK speakers who, as well as sharing their expertise, have given up a lot of personal time to prepare for and participate in these workshops.

Finally, I am very pleased that we are able to hold this event not just in Seoul but also in Busan and Gwangju, and I hope it will be possible for us to do something similar again in the future.

축하 메시지

강경화
(UN인권이사회부판무관)

국제인권교육워크숍에 참석하신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육 전문가, 인권운동가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말씀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 워크숍이 한국 교육인적자원부, 한국 국가 인권위원회, 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여서 더욱 뜻 깊은 것 같습니다. UN인권이사회 판무관실은 다양한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이러한 행사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예라 생각하며 이런 노력들을 더욱 더 권장하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4년 12월 10일, UN 회원국들은 모든 분야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2005년 1일부터 시작될 세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선포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될 세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1 단계는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통합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교육제도가 존중, 참여, 평등, 비차별의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전 세계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교육 정책·과정·도구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까지 다루는 인권교육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인권 교육 실행을 위한 조화롭고 주도, 적극 적인 각 국가정책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대신 할 수는 없다는 점 입니다. 학교 교육에 인권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교육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경제·사회·정치 발전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 입니다. 특히

- 인권교육은 아동 중심의 참여적 교수법을 활성화하여 학습성과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 인권교육은 포괄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별이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증진시킨다.
- 인권교육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민주적 가치 확립을 증진시켜 사회적 통합과 갈등 예방에 기여한다.

이 워크숍은 여러분에게 한영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들을 논의하여 좋은 교육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권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강화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바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워크숍과 앞으로 여러분의 인권 교육 활동이 풍부한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Congratulatory remarks

Ms. Kyung-wha Kang

United Nations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t is my pleasure to send greetings to all of you teachers, principals, other education professionals as well as human rights advocates gathered in Seoul for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Human Rights Education. I am pleased to note that this event is a cooperative effort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Such partnership among various institutions is an example of synergetic efforts that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s very pleased to encourage and support.

As you may know, on 10 December 2004, all Members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proclaimed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starting on 1 January 2005, in order to advanc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in all sectors.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rom 2005 to 2007, is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to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ystems.

On the one hand, this initiative highlights a global consensus that the education system plays a vital role in fostering respect, participati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 our societies. For the education system to play such a rol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 addressing not only educational policies, processes and tools but also the environment within which education takes place - is needed, as underlined in the Plan of Action of the World Programme.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international programmes can only support and not substitute for committed, vigorous and concerted national action. The inf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 should be seen as a priority in the best interest of a nation. It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system as a whole, which in turn plays a fundamental role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 By promoting child-centred and participatory teaching and learning, human rights education improves the quality of learning achievements;
- By promoting learning environments that are inclusive and that foster equal opportunities, diversity and non-discrimination, it supports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schooling;
- By supporting th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by fostering democratic values, it contributes to social cohesion and conflict prevention.

This workshop provides you with an opportunity to exchange British and Korean experiences, discuss related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nd identify good practices.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continue and strengthen your human rights education work,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investment towards fostering just societies in which all human rights of all persons are valued and respected.

I send you my best wishes for a fruitful workshop and for your future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주요 발제문

Theme Presentations

발표(Presentation)

인권교육 도입하기- 도전, 문화, 교육과정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발표(Presentation)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조금주 상명대학교 교수)

발표(Presentation)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Creating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Lessons from Experience of Britain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인권교육의 도입: 변화, 문화, 교과과정

오드리 오슬러 (Audrey Osler)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

■ 서문

이 발표를 통해 저자는 학교가 인권 친화적 제도가 되기 위하여 왜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첫째 영국의 학교들이 처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인권을 통하여 교장, 교사, 학생 및 기타 당사자들의 문제해결과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존중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안할 것이다. 둘째 교육당국과 학교지도자들은 법적구조, 행정제도, 교과과정, 교수법, 학교이념 등이 아동권리협약의 요건과 정신에 부합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할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을 위한 일련의 교수법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이 교과과정과 학교문화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보일 것이다. 끝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의 개발은 단지 교과과정 검토만으로 성취할 수 없으며, 교과과정 및 학교문화(이념) 역시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지도자, 교사, 행정관, 지원부서 직원, 학생, 교사, 학교운영이사)가 협력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변화시키지 않은 채 인권 교과과정만 도입하려고 시도하면,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사이에서 냉소와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 서론

역사적으로 보아도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 적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대다수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비판적 인식 등을 위한 교육을 특별히 다루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대중학교 교육제도는 민주적 가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위계적 혹은 권위주의적 관계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Harber, 2004). 학교는 인권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변화를 감행해야 한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제 중 일부는 학교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권리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들 정부들 가운데 다수는 교육관련 법률 등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들을 개정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도 역시 학교지도자 및 교사와 학생이 함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에 이미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우선시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논문을 통해 저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학교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학교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로 인권교육이 개발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저자는 영국의 학교들이 처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도 일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학교에서 민주적 가치와 아동의 인권을 간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인권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덕적 및 법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현대 학교교육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 혹은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저자는 교육에 대한 권리(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포함)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의 권리와 교육을 통한 권리 역시 다를 것이다 (Verhellen, 2000).

저자는 일련의 교수법 원칙을 개발한 적이 있다 (Osler and Starkey, 1996 and 2005). 이 원칙은 아동권리협약을 이용한 것으로, 명시적인 교육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숨겨진 교과과정이라고도 이야기되는 학교문화와 학교이념에도 적용된다. 저자는 우리가 인권교육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절차를 탐색하기 위하여 이 교수법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가 처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인권교육이 학교개혁과 성공적인 학습공동체 설립 등을 가능케 할 수 있을지 잠재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우선 아동권리협약이 정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아동권리협약과 당사국의 의무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가입당사국은 아동권위원회에 권리이행사항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협약에 가입한 지 2년 후 첫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매 5년 마다 한번씩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부단체(NGO) 역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각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라는 형태로 당사국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어떠한 국가도 아동권의 이행에 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는 아동권을 확대시키는 데 강력한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행정적 및 사회정책적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아동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청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구축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을 비롯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정책 영역들은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단계는 모든 아동들이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이 국제기준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데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III. 학교가 직면한 문제점

오늘날 학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우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발표에서는 아동권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며, 인권교육과 교내 인권문화 개발을 통해 교과과정을 어떻게 지원하고 개별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제안할 것이다.

○ 경쟁적 시험 중심의 환경

영국에서 교사와 학생이 공히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도한 시험 제도이다. 보고에 따르면 유럽 국가 가운데 영국의 아동들이 가장 시험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 한다. 1990년대부터 학생의 성적향상에 대해 교사와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학교 별로 시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시험성적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가장 좋은 학업성적을 보이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런던이나 버밍햄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아동들이 '최고의' 학교에 다니기 위해 상당히 장거리 이동을 할 수도 한다. 사실상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기 보다는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학생들을 등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보다 부유한 중산층 학부모들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보다 많은 물적 자원 및 정보접근 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시험이 증가하면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역시 증가한다. 역설적이지만 최근의 여러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시험으로 인해 아동들은 자신감과 학습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교사, 학부모, 동급생들의 비난이나 실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기배제나 학습회피 등의 행동들을 보이기도 한다 (Osler and Vincent, 2003; Jackson, 2006).

정부는 현재의 시험관련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관료들 사이에서 과도한 시험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신문에서 '학생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시험 삼분의 일로 감소', '교과과정 담당관 시험 과부하 인정'과 같은 기사가 나오고, 뒤이어 자격 교과과정청(QCA)에서 학생이 치러야 할 시험을 감소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신문에 따르면 자격교과과정청 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평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크고, 원래 목적에 맞지도 않는다. 현재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부담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 학습 평가는 중요하다. 하지만 [시험을] 너무 많이 치를 경우 시험과목에만 지나치게 많은 강조가 주어지는 등 교과과정의 균형을 해치는 등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Boston, quoted in Asthana, 2006)

이러한 교과과정의 '왜곡'으로 인해 측정이 쉬운 종류의 지식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아동의 사회적 및 감정적 행복이나 타인의 인권보호, 공감, 관용, 청취, 협력, 평화적 갈등해결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민주적 가치 및 태도, 기술 등은 간과될 수 있다.

○ 모든 이를 위한 접근권의 보장

위에서 논한 시험 중심의 학교환경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영국의 학교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바로 모든 이가 우수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또한 교사가 '시험에 맞춰서' 가르치도록 압력을 받고 교과과정이 왜곡되는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 지원이나 자료가 있어야 성취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교육을 위해 특별한 요구가 추가되어야 하는 학습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이중언어를 쓰는 학습자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아동이 자신의 교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접근가능해야 하며, 학습체계가 이 같은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영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권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에서 퇴학 혹은 자퇴한 아동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 보면, 상당수가 교육에 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나 퇴학 혹은 자퇴 당시 그러한 요구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Osler and Hill, 1999; Osler and Vincent, 2003 참조). 현행 교과과정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실패를 감추기 위해 자퇴 혹은 비행에 빠지는 것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압력으로 인해 교사들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게 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시간을 포함하여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일부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박탈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실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인권의 내용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다룬 이슈들은 아동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발견할 수 있다. 토론거리로 삼을 구체적인 이슈들은 지역뉴스, 국내뉴스, 국제뉴스 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동기부여와 학습의욕을 증진시킬 것이다.

○ 지나치게 많은 교과과정

교사들은 교과과정이 지나치게 많아서 교안을 제대로 개발할 시간조차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교수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교사들이 참여적 및 학생중심적 방식을 포기하고, 설교적 및 일방적 방식을 선호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민주적 환경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데 말이다 (Council of Europe, 1985; Banks et al., 2005).

학교가 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처럼 새로운 주제 혹은 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 받을 때, 교사들은 여기에 반발할 수도 있다. 특히 역사나 지리 과목과 같은 일부 과목의 교사들은 이미 수업시간이 단축된 상황이라 이러한 변화에 특히 반발이 더 심할 것이다. 교사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교과과정의 변화를 교사 업무과중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반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에 발간된 정부의 시민교육 검토에 대해 교사노조 가운데 최대 조직의 대표가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NASUWT은 정부가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 및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지를 표명하는데 동의한다. 학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그러나 이미 지나치게 많은 교과과정과 매일 같이 새롭고 경쟁적인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오늘날 교과과정의 상황에서, 정부가 그러한 포부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학교들은 의문의 눈으로 볼 것이 분명하다. (Keates, 2007)

교과과정 개혁은 교사들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교사들은 개혁의 방향이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혁을 좌초시킬 수도 있다.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일상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연구 결과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인권에 대해 가르칠 경우 학생의 규율과 품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ter and Osler, 2000; O’Cuanachain, 2005). 권리와 의무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아동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권리와 의무를 행할 기회가 생기면 아동은 교사의 권리를 더 잘 인식하기도 한다.

○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요구의 충족

문화적 다양성은 모든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성이 증대되고, 최근까지도 단일사회로 여겨져 왔던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사회, 국가, 지역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비정부단체, 기업, 지역동맹, 국제조직 그리고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Banks et al. 2005)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지역적, 국가적 및 지구적 발전에 대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이러한 토론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토론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된 일련의 원칙을 제공한다. 지구화 된 세계에서 그리고 다문화적 및 다종교적 학교에서는 단일한 문화적 혹은 종교적 틀이나 가치체계에 의존해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 자신의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는 유동적이며 발전한다. 인권은 아동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적 행위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한다.

다문화 학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특정 문화 혹은 민족 집단 출신의 학생들이 다른 집단 보다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문화에 결손이 있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학교의 교과과정이 이들이 이전에 습득한 가정의 문화 및 학습에 기반을 두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자신의 종교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제30조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Ladson-Billings, 1994). 이러한 교과과정은 모든 이가 학교에서 평등하게 참여 및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아동이 사전에 집에서 언어습득, 구전동화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에서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한 권리이기도 한데, 평등하게 참여 및 혜택을 제공하고, 민족, 문화, 출신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시험이나 고등교육, 취업시장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양성평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학교에서도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들에 비해 우수하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교과과정 자료와 교육 일반이 보다 '남학생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여학생의 성취도가 남학생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학교의 제도 보다는 여학생들 자체에 비난이 가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남학생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학생들의 성공을 제한하는 자료를 개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인권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남녀학생 모두가 모든 교과과정

에 공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교과과정에는 보다 훌륭한 직업을 갖기에 좋은 과목이나 시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임금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평등한 임금과 고위직 접근성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서의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인권에 대한 것이다.

○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극복

다른 여러 다문화 민족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로 막은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다.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반대하는 것은 모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필수요소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대중신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극도로 외국인혐오적이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외국인혐오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도록 장려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신문 편집장에게 자신의 관점을 담은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들은 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읽기와 민주적 참여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어린 시민들에게 통일성과 다양성을 교육하기

영국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통일성과 다양성 양자를 모두 교육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한 국제토론에 참여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생들이 사려 깊고, 건설적이고, 지역, 국가, 세계에 기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는 다양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료의식, 통일성 또한 다루어야 한다. ... 통일성은 국민국가가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결속력의 공유를 뜻한다. 다양성은 인종, 계급,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국민국가 내부에서 존재하는 내부적 차이를 뜻한다. (Banks et al., 2005)

인권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관용, 정의, 평등, 존중, 민주주의 등 인권의 주요 개념들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아동은 또한 애국심, 세계시민주의, 안보 등의 개념을 탐구할 필요도 있다.

○ 폭력과 왕따

폭력과 왕따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처럼 영국에서도 심각한 학교 문제다. 하버 Harber (2004)는 학교교육에서 권위주의적 관계가 지배적인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상당수 학교폭력은 학교교육의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인권문화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권위주의 학교문화의 해체를 뜻한다. 그렇다고 교사의 권위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교사들은 또한 아동이 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갖지만 지위와 어린 나이로 인해 특별히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할 책임이 있기도 하다. 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도입할 경우 교내 폭력과 왕따 현상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Carter and Osler, 2000).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무정부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으로 인해 학교의 개념은 시민으로서 아동이 미래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권리를 갖는 공간으로 재개념화 된다. 아동들은 또한 상호간 그리고 교사로부터 존중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호혜적인 권리를 갖는다. 인권은 또한 법제도(교칙)의 의미도 갖는다. 그렇지만 인권은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토론이나 숙고 없이 강요되는 것보다는 학생들과 협력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IV. 아동권리협약과 학교 지도자들의 의무

우리가 제작한 '당신의 학교환경은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기회를 주는가' Does your school environment give everyone a chance to enjoy their rights? 라는 제목의 도구는 학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현재 학교의 현실이 아동권리협약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도구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습자들이 갖는 기본적 제공, 보호, 참여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 질문지에는 학교장이나 교육행정관, 개별 교사 혹은 교사집단 전체, 일부 학생 등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각기 다른 집단은 학생의 권리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신념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지도

자가 인권, 다양성, 평등 교육에 의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교 지도자와 교육행정관은 정치권의 리더십과 적절한 훈련과 같은 효과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불행히도 영국의 교육계 지도자들 사이의 담론에서는 인권과 평등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인권교육에 있어서의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혹은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도 않는다.

영국과 유럽 전반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교장은 모든 이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다 포괄적인 학교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속한 사회가 현저하게 다원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교수법 상 원칙과 인권

우리가 발간한 '시민권의 변화' Changing Citizenship (Osler and Starkey, 2005)에서 저자는 민주적 참여는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학교는 자기의 구조, 조직,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이 교실구성, 교과과정, 교수법에 가지는 시사점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Osler and Starkey, 1996; Osler, 1997; Osler and Starkey, 1999). 개개인이 교수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아동의 학습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개인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과목, 문제되는 학생 등에 관한 다양한 개인적 및 문화적 신념체계와 깊이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문화에 기반한 것이든, 교사로서 혹은 학생으로서의 개인사와 관련된 것이든 간에 공식적인 교사교육 과정과 충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은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이 교육 및 학습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존엄성과 안전 (아동권리협약 서문, 제19조, 제23조, 제28조 2항, 제29조)

학생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의미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있어 교사가 권력의 남용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빈정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있어 교사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욕설과 조롱이 용납되지 않는 교실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교사의 책임이다.

○ 참여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

아동권리협약은 전체적으로 참여의 원칙이 관통하고 있다. 학생은 자신의 일을 계획 및 조직하는 것과 같이 교실 차원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선택, 책임, 협상에 바탕을 둔 접근방식은 매우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팽개쳐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초등교육과정에는 동일한 교사가 교과과정 전영역 혹은 여러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학제적 성격이나 일부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중등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흔히 교과과정 상의 제약과 과목의 전문화로 인해 선택의 폭에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의 자율성과 교사의 통제 범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정체성과 포괄성 (아동권리협약 서문, 제2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중정체성을 포함하여 학생의 정체성 보존 및 개발은 교육과 관련하여 갖는 주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아직 가장 쉽게 침해되는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사는 아동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고 발음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별 아동 및 그의 문화와 가족을 존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다양성을 중요시 하고 다양성과 혼성이 모든 인간공동체의 필수적인 특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문화적, 감정적, 육체적 특징은 결점이 아니라 발전가능성이 있는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체계 혹은 학교나 교실이 다양성을 부인하거나 주변화 시키면, 전제되어 있는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기 쉽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이 교사와 다른 아동이나 학습장애나 일반장애를 가진 아동은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교수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집회와 평화로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두 교실에서 개발되어야 할 일련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의 견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권리와 관해서는, 표현과 의사결정에 관한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법이 유사하게 요구된다. 교육과 학습은 학생-

교사 간 및 학생-학생 간 대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학생이 자신의 요구를 밝혀내는 데 가장 적합한 학습 및 발달 모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교사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수기법을 개발하고 학생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진다는 가정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 안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정보접근 (아동권리협약 제17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사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지 여부와 최소한 부분적이거나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대중매체와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출처로부터 구한 것들이 포함된다. 교사는 아동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읽고 쓰는 능력 뿐만 아니라, 신문, 비디오, 인터넷 자료, 기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영상이미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문제제기, 편견과 차별의 인식 등 영상독해 능력개발과, 연속사진이나 비디오 등 영상자료의 기획 및 제작 기술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 적절한 교수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확인하고, 대중매체를 분석하고, 창조성, 상상력, 비판력, 회의주의적 논증 등을 개발시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교실에서 정보출처의 선택과 배열은 보통 가용한 자원 내에서 교사가 결정한다. 교사는 아동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알아야 할 정보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요구를 확인 및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 프라이버시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수많은 성인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빈틈없이 잘 지키고 있지만, 이 권리는 학교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아동을 다룰 때는 종종 무시된다. 교수법은 아동이 자기의 집과 가족에 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는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아동의 명예를 보호하도록 지침 형태의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동의 경험, 문화, 정체성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 흔히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때는 교사와 학생 간에는 권력관계가 상존하며 이로 인해 때로는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사는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학급토론과 같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로서 하여금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를 찾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이때는 아동에게 최대이익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일차적 고려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같은 교수법 상의 원칙들은 토론을 위해 개발된 것이며, 학교와 교사모임에서 자가평가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코벨과 하위 Covell and Howe (1995)의 작업에 바탕을 두고 또 다른 자가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당신의 학교 환경은 아동권을 어떻게 증진시키는가?' How does your school environment promote children's rights? (Osler and Starkey, 2005, Appendix 4 참조)라는 제목의 이 도구 역시 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도구를 통해 학교가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사용 가능한 것이다.

VI. 결론: 학교 교과과정과 학교문화의 상호 연계적 성격

이 논문을 통하여 저자는 인권교육 교과과정과 문화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는 단순히 학교 교과과정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문화(이념) 역시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권리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지도자, 교사, 행정관, 지원부서 직원, 학생, 교사, 학교운영이사)가 협력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변화시키지 않은 채 인권 교과과정만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사이에서 냉소와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sthana, A. (2006) Exams cut by third as stress on pupils soars 학생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시험 삼분의 일로 감소. The Observer 옵저버, 3월 26일. http://observer.guardian.co.uk/uk_news/story/0,,1739868,00.html#article_continue
- Banks, J.A., Banks, C.A.M., Cortes, C.E., Hahn, C., Merryfield, M., Moodley, K.A., Murphy-Shigematsu, S., Osler, A., Park, C. & Parker, W.C. (2005) Democracy and Diversity: principles and concepts for educating citizens in a global age 민주주의와 다양성: 지구화 시대 시민교육을 위한 원칙과 개념. Seattle, WA,: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교육센터, University of Washington 워싱턴대학교. <http://depts.washington.edu/centerme/DemDiv.pdf>
- Carter, C., & Osler, A. (2000) Human rights, identities and conflict management: a study of school culture as experienced through classroom relationships 인권, 정체성, 갈등관리: 교실 내 관계를 통해 경험한 학교문화 연구.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캠브리지 교육학저널, 30 (3) 335-356.
- Council of Europe 유럽평의회 (1985) Recommendation No R (85) 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회원국의 학교 내 인권교육 및 학습에 대한 장관위원회 권고 R(85)7.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Osler and Starkey (1996)에서 재인쇄.
- Covell, K. and Howe, R.B. (1995) Variations in support for children's rights among Canadian youth 캐나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나타난 아동권 지지양상,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국제아동권저널, 3 (2): 189-96.
- Harber, C. (2004) Schooling as Violence: how schools harm pupils and societies 폭력으로서의 학교교육: 학교가 학생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 London: RoutledgeFalmer.
- Jackson, C. (2006) Lads and Ladettes in School: gender and a fear of failure 학교에서의 청년과청녀: 젠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Keates, C. (2007) <http://www.nasuwt.org.uk/Templates/Internal.asp?NodeID=73085>

- O’Cuanachain, C. (2005)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에서의 시민권교육, In A. Osler (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교사, 인권, 다양성: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교육. Stoke-on Trent: Trentham.
- Osler, A. (1997) Exclusion from School and Racial Equality 학교로부터의 배제와 인종간 평등. London: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인종평등위원회.
- Osler, A., & Hill, J. (1999) Exclusion from school and racial equality: an examination of government proposals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evidence 학교로부터의 배제와 인종간 평등: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 제안의 한 예.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캠브리지 교육학저널, 29 (1) 33-62.
- Osler, A. and Starkey, H. (1996) Teacher Education and Human Rights 교사교육과 인권. London: David Fulton.
- Osler, A., & Starkey, H. (1999) Rights, identities and inclusion: European action 프로그램s as political education 권리, 정체성, 포괄: 정치교육으로서의 유럽 활동프로그램. Oxford Review of Education 옥스포드 교육학리뷰, 25 (1 & 2) 199-215.
- Osler, A. & Starkey, H. (2005) Changing Citizenship: democracy and inclusion in education 시민권의 변화: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와 포괄.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Osler, A. & Vincent, K. (2003) Girls and Exclusion: re-thinking the agenda. 여성과 배제: 의제의 재검토 London: RoutledgeFalmer
- Verhellen, E. (2000) Children’s Rights and Education 아동의 권리와 교육, in: A. Osler (Ed.)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Schools: diversity, identity, equality 학교에서의 시민권과 민주주의: 다양성, 정체성, 평등. Stoke-on-Trent, Trentham.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Audrey Osler

Abstract

In this presentation I will examine the reasons why schools need to change in order to become human rights-friendly institutions. First, I will highlight some challenges facing schools in Britain and suggest how human rights can provide a framework in which school principals, teachers, students and other stakeholders can work together to resolve problems and to create a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the rights of all parties are respected. Secondly, I will consider the responsibilities of education authorities and school leaders in ensuring that legal frameworks, administrative arrangements, curricula, pedagogy and school ethos are in keeping with the requirements and spirit of the CRC. Thirdly, I will propose a set of pedagogic principles which support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seek to demonstrate the implications of these principles for both the school curriculum and school culture. I will conclude by suggesting that the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respecting school cannot be achieved simply by reviewing the school curriculum. What is required is an examination and review of both the curriculum and school culture (ethos). The development of a rights-friendly school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all parties (leaders, teachers, administrators, support staff, students, parents and school governors) need to cooperate. Efforts to introduce a human rights curriculum without simultaneous changes to other aspects of school life are likely to be counter-productive and to promote cynicism and scepticism among learners.

1. Introduction

Historically, across the world children's rights have not been guaranteed in schools, nor has education for democracy, peace, human rights and critical awareness been characteristic of the majority of schooling. Internationally, systems of mass schooling are more frequently characterised by hierarchical and authoritarian relationships than by a

focus on democratic values (Harber, 2004). Schools need to make considerable changes if they are to become human rights-friendly institutions and to successfully introduce programmes of human rights education (HRE).

Some of the triggers for change are external to the school. In ratify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realising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rights of children. They are, in many cases, making changes to the law, including education law, as it affects children. There are equally important changes which need to be made at school level, by school leaders and teachers working together with learners. Many teachers may argue that the pressures on schools are already too great and that HRE is not a priority. In this paper I will attempt to show how the development of HRE programmes and practices can support schools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they face. In other words, I will argue that HRE can be developed as part of the solution to challenges currently faced by schools.

I will examine a number of challenges facing schools in Britain, a number of which may also have some resonance in Korea. I will seek to demonstrate how many of these challenges are directly linked to a neglect of democratic values and children's human rights in schools. I will argue that a focus on children's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a programme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not only a moral and a legal imperative, but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r amelioration of many of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schooling. I will address the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the right to human rights education), as well as rights in education and through education (Verhellen, 2000).

We have developed a set of pedagogic principles (Osler and Starkey, 1996 and 2005) which draw on the CRC and which have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explicit taught curriculum but also for the school culture and etho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hidden curriculum. I will introduce these pedagogic principles to consider how we can approach human rights

education and to explore the processes of developing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Before looking at the challenges facing schools and the potential of HRE to transform schools and enable them to be more successful learning communities, I will focus briefly on the obligations which the CRC places on governments.

2. The CRC and the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All States Parties ratifying the Convention are obliged to submit regular report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how the rights are being implemented. States must report initially two years afte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nd then every five year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s) are also able to submit their own reports. The Committee examines each report and addresses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State Party in the form of "concluding observations". Since no government wishes to receive an unfavourable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of children's rights, this process serves as a powerful mechanism in campaigning for children's rights.

Ratification of the CRC implies the development of legal and administrative and social policy frameworks at national level which will enable children to claim their rights. It also implies mechanisms at national level which enable children whose rights have been violated to appeal and obtain redress. Education policy, as well as other areas of social policy affecting children, needs to conform to the CRC. A first step i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know abou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and the CRC and that they are familiar with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ir relevance to their everyday lives. This implies a programme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all.

3. Challenges facing schools

Schools face a number of challenges which serve to undermine children's opportunities to access a quality education. I will examine these with reference to children's human rights and suggest how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can support the curriculum and enable each child to claim fully their right to education.

Competitive exam-focused environment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both teachers and learners in England is an excessive examination and testing regime. Learners are reportedly the most heavily tested children in Europe. From the 1990s growing numbers of tests were introduced to ensure that teachers and schools were held accountable for learners' progress. Schools' test results were made public to enable parents to identify the examination success rates of individual schools and thus select the schools with the best academic records. In some cities, such as London and Birmingham, children may travel considerable distances to school in an attempt to access the 'best' schools. Rather than parents selecting schools, the reality is that schools are often selecting their pupils, with the most popular schools hugely over-subscribed. These arrangements tend to favour wealthier middle class parents who are best placed to play the system, with greater material resources and access to information.

As the number of tests has grown, so have learners' levels of stress. Paradoxically, there is now a developing body of research to suggest that regular testing can undermine children's self-confidence and commitment to learning and lead to a range of behaviours, such as self-exclusion and opting out of learning, rather than risking failure and the criticism of teachers, parents or peers (Osler and Vincent, 2003; Jackson, 2006).

The government is reviewing policies on testing and there are signs that education ministers recognise that excessive testing can be counter-productive. For example, in 2006, newspaper headlines such as 'Exams cut by third as stress on pupils soars' and 'Curriculum chief admits testing overload' accompanied reports that the official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 would recomme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tests that learners are forced to sit. The chief executive of QCA was reported as saying:

The assessment load is huge. It is far greater than in other countries

and not necessary for the purpose. We are pushing for the overall burden of assessment to be reduced. ...Assessment for learning is critical but stacks of [tests] can distort the balance of the curriculum and put too much emphasis on what is examined. I think this has been happening. (Boston, quoted in Asthana, 2006)

This 'distortion' of the curriculum can lead to an over-emphasis on certain types of knowledge which can be easily measured and less emphasis 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and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values, attitudes and skills essential for living together, such a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others, empathy, tolerance, listening, co-operation, and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Ensuring access for all

The issues discussed above, relating to a competitive examination-focussed school environment, are closely linked to another challenge facing schools in Britain, that of ensuring access for all to a quality education. The distortion of the curriculum, with teachers feeling under pressure to teach 'to the test' also has a direct impact on those learners who require additional support or resources to succeed. Such learners include thos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those who are developing bilinguals and for whom English is an additional language. In order for children to claim their right to education, the curriculum needs to be accessible and the system of learning needs to adapt to meet the needs of these learners.

It is often assumed that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has been realised in higher income countries such as Britain. However, a closer examination of those who are excluded from school or who drop out reveals that a significant number have been identified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or are in the process of being assessed to determine those needs at the time of their exclusion or drop out (see for example, Osler and Hill, 1999; Osler and Vincent, 2003). The current curriculum is not accessible to these students and so they drop out or misbehave in order to cover up their failure to cope.

The pressure to achieve examination success can lead teachers to focus on the needs of those who are not encountering problems at the expense of those who need additional support. This denial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some is more acute in contexts where resources (including teacher time) are limited.

Programmes of education need to be relevant to learners' everyday lives. This will increase motivation. The CRC in its article 29 spells out the right to human rights education. The human rights content should addres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youth. The issues can be identified in co-operation with young people. The specific issues to be discussed can also be drawn from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ws.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 which can support them in living together with others in the local community and prepare them for participation in society, not merely in the economy but also in helping to shape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should increase motivation and commitment to learning.

An over-crowded curriculum

Teachers report that the curriculum is over-crowded and that they have little time to develop their teaching properly. This can have a direct impact on pedagogy, as teachers are tempted to abandon participatory and student-centred approaches to learning in favour of more didactic and autocratic process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best learned in a democratic setting (Council of Europe, 1985; Banks et al., 2005).

When schools are asked to include new curriculum topics or subjects, such as citizenship education or human rights education, teachers may resist. Teachers of subjects such as history or geography, which have already been squeezed of curriculum time, may be particularly resistant to such changes. Teacher unions may also resist curriculum changes which they perceive to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eacher workload. For example, in response to a government review of citizenship education published in January 2007, the leader of one of the largest teacher unions responded:

NASUWT share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tackling racism and

promoting equality and diversity. Schools have a pivotal role to play. ...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schools will be wondering how the Government's ambition can be met in the context of a curriculum which is already overloaded and where new and competing demands seemingly are being made on schools every day.(Keates, 2007)

Curriculum reforms depend on the cooperation of teachers for t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 Teachers are capable of subverting reforms which they do not accept or which do not appear to be in their interests. One way in which teachers can be persuaded to introduce human rights education is to demonstrate that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 can support teachers in their daily work. Research suggests that efforts to give learner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chool decision-making and to teach them about human right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learner discipline and behaviour (Carter and Osler, 2000 O'Cuanachain, 2005).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inter-linked. Young people need to know their rights and be able to claim them. But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y are not afraid to take responsibility in schools where their rights are respected. Indeed, they become more sensitive to the rights of teachers when they have an opportunity to exercis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eeting the needs of multicultural communities

Cultural diversity is a feature of all contemporary industrialised societies. Around the world globalisation processes mean there is increased diversity and also increasing recognition of diversity in societies which until recently characterised themselves as homogeneous. This requires the citizens of multi cultural societies

to understand how they, their community, nation, and region both influence and are being influenced by peopl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usinesses, regional alliances, global organizations, and events around the world.

(Banks et al. 2005)

This will require students to make judgements about these local, national

and global developments. Human rights provide us with an agreed set of principles in which these discussions and our discussion-making can take place. In a globalized world, and in multi cultural and multi-faith schools, it may not be possible to rely on one cultural or religious framework or value system to analyse these problems. Cultures, including our own, are in a state of flux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provide us with a framework in which young people can learn to make assessments about everyday issues, and to apply a critical lens to a range of cultural practices, including our own.

In our multi cultural schools we have observed that, on average, students from some cultural and ethnic groups perform more successfully than others. Rather than explain this in terms of their cultural deficiencies, we need to ensure that the curriculum supports and builds on their previous home-based cultures and learning. Indeed CRC Article 14 guarantees children's right to practice their religion Article 29 says education should encourage children to respect their cultures and those of others Article 30 confirms children's right to learn about their own cultures. In other words, children need to have access to a 'culturally relevant' curriculum (Ladson-Billings, 1994). This is a curriculum that allows all to participate and to succeed at school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which builds on children's' previous knowledge of language learning, story telling and so on, from home. This is about rights in education. It is also about rights through education, to participate and benefit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to have equal access to the examinations, higher educational and the job market, regardless of ethnic, cultural or national origins.

Gender equity

In Britain, as in a number of other countries, girls, as a group, are outperforming boys as a group at school. This has led some commentators to suggest that curriculum materials and schooling generally, should be made more 'boy-friendly'. We need to be wary of such assertions. When girls were achieving less well than boys, the blame tended to be placed on the girls themselves, rather than on the school as an institution. It would be wrong to develop materials which restricted girls' success in an attempt to address the needs of boys and would work contrary to human

rights principles. Schools need to ensure that both boys and girls have access to the full curriculum, including those subjects and examinations which ensure access to the more prestigious careers. It is still the case in Britain that women have not realised, in practice, equal pay and equal access to top jobs, even though equality of pay is guaranteed in law. This is also about human rights in and through education.

Challenging racism and xenophobia

One of the barriers to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to equal access to human rights is, in Britain, as in a number of other multi cultural nation-states, racism and xenophobia. Challenging racism and xenophobia is likely to be an essential element in any programme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example, in Britain, elements of the popular press are extremely xenophobic.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can use these materials and encourage young people to identify elements of xenophobia. Students can write letters to newspaper editors expressing their views. As they do this they are not only learning about human rights but developing skills of media literac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Educating young citizens for unity and diversity

One of the challenges facing policy-makers in Britain is how we should educate for both unity and diversity. As an international panel of scholars has acknowledged:

To effectively prepare students to become reflective, constructive, and contributing local, national, and global citizens, schools must thoughtfully address diversity. But in doing so, schools must also deal with the companion concept, unity. ... Unity refers to the common bonds that are essential for the functioning of the nation-state. Diversity refers to the internal differences within all nation-states that reflect variations in factors such as race, class, ethnicity, religion, language, gender, disability, and sexual orientation.

(Banks et al., 2005)

HRE can contribute to this understanding by encouraging young people to

explore key human rights concepts including, tolerance, justice, equality, respect, and democracy. In our contemporary world young people may also need to explore the concepts of patriotism, cosmopolitanism and security.

Violence and bullying

Violence and bullying are issues which are faced by schools in Britain as in all other regions of the world. Harber (2004) argues that authoritarian relationships are a dominant theme of schooling internationally and that much school violence is a result of the authoritarian nature of schooling. The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culture implies, ultimately, the dismantling of authoritarian school cultures. This does not imply the abandonment of teachers' authority. Teachers' authority is drawn from their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They also need to ensure they guarantee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who although they have equal rights as citizens, are also particularly vulnerable, as a result of their status and youth.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can reduce levels of bullying and violence in schools (Carter and Osler, 2000).

The rejection of authoritarianism does not imply anarchy. Human rights require us to reconceptualise schools as places where young people are citizens and have rights, not just in the future but in the present. They also have reciproc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respect from each other and their teachers. Human rights imply a system of laws (school rules). But these do not have to be imposed and, if introduced in cooperation with students are likely to be more effective than if imposed without debate and reflection.

4.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bligations of school leaders

Our instrument, Does your school environment give everyone a chance to enjoy their rights? Is a useful starting point for school leaders to conduct an audit to ascertain the degree to which their school currently conform to the CRC in practice. It addresses the basic provision,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rights to which learners are entitled under the CRC. It could be completed by the school principal and senior administrators and teachers, by the whole body of teachers and by a sample of students. Our experience suggests that these different groups will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student rights, which themselves can be the basis of a valuable discussi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requires effective and committed leadership. It is not enough, however, to rely on the commitment of school leaders to education for human rights, diversity and equality. School leade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 need effective support and this implies both political leadership and appropriate training. Unfortunately, the discourses of educational leadership in Britain have not always highlighted human rights and equality or given sufficient or explicit emphasis to the role of schools in educating for human rights.

In Britain and across Europe, new legislation requires headteachers to develop more inclusive schools, where the rights of all are upheld. This is the case whether or not communities are visibly diverse. The evidence suggests that headteachers will need support in fulfilling their legal obligations.

5. Pedagogic principles and human rights

In our book *Changing Citizenship* (Osler and Starkey, 2005), we argue that principl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schools and that this requires schools to examine their structures, organisation and management. We have also identified the wide wide-ranging implications of the CRC for classroom organisation, curriculum and pedagogy (Osler and Starkey, 1996; Osler, 1997; Osler and Starkey, 1999). An individual's understanding of pedagogy is likely to be closely related to a range of personal and cultural beliefs about the way children learn, what may be understood by individual intelligence, the subject matter, and the students in question. These

beliefs, whether culturally-based or related to our own biographies as teachers and learners, may or may not be challenged by the formal processes of teacher education. The rights enacted in the CRC suggest a number of principles, outlined below, which should be applied to the processes of teaching and learning.

Dignity and security (CRC preamble, 19, 23, 28.2, 29)

The student's right to dignity implies a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that avoids abuse of power on the part of the teacher, including the avoidance of sarcasm. In this relationship the teacher's own right to dignity should not be forgotten. Teachers need to establish, with their students, a classroom atmosphere in which name calling and mockery are unacceptable. It is the teacher'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are protected from bullying an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in a secure environment.

Participation (CRC 12, 13, 14, 15, 31)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runs through the CRC. Students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exercise choice and responsibility in decisions which affect them at classroom level, for example, in the planning and organisation of their own work. It is noteworthy that approaches based on choice, responsibility and negotiation which are regularly developed with very young children are often abandoned as they grow older. It is, of course, the case that interdisciplinarity and a certain flexibility is built into the primary curriculum in the sense that the same teacher is likely to be responsible for several if not all areas of the curriculum. Although limitations on the choices open to older students are frequently explained in terms of curriculum constraints and subject specialisation, they may also be closely related to teacher beliefs about the extent of children's autonomy and teacher control.

Identity and inclusivity (CRC preamble, 2, 7, 8, 16, 23, 28, 29, 31)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identity,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the multiple identities that individuals may develop, is a key right within education, yet one that is perhaps the most easily violated. Teachers

need to ensure that they meet certain basic requirements, such as correct use and pronunciation of the child's name. Respect for individual children, their cultures and families is critical. This requires us to value diversity in the classroom and to recognise that diversity and hybridity ar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ll human communities. It means seeing children's characteristics, whether cultural, emotional, or physical, as attributes to be built upon, rather than deficiencies. Education systems, schools, and classrooms that deny or marginalise diversity are likely to discriminate against those who do not match the presupposed norm. Children whos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teachers, and those with learning difficulties or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disadvantaged in such systems.

Freedom (CRC 12, 13, 14, 15)

Pedagogy needs to permit maximum freedom of expression and conscience.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ll require a range of skills which need to be developed in the classroom. The right of children to have their opinion taken into account in decisions made about them similarly requires a pedagogy which promotes skills of expression and decision-making. Teaching and learning needs to be based on student-teacher and on student-student dialogue. It assumes a model of learning and development in which the learners will often be best suited to identifying their own needs. The model assumes that teachers are continually developing their own teaching skills and are also open to learn from the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will have certain limita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s, security and dignity of others.

Access to information (CRC 17)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is at least partially dependent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ideas, including information from the mass media and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Teacher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not only does the child have skills of reading and writing to gain access to information but is able to

critically interpret visual images, in newspapers, video, internet sources and other media. Skill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visual literacy include questioning, recognition of bias and discrimination and those skills associated with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visual materials, for example, a photo sequence or video. An appropriate pedagogy will permit students to identify issues about which they wish to learn more, analyse the mass media, encourage creativity, imagination, criticism and scepticism, and arrive at their own judgements. The selection and range of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classroom is usually determined by teachers, within the confines of available resources. While the teache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child is protected from materials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there is also an obligation to develop a pedagogy whereby children have access to information on a need-to-know basis and are encouraged to identify and express their needs.

Privacy (CRC 16)

The right to privacy, which is jealously guarded by so many adults, is often disregarded when we are dealing with children, in the context of the school, the staffroom and the classroom. Pedagogy should respect the child's right to privacy, with regard to family and home, and schools need safeguards, in the form of guidelines, to protect the child's reputation when sharing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While recognising that we often ask personal questions of children in order to build upon their own experiences, cultures and identities, as teachers we need to remember that there exists a power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which may sometimes cause children to reveal more than they might wish to do. The teacher should consider the context, and avoid situations where children may be asked to reveal personal information in public, as for example, in a whole class discussion. If the principle of the child's best interests is consistently applied as a primary consideration, this should not prevent teachers seeking information designed to protect a child judged to be vulnerable in some way.

These pedagogic principles have been developed for debate and for schools and groups of teachers to engage in a process of self-evaluation.

We have drawn on the work of Covell and Howe (1995) to develop another self-evaluation tool How does your school environment promote children's rights? (see Osler and Starkey, 2005, Appendix 4) which draws directly on the CRC. This tool for evaluating the degree to which the school is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s of the CRC can be used by both teachers and students.

6. Conclusions: the interrelated nature of school curriculum and culture

Throughout this paper I have tried to suggest that the HRE curriculum and culture are closely related. The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respecting school cannot be achieved simply by reviewing the school curriculum. What is required is an examination and review of both the curriculum and school culture (ethos). The development of a rights-friendly school is a complex process in which all parties (leaders, teachers, administrators, support staff, students, parents and school governors) need to cooperate. Efforts to introduce a human rights curriculum without simultaneous changes to other aspects of school life are likely to be counter-productive and to promote cynicism and scepticism among learners.

References

- Asthana, A. (2006) Exams cut by third as stress on pupils soars. *The Observer*, 26 March. http://observer.guardian.co.uk/uk_news/story/0,,1739868,00.html#article_continue
- Banks, J.A., Banks, C.A.M., Cortes, C.E., Hahn, C., Merryfield, M., Moodley, K.A., Murphy-Shigematsu, S., Osler, A., Park, C. & Parker, W.C. (2005) *Democracy and Diversity: principles and concepts for educating citizens in a global age*. Seattle, WA: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http://depts.washington.edu/centerme/DemDiv.pdf>
- Carter, C., & Osler, A. (2000) Human rights, identities and conflict management: a study of school culture as experienced through classroom relationships.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0 (3) 335–356.
- Council of Europe (1985) Recommendation No R (85) 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Reprinted in Osler and Starkey (1996).
- Covell, K. and Howe, R.B. (1995) Variations in support for children's rights among Canadian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3 (2): 189–96.
- Harber, C. (2004) *Schooling as Violence: how schools harm pupils and societies*. London: RoutledgeFalmer.
- Jackson, C. (2006) *Lads and Ladettes in School: gender and a fear of failure*.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Keates, C. (2007) <http://www.naswt.org.uk/Templates/Internal.asp?NodeID=73085>
- O'Cuanachain, C. (2005)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In A. Osler (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oke-on Trent: Trentham.
- Osler, A. (1997) *Exclusion from School and Racial Equality*. London: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 Osler, A., & Hill, J. (1999) Exclusion from school and racial equality: an examination of government proposals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evidenc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29 (1) 33–62.

- Osler, A. and Starkey, H. (1996) *Teacher Education and Human Rights*. London: David Fulton.
- Osler, A., & Starkey, H. (1999) Rights, identities and inclusion: European action programmes as political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25 (1 & 2) 199–215.
- Osler, A. & Starkey, H. (2005) *Changing Citizenship: democracy and inclusion in education*.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Osler, A. & Vincent, K. (2003) *Girls and Exclusion: re-thinking the agenda*. London: RoutledgeFalmer
- Verhellen, E. (2000) Children's Rights and Education, in: A. Osler (Ed.)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Schools: diversity, identity, equality*. Stoke-on-Trent, Trentham.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 공동 주관】

조 금 주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침해사례와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학생 인권 개선책을 탐색하였다.

전통사회의 청소년은 미성숙자로서 온전한 사회구성원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모를 비롯한 어른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몸에 익혀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들어 과학과 발달심리학의 발달로 아동과 청소년 일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루소와 듀이의 자연주의적 아동관이 설득력을 얻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성인을 표준으로 하여 미성숙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갖는 온전한 인격체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의 인권논의는 바로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 위에서 배태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두발 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두발의 길이와 스타일을 규제하자 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한다. 1983년 두발 자율화 이후 여기에 대한 규제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가 두발 길이와 스타일에 대한 제한을 학칙으로 규정하자, 학생들은 이 규정에 반발하여 2000년 8월초 거리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9월 학교생활규정 예시 안을 공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예시 안을 통하여 규제 완화를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두발 규제권이 이미 학교장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6월 14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5년 5월 조사 결과, 전체 중학교의 92.6%, 그리고 고등학교의 91.10%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강제로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자유를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각 학교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두발 제한과 관련하여 제정 혹은 개정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될 때는 감독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것,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발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06년 7월, 두발 규제, 강제보충수업 등 학생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서울 D고 3학년 O군에게 학교는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특별교육이수는 퇴학 처분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거운 징계이다. 이에 대해 O군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학생의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뀐 2006년 11월 3일, 두발 제한과 체벌 등 학교 공간의 인권 침해를 그쳐달라는 각종 행사가 이어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두발단속'이 여전히 강행됐다. 수원시 O고에서는 이날 오전 대입 수능시험을 코앞에 앞둔 3학년 전체 남학생을 대상으로 두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아직도 적지 않은 학교에서 강제 두발단속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는 비단 두발, 복장, 용의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강제보충수업, 소지품 검사,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체벌 등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월,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생체벌 금지를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체 지도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8년 3월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체벌 금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9년 2월 국회는 교사 체벌권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2000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사의 체벌 재량권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2002년 6월,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통해 구체적인 체벌 규정을 마련하고 벌점제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 개정을 권고했으나 11월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였다. 2003년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토록 권고하였다. 이어 2004년 6월 대법원은 학생 체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고, 2005년 9월, 교육

인적자원부는 상습 폭력 교사 퇴출 등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학생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O고에서 심각한 학생에게 무려 200대를 때린 과도한 체벌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2006년 8월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법원의 2004년 판례에 따라 '용인되지 않은 체벌'을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감정에서 비롯되거나 공개적으로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협한 물건이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 없는 체벌금지가 자칫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중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항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와 체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침해 현상은 학교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두발, 복장 규제 및 매체를 통한 표현 참여의 제한, 사상, 양심, 종교의 제한,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 일기장,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자유권의 침해가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체벌로 인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부당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보호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빈곤층 및 소외 학생들의 복지권, 정당하게 일할 권리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파악,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둔다.

▣ 학생 인권 유형 분류

평등권	자유권					복지권					
						보호권		건강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문의 자유	표현 및 참여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보장, 통신의 자유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	부당 대우 및 처벌	급식	시설	일할 권리	직업 선택

▣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내용 분석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규칙의 구조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진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학교생활규칙에 근거하여 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두발에서, 복장, 양말, 신발까지 제한을 두고,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생활규칙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의 극복을 위해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칙을 개정·시행하도록 지도해왔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 이후 2006년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칙을 제·개정을 했다고 보고했으나 용모복장이나 학생회, 징계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았으며, 두발 이외에 다른 용모복장 규제에 대한 개정 시도도 별로 없었다. 또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도 90개 학교로 많았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와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두발 관련 대화,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결과, 진정사례의 내용으로는 학생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2001년에 비해 2006년으로 올수록 진정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두발관련 고발내용은 총 495건, 용모관련 114건, 교복관련 81건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자유권 침해가 비일비재하며 이를 시정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설문 조사 결과

학생 인권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현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questionnair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집 방법 및 대상

모집단을 구성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키울 수 있는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층화추출법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 비해 표집의 대표성을 큰 폭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층으로부터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규모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별, 계열별을 고려하여 선정한 총 42개의 학교들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렇게 선정한 학교들을 시도별·지역별 규모로 보면 서울특별시 4개교, 부산 2개교, 대구 3개교, 인천 3개교, 광주 3개교, 대전 3개교, 울산 2개교, 경기 3개교, 강원 2개교, 충북 2개교, 충남 2개교, 전북 3개교, 전남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3개교, 제주 3개교이다.

<표 1> 설문 대상 학교

지역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형태	계열	학교 수
서울(4개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6개교)	국· 공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 -	5개교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인문계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5개교
	사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 -	5개교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인문계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5개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개교)	국· 공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4개교	- -	6개교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3개교	인문계 인문계 2개교 / 실업계 1개교	5개교
	사립	중학교	남중/여중 : 각 1개교 공학 : 4개교	- -	5개교
		고등학교	남고/여고 : 각 1개교 공학 : 4개교	인문계 인문계 3개교 / 실업계 1개교	6개교

설문 대상 학교는 설립별, 단계별, 공학형태도 고루 표집되도록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계고등학교(농업고, 공업고, 정보산업고, 수·해양고, 실업고),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고), 특성화고등학교(조리, 원예, 미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넷 등)로 나누어지는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표집된 42개교 중에는 공업고 1개교, 정보고 2개교, 과학고 1개교, 디자인고 1개교, 대안중학교 1개교, 대안고등학교 1개교 등 7개교가 포함되었다.

집락추출법(cluster sampling)에 의한 1차 집락 단위는 학교, 2차 집락 단위는 학급으로 한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선정된 42개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표 2> 설문 배포 대상

집단	대상	학교 수	대상자 수
학생	중학생 1, 2, 3학년별 무작위 10명=30명	20개교	1,260명
	고등학생 1, 2, 3학년별 무작위 10명=30명	22개교	
학부모	1, 2, 3학년 5명씩=15명	42개교	630명
교사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각 학년부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7명	42개교	294명
계			2,184명

10월 16일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비검사를 거쳐, 10월 27일 대상 학교로 발송된 설문은 11월 15일까지 40개교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은 총 1,955부로

89.5%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총 1,955명 가운데 학생이 1,16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부모 533명, 교사가 262명이였다.

2) 설문 내용 구성

설문의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규칙 인지도, 제정 절차, 바람직한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것,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및 인권 침해 인식 정도에 관한 것, 처벌 여부, 처벌 종류, 지도 방법, 징계처리에 관한 것, 학교생활 인권 침해 여부,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것, 청소년권리 인식 정도에 관한 것, 인권 침해 방지 과제, 인권 교육 필요성에 관한 것, 건강권 침해에 관한 것, 일할 권리에 관한 영역의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내용들을 설문 대상인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으로 제작했으며, 제작된 설문지는 전문가인 2명의 교수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3) 설문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Window Version 13.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인권 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기초로, 지역별, 설립별, 단계별, 공학별, 계열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집단, 교사집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교 생활규칙에 대한 지지정도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설문 분석 결과

-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낮은 인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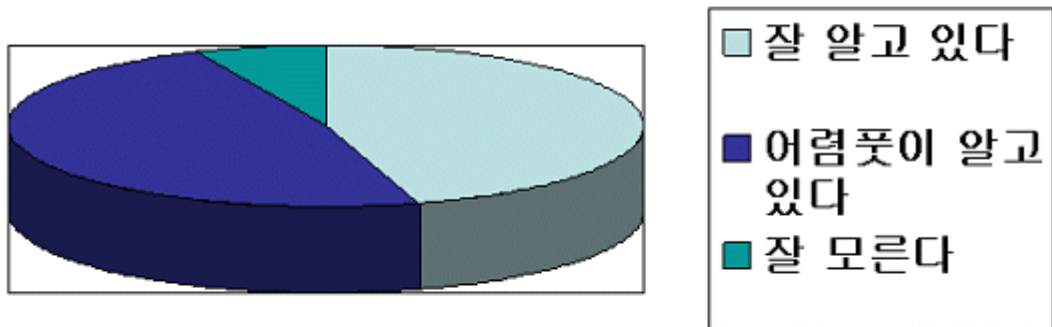
학교생활규칙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4%였으며, 전체 48.0%가 어렵듯이 알고 있다, 잘 모른다가 6.6%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집단간 인지도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교사들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로 가장 높게 반응한 한편 학생들의 55.5%, 학부모들의 45.1%가 어렵듯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인지도는 교사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의 13.8%는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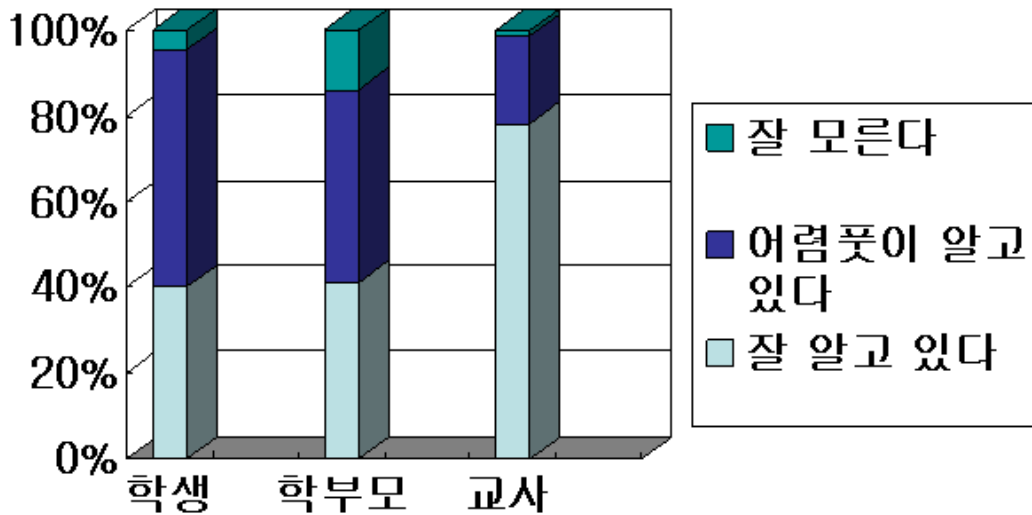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의 교칙이 더 많이 인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안학교의 교칙이 가장 많이 인지되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장 적게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생활규칙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학교생활규칙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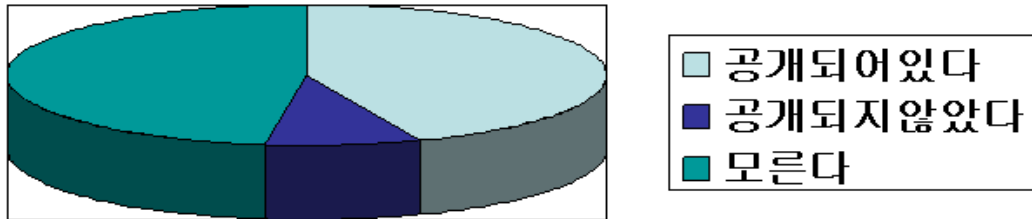
집단별 학교생활규칙 인지도



에 있다가 43.9%, 공개되지 않는다가 8.3%였으며, 공개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절반에 달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생활규칙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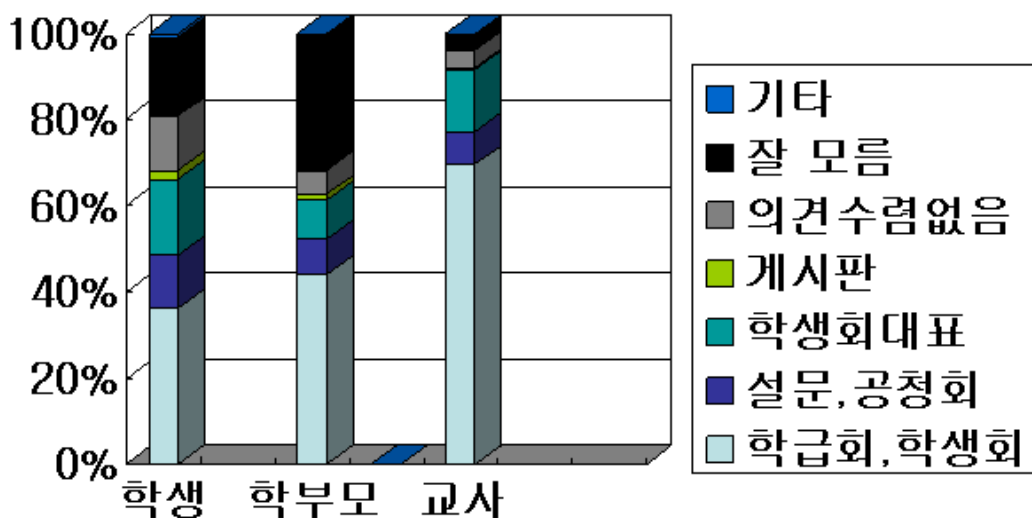
- 학교생활규칙의 비민주적 제·개정 절차와 개정 규칙에 대한 낮은 만족도 -
교사들의 67.6%가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

학교생활규칙 학교홈페이지 공개 여부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의견수렴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 학부모가 29.6%에 달해 교육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의사소통 방법도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개진은 매우 저조하여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 게시판이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견개진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규칙 재.개정시 의견수렴 방법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과반수가 언제 학교생활규칙이

개정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41.2%가 2004년~2005년 사이에 학교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정확하게 응답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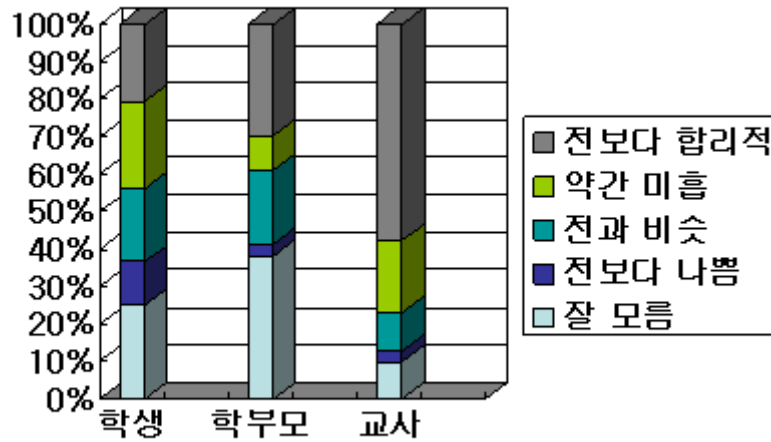
<표 3> 학교생활규칙 개정 시기 집단별 비교

	학생		학부모		교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00년 이전	21	1.8	14	2.6	13	5.0
2001~2003년	50	4.3	22	4.1	31	11.8
2004~2005년	235	20.3	71	13.3	108	41.2
2006년	152	13.1	50	9.4	49	18.7
잘 모름	626	54.0	314	58.9	43	16.4
합계	1,084	93.4	471	88.4	244	93.1

Chi-Square: 149.740(p=.000)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6월 27일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시기를 즈음하여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한 학교들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바뀐 교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의 20.5%, 학부모의 29.7%만이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들은 무려 60.3%가 이전보다 합리적이라고 대답해서 상당한 반응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교사들은 2004년~2005년 사이에 집중적인 개정으로 학교 규칙과 관련한 문제는 사라졌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학교생활규칙 개정 집단별 만족도



- 복장, 두발,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는 학생들 -

현재 학교생활규칙들에 대한 준수 정도를 응답하게 한 결과, 모든 영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해당 규칙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거나 아니면 그런 교칙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엄격히 지켜지거나 비교적 잘 지켜진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규칙은 교복 변형, 무스·스프레이, 염색·파마, 매니큐어, 화장과 같이 용의복장 규정 중에 비교적 눈에 잘 띄는 것들이었다. 반면 교복 착용, 두발 길이, 두발 모양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수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였다.

두발 길이에 대한 학교생활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학생이 16.0%, 제대로 지켜진다고 응답한 학생이 18.5%, 있으나마나 하다가 48.8%로 응답했으며, 두발의 형태와 관련 이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학생이 27.8%, 제대로 지켜진다가 34.2%, 있으나마나 하다가 26.3%의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 두발, 용모, 이성, 집회와 결사,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 청소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복장관련 규칙들, 두발관련 규칙들, 그리고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두발, 복장과 관련한 불만이 높음을 인지할 수 있다.

분산분석(ANOVA)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집단 간의 학교생활규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의 차이는 전체 평균 및 각 규칙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4에 가까울수록 해당 규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인권침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생

활규칙과 관련해 두발 길이에 대해 3.14, 두발 형태에 관련해 3.17의 평균치를 보인 한편, 복장, 두발, 용모, 이성, 집회와 결사,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2점대의 점수 분포를 보여, 다른 영역과 비교해 두발 부분이 가장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간 차이는 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칙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정도가 높은 반면, 교사들은 그렇게 여기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재를 가하는 측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측은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것이다. 모든 규칙에 걸쳐 일관되게 교사들은 해당 규칙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학부모는 그 중간에 위치했다. 교사들의 교칙 인권침해 인식 정도를 교사 내부 집단별로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 경력 20년~30년 사이의 교사들이 학교규칙의 인권침해 인식이 낮았으며 경력 10~20년의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교원 단체별로 보면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이 가장 낮았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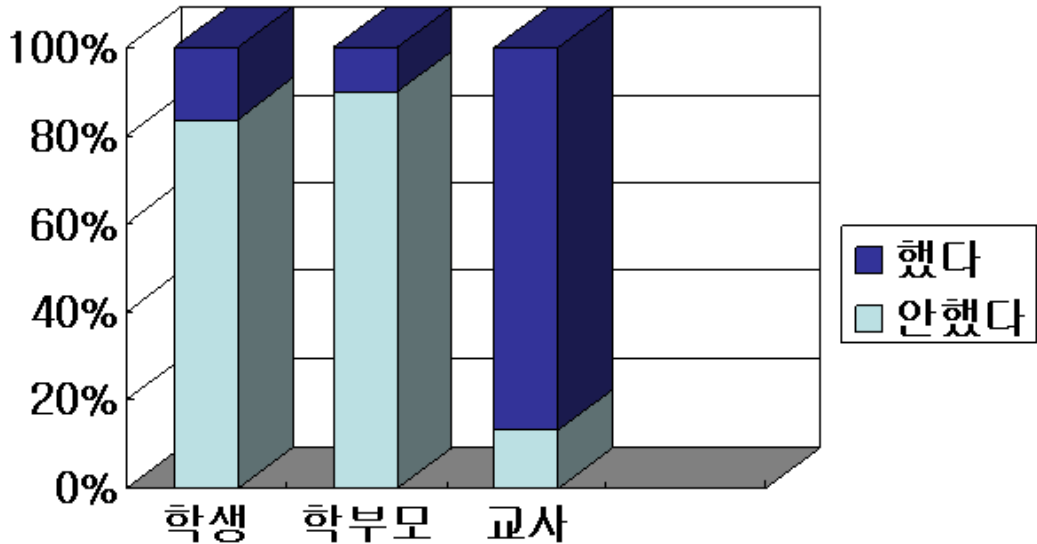
평등권, 자유권, 보호권에 관한 기본권적 인권 상황에 관한 문항에서도 교사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에 비해 학생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정도가 월등히 높았다.

- 왜 처벌받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을 받는 학생들 -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또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하는 처벌은 훈계, 혹은 잔소리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훈계 또는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에 비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훨씬 적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교사의 처벌을 처벌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의 학생들이 몽둥이나 회초리, 혹은 손발로 때리는 체벌을 받았다. 이는 전체의 40% 가량이 체벌을 경험했던 2001년의 연구(전교조·한길리서치)와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개선된 것이다. 또 2000년대 들어 도입된 벌점제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이 가볍고 사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없이 가해진다면 그 역시 분명한 인권 침해이므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심각한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교사의 86.7%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 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와 거의 대칭되는 반응을 보여 각 83.7%, 90.0%가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즉 학생들은 왜 처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벌 받은 것이다.

징계 통보



- 위협받는 건강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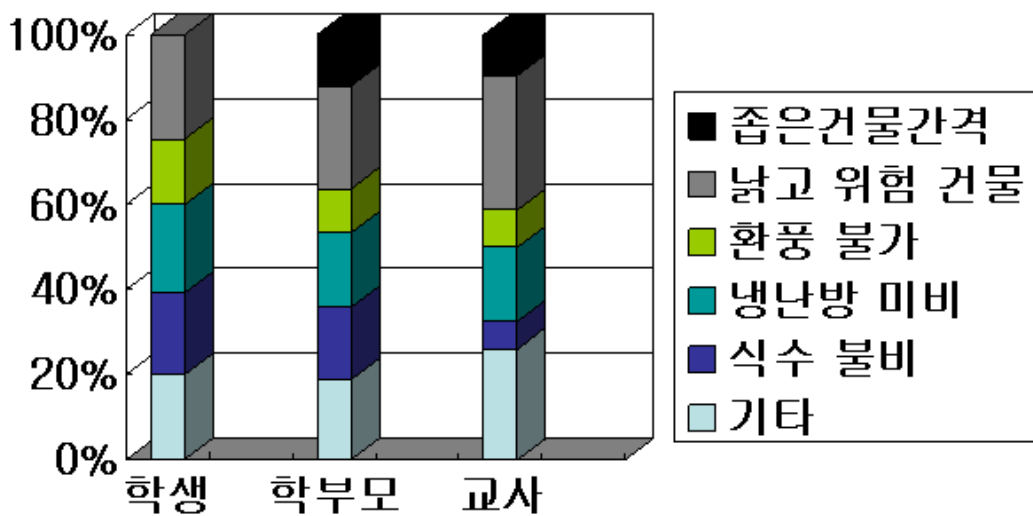
급식, 시설 관련 건강권적 인권 상황을 살펴보자.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급식과 관련한 사항들부터 살펴보자. 먼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식사 시간제한의 문제를 살펴보자. 학생의 48%, 교사의 47.6%가 점심시간 내내 식사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만 36.1%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모른다는 응답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급, 학년별로 제한한다는 응답도 이와 비슷하여,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점심시간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급식 장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장소가 교실인 경우는 급식시간 제한이 15%에 불과하였지만 급식 장소가 식당인 경우는 54.3%가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당공간의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비 미납자 확인용 바코드 실태 조사 결과로 59.4%의 응답자가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바코드 검사 결과 급식불가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12.9%,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지만 바코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6.1%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급식이 학교가 직영하는 급식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바코드 검사에 대해서 응답자의 59.4%는 인권 침해라고 응답했고 14.8%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급식비 지원 대상자들을 급식 도우미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23%로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 교사 전체의 23.7%가 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는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그 다음이 18.2%로 냉난방 문제를, 15.9%가 식수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 시설이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중학생들의 불만도가 가장 높았다. 학부모와 교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내부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경우는 학교 시설이 학생의 생활공간과 교사의 생활공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집단별 학교 시설.건강권 문제 인식



반영된 것이다.

교사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위험하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학생의 경우는 식수에 대한 불만이 다른 집단들 보다 높았다.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다음은 중소도시가 높으며, 농어촌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 종류별로 비교해 본 결과 특목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일종의 적신호를 보여준다.

-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 -

이 밖에 학교 밖에서의 부업(아르바이트)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의 14.1%의 청소년들만 최근 1년간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은 부업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무려 40.2%가 부업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업고 학생들이 주방·서빙, 판매

등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요식업소, 그리고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은 일할 기회를 그리 쉽게 얻지 못하였다. 6.3%만이 일자리를 쉽게 얻었으며 55.7%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부업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 침해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학생들의 87.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작업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4.5%의 학생들이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거나, 84.0%가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거나 심야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동시간 연장, 심야노동 강요가 실업고생에게 집중되고 있어 실업고 학생에 대한 사회전반의 시각교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 인권 침해 사례 발생 대응 양식으로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학생들은 상담창구와 정부의 감시·징계를 손꼽음 -

다음은 교사나 학교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다.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막론하고 매우 낮았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제도화 부분이다.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학생은 상담창구와 정부의 감시·징계가 42%로 동일하게 나왔다.

-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합리적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학생과 이에 둔감한 교사 -

학교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의식은 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권리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의식이 높았고, 다음은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 등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았고 이는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결정에의 참여, 자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소신의 표현, 서클 동아리 활동의 자유 같은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의식이 매우 낮았다. 교직원단체별 교사들의 청소년 인

권의식을 조사한 결과다.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학생 자치, 정치, 서클 동아리 활동,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해 매우 높은 인권의식을 편중되게 가지고 있다. 정작 두발, 신체의 자유나 일할 권리 같은 경우는 그리 높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학생 인권 증진을 과제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사 의견 달라 -

학생 인권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2/3 정도가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여기에 동의한 학부모는 48%, 학생은 35.2%다. 다음으로는 제도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제도가 미흡하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인권교육,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학교 내 청소년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을 물어본 결과 교사들의 37.7%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주장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으며 이와 더불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제기하였다.

교사들의 청소년 인권 수호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72.6%가 청소년의 인권을 매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학부모 역시 49.1%가 매우 잘 지켜주거나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은 이보다 훨씬 낮아서 33.2%가 잘 지켜주거나 매우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11.9%, 학생의 21.8%가 교사가 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잘 지켜준다는 응답보다 훨씬 낮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8.2%, 학부모의 96%, 교사의 93.7%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의 89.8%, 학부모의 96.7%, 그리고 교사의 95.8%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매우 높은 찬성률이 두드러진다. 이는 교사들 역시 최근 자주 대두되는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분명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어 함을 보여준다.

▣ 학교 방문 조사 및 간담회 결과

이상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3개교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상 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 학교들 가운데 중학교 1개교, 인문계 1개교, 공업고 1개교로 3개교에서 실시되었으

며, 각 학교의 생활지도부장 교사와 각 학년별로 한 명씩 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자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3명의 교사에 의해 12월 6~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학교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두발 관련 규칙, 복장 관련 규칙들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교사는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히 통보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은 거의 통보받지 못했다는 학생들이 많아 대조적 반응을 보인 것도 같았다. 면접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교사의 처벌을 문제시하고, 징계시 징계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 등에 대한 권리 의식을 높게 나타냈던 설문 대상 학생들과의 반응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은 여기에 대해 대체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의식을 보인 설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문 면접 시 대부분의 생활부장 교사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즉 통계적으로 밝혀진 의미는 학교 현장 방문 조사에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우선적으로 주장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제도나 장치의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았는데, 이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같다. 학생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과 오랫동안 학생 인권운동을 펼쳐 온 인권운동가, 그리고 생활부장교사와 가졌던 간담회를 통해, 생활부장 교사는 대규모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인권운동을 하는 학생과 전문가는 학교 규칙의 자율 제정,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학생인권을 둘러싼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교사들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각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기도 하나, 이들 각 집단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설문 조사, 면접 조사, 간담회를 통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의 시사점

다음으로 외국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칙 내용 분석에 따른 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금지 형태의 통제중심의 학교 규칙 내용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외국 사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랜 유교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중국, 대만은 물론, 학교를 획일적으로 운영해 온 일본의 경우, 학교 규칙에 상세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에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석 대상국이었던 서구의 미국, 캐나다, 호주 역시 금지 조항들이 많다. 이러한 성격은 종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그대로 나타나 설립별에 따라 커다란 차이없이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우리에게 비해 적은 것은 금기 위주의 통제성격 띤 학교생활규칙 자체의 문제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들은 다른 나라의 학교들에 비해 상세하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고, 규제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학생, 교사간 문제 소지로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외국의 학교 규칙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규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상과 그릇된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 위한 벌의 명백한 선으로 작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밝혀진 외국 학교 규칙의 상세성은 규제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징계시 소명 절차에 대한 규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대만의 경우, 개관천선을 위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위한 예의범절교육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놓을 정도다.

학교생활규칙을 근간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지도시 생겨나는 문제점은 두발처럼 학생들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밖에 없는 교사와의 간극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처벌과도 관련한다. 여러 종류의 처벌 가운데 특히 체벌이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교사의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적 방편으로 행하였다고 하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체벌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나, 이것에 대한 규정 또한 상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상세화의 필요성은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캐나다, 호주, 중국의 경우, 교사들은 체벌하지 않는다. 이는 구태여 체벌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학교생활규칙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벌로서 학생들을 다스리려는 교사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학교생활규칙의 준수성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의식도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필요한 것이며, 교사의 체벌이 필요없어도 다

른 유형들의 처벌들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며,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겼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게 되면 벌점제나 다른 처벌의 적용 대신 몇 대의 체벌로 대신하고, 학생 또한 다른 처벌 대신 한번 맞고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시사점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중·고등학생 인권 보호 및 함양을 위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 학교생활규칙과 교사의 규제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라고 하는 곳이 많은 학생들을 훈육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학교생활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학교생활규칙들의 내용과 또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복장 및 두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권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만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다. 또 실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야기하는 규칙들도 주로 이러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복장 및 두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또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모적인 갈등과 충돌만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권재원, 2005)에 따르면 교육적 효과도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또 다른 억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복장, 두발 규정의 표준이나 예시안을 제정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 역시 민주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칙이 제정 되도록 하는 수준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첫번째 시

사점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사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내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살리는 학교생활규칙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 수 만큼의 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학교의 교육 주체들, 특히 규칙을 부가하는 교사와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간의 공정한 협상과 합의의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보다 민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조사결과 나타난 일선 학교의 실태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모습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 관심의 주체인 학생보다 간접적 관심의 주체인 교사가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규칙을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집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재·개정 절차가 충분히 민주적이며 납득가능하다면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칙 및 이의 적용을 위한 교사의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강제 보다는 학교생활규칙의 재·개정 절차에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교생활규칙을 재·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 자치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일이다. 현재 학생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특별활동의 하나로 되어 있다. 즉 학생의 자치회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생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기 어렵다. 학생회의 법제화, 그리고 법제화된 학생회와 교사의 학교생활규칙 재·개정 협의 절차는 학교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긴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는 학생회는 커녕 교사회마저 법제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학교장의 권력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모두 법제화되고, 학교장이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비로소 학교생활규칙의 재·개정 절차의 민주화가 이룩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절차를 거쳐 제정된 규칙은 엄히 적용되어야 하며, 충분히 그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장승중학교는 1999년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학교 규정을 만들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가 중심이 된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절차를 보면, 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요구 제기 → 전교 대의원회에서 논의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설문지 작성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지 수합 및 응답 내용 분석 → 설문 분석 결과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학급회의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전교 대의원회에서 결의 모으기 → 대의원회 결과 공고 및 학교장의 선포 → 전교생의 실천(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 → 학급회의를 통한 실천 결과 평가(11월) → 2차 설문조사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및 심의 → 대의원회와 학급회의를 통한 실행 결의 모으기 : 안전 자료 제시 → 학교장과 학생회장의 선포로 이루어진다.

마산 합포고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범적 사례의 성공은 다른 학교들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생활규칙 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제정하므로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켜가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강화는 학교생활규칙 자율 제정의 선행 과제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고, 학생회의 권한도 사실상 없다.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고'(제36조),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제39조)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명확한 근거없이 학생회 구서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인권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부모, 교사에 의해 이끌려 가는 교육보다는 스스로 형성해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함께 생활해 가는 공간인 학교에서 지켜야할 것에 대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학급회의나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치 활동을 통해 자율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학생회 구성을 위한 임원 자격 제한 규정 폐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생회의 예·결산권 확보, 회칙 제·개정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회가 법제화 된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그것은 학생들 자신의 무지, 혹은 무관심이다. 거의 대부분의 설문 항목에서 학생들은 일관되게 '잘 모름' 응답 비율이 교사 및 학부모에 비해 높았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칙이나 기타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의 법제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회는 결국 간부들만의 학생회(cadre council)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가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도록 등 떠밀 수 있는 학교장의 전횡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질병도 일어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권 문제도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 침해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히 학부모 대상의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 이 연구 결과에서 시종 드러나는 것은 교육 3주체의 박약한 인권의식이다. 학생의 경우, 인권의식의 평균은 높았으나 이는 두발, 복장 등 이른바 스타일에 관련되는 영역에 그칠 뿐, 학생 자치, 정치 등과 관련한 인권의식은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다. 즉 인권의식이 높다기 보다는 외모에 대한 관심의 반영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교사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학생만큼 인권에 민감하지도 않다.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인권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 교사들은 또 다른 행정조치, 혹은 교육 외부기관에 의한 간섭 등에 대해 전문직 집단으로서 강한 배타성과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오히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인권백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 보다 본격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추후 이들을 학교내 인권 전도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교사들 중 청소년 인권에 대해 민감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까지 한꺼번에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만들기 보다는 이들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들을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실제 교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강사가 교사일 경우와 아닐 경우 교사들의 태도나 적극성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인권의 가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철학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청소년인권협의체가 필요하다. 여타의 전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역시 고도로 체계화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보편적 가치가 여기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적 변용을 거쳐야 하며 이 변용은 특정 가치의 승리나 포괄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 그 동안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번번이 교육과 훈육상의 필요와 보편적인 기본권이라는 가치의 충돌로 평행선을 달리곤 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인 연구 혹은 논쟁은 충분하지 않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활동을 마구 재단할 수 없듯이, 교육적 필요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어떤 합의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합의가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토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 또 청소년의 인권, 이 둘은 모두 산발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다룰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이러한 시사점들에 기반하여, 현재 각종 정당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평가해 보고, 몇 가지 가설적인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 인권 지침 및 이에 근거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 마련에 관한 것이다. 학생인권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 차원에서의 방향을 제시할 뿐, 학교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까지 담을 수는 없다고 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학생 인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 지침이 되는 학교생활규칙 상의 내용이 잘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규칙 상의 기준

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며, 이를 어겼을시의 처벌 규정 및 이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을 상세화한 예시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한 적 있었으나, 이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교사, 학생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 없애야 할 조항과 새로 신설해야 할 조항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칙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 원활히 개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시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새로운 예시안의 마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과 교사 간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찰을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율적, 민주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학교생활규칙예시안에 의존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인권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교육청 차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생활지도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두발 규제로 인한 강제 이발, 체벌 등의 인권 침해 사항이 지속되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학생 인권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정 조치를 편다. 또 학생들의 민원 시, 빠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처리 지침을 정비하고, 담당 장학사에게 민원 처리 원칙 및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 학생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들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서 시사점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민주적 방향으로의 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관련해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 인권을 잘 실현하는 모범적 학교사례들을 발굴, 이런 학교들에 대한 시상, 다른 학교에 널리 전

파될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로 인권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안들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 설립에 관한 문제이다. 중·고등학생의 인권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두발 규정, 용의복장 규정 문제점, 학칙 개정과정, 급식 등이 문제시되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불순한 학생으로 낙인 찍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징계 운운하며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왜 학교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이냐”고 훈계하는 것이 일반적 학교의 모습이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의 일에 대해 침묵하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명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은 커녕 회신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불만 및 민원을 마음놓고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러한 방안으로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를 설립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학생인권신고센터는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의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신고센터’처럼 구체적인 제시안은 이에 대한 상세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학생 인권 보장 및 신장을 위한 법 체제 마련 및 정비에 관한 건이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의 첫 출발은 법적 보장에서 비롯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1월 8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학생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2005년 이후부터 몇몇 국회의원들은 교육기본

법의 하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최순영의원은 2005년 12월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육당국 또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다.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개정).

2005년 12월 23일 구노회 의원의 13명의 국회의원은 먼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회부하였다. 제안이유는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자주적인 능력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토론과 참여의 문화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학교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

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학생회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이나 학생회와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내·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지는 생활태도를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학생의 자치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이다. 둘째, 학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그 자치조직으로서 학생회를 두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생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제17조의 2의 신설이다.

2006년 2월 14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회, 두발규제, 체벌 등에서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청소년들이 학생인권법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기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학생인권법의 법제화를 주창하였다. 현재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의 자치활동 보장은 모호하고 부족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으며 학교장에게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전권 위임되어 있는 현실이다.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과 같은 교육 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제대로 지원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3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두발규제를 비롯한 생활규정상의 인권침해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0교시금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 금지, 체벌금지, 각종 차별금지,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실시, 학생들의 학교 운영 보장 등 학생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생인권법에는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실행으로 차후 이루어질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한다.

Summary

Outcome of Surveys on Human Righ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2006

Cho, Keum-joo

(Adjunct Professor, Sang 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research is aimed to identify and analyze human rights situation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rough a series of surveys and interview there by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To this end, we, our research team, first, defin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of students; studied and analyzed their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human rights situations and; finally suggest measures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

According to this research, schools infringe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s follows: the right of equality on the grounds of family background,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appearance; the right to expression by banning them expressing themselves through media the right to belief, conscientiousness, and religion by forcing students to pledge allegiance to the national flag, to participate in religious worships; the right to assembly and association by not allowing them to join school activities and to assemblies taken place outside of school and; the right to privacy by examining their diaries and belongings. In addition, schools have violated students' rights; to be protected from violence or corporal punishment; to unfair treatment; to education in good environment; to life; to welfare especially for the poor and isolated students and; to work.

Students can enjoy their rights based on each school's regulation. Most of Korean schools regulate uniformly the hair length, dress code, socks and even shoes of students. That is, those regulations themselves have elements that may breach human rights of students. As a result, most of students have complained saying that their rights are being violated. Amid these circumstances, my team surveyed how three actors includi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feel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of students. We sampled 1,955 persons includ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By group, 1,160 are students; 533 parents and; 262 teachers. We have the outcome as follows:

As for the question on how they recognize school regulations, 48.5 percent said they vaguely know the regulations while nearly 50 percent said they can refer to such rules on school websites.

For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school regulations, many students responded their voices were not heard during the process. 20 percent of students and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 revisions while 60.3 percent of teachers were satisfied.

Students said rules on dress code, hair length, and qualifications for running for student council members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infringe their human rights. There was a stark contrast in punishment: 86.7 percent of teachers said they warn students enough before they go ahead to punish them. However, 83.7 percent of students and 90.0 percent of parents said they were not notified of such warnings.

With regard to question on fundamental human rights, many teachers said they don't think they have violated human rights while many students felt their rights have been seriously breached.

Meanwhile, in respect of school meals and the right to health, 54.3 percent of school cafeterias are only available for certain length of time period. Further, respondents said facilities including school cafeterias are very old and dangerous to stay in and complained of quality of drinking wa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part-time jobs reserved for students, most of adolescents have not signed a contract and start their jobs only with verbal promises of employers. As a consequence, the employers have failed to pay their teenage employees on time or press them to work for more than their share or even sometimes force them to work at night.

On the question of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most of teachers said schools should set up a type of counseling office while students said the counseling office can be effective only with the government's monitoring and discipline.

As for recognition of their rights, students were well aware of their rights to be protected from violence and by a justifiable discipline procedure. Parents also recognize these points. In contrast, many teachers were found insensitive compared to students and parents. In particular, they were not aware that regulating hair length, dress code and physical freedom breach the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To root out causes of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37.7 percent of teachers singled out a fewer number of students in class while two other actors picke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and revision of school regulations with their prior consent.

All in all, these issues said above may indicate that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have their own agendas for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However, through a series of surveys, interviews, and meetings, each group was found that they had taken the same interest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Next, after we had analyzed regulations of schools, we have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Not only Korean schools have limited students' rights in school regulations. According to analysis on foreign school cases, Chinese, Taiwanese schools which have a long Confucian tradition as well as Japanese ones have some bans on students in their regulations. To one's surprise, the same holds true for western schools. American, Canadian and Australian schools, be public or private, have the same bans on students. Public schools especially have the similar types of rules no matter when they were built.

Against this backdrop, these bans are not only one element that violates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The problem is that Korean school regulations do not provide bans "in detail." This is likely the issue that students and teachers can raise when they agree to set the limit. In a way, some can say the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are too specific. Nevertheless, these specified rules have served as the limit that encourages students to behave themselves and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wrong and have punished students following a set procedure. In this way, students and teachers are less likely to conflict.

To advise policy related human rights protection of student, the research carries significances as follows: First, school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scope where students' fundamental rights can be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legislation should come into force while assuring autonomy of schools; secondly, a democratic process should be promised when school regulations are introduced or revised. To do this, representatives of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be mandated in law to set up a consultancy body to discuss such establishment or amendment; third, there should be a mechanism of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fourth, it is very urgent to target parents who should first receive human rights education not to mention students and teachers. The research shows that these three actors are rarely sensitive to human rights. Fortunately, these actors all agree with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lastly, an educational philosophy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educ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 should be reached. A standing consultant body of teachers, civil human rights experts, and education administrators can be a good example to this end.

Based on these conclusion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deas adding to policy drafts which are currently reviewed by political parties and other organizations. First, the policy should identify role model schools promoting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award them. Furthermore, it should spread best practices to other schools and host a variety of workshops to let the three actors increase their sensitivity of human rights. Secondly, the idea of establishing a center for teenage human rights violations (tentative) is necessary but it should entail more details thereby taking longer to be materialized. Therefore, the set up of such a center should be debated further. Last but not least, a law on human rights of students, currently impending at the Commission on Education under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s early as possible to guarantee their rights under the law.

학교 내에서 인권문화 만들기: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휴 스타키 (Hugh Starkey)

런던대학 교육연구소(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I. 서론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권을 학습함으로써 인권의 목적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과 여기에는 자신이 살고 일하는 환경에 개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학교라는 제도는 그 역사적 기원으로 인해 위계질서의 인식과 복종에 대한 기대를 본받아 설립되어왔다. 인권의 문화에는 공유된 공통의 목표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의미의 권위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영국의 학교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II. 아동권리협약이 인권교육에 갖는 의미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국제연합 192개 회원국 가운데 190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주요 인권문서이다. 이 협약은 비록 아동(사실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을 포함)의 권리만을 다루지만, 성인과 공식교육 과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권리협약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통합하고 있으며, 이 권리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는 보호(Protection), 서비스 및 물질적 이익의 제공(Provision), 참여(Participation)로 설명되는 3P로 분류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특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또한 집단적 필요에 따른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자신들의 견해가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권에도 그렇듯이 제한도 있다. 이러한 권리는 완전한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13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

의 존중에 필요한' 경우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교사와 같이 아동을 다루는 모든 사람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와 교육에 대한 한 벨기에 전문가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은 시민 대기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아동을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똑같이 인권을 가진 주체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개인으로서의 아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주로서 아동들에게도 적용된다.

(Verhellen, 2000: 34)

이제 아동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교육에서 아동의 역할은 제자라기 보다는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는 학생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 학생의 견해가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고려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여러 학교에서도 이를 위한 주요한 제도는 학생회이다.

아동권리협약은 보편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은 다문화 사회에 특히 더 적합하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민족적 가치의 해석에 대한 합의에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대신 우리는 사회적 가치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초국가적 차원을 살펴 볼 수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연합과 산하 기구들은 신중하게 만들어진 가치와 원칙에 대한 합의된 문서들을 다수 제공한다.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이들 문서들은 통일된 주제를 갖는다. 모두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인권은 개인의 인간존엄성, 다시 말해 자신이 대우 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하는 사실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이 모든 인간사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학교는 그러한 사회 중 하나이다.

III.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과 성인은 모두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교육을 제공할 도덕적 책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영국의 교육부(DfES) 관료와 국가학교감사기관(Ofsted)에서 일하는 감독관 그리고 자격교과과정청(QCA)은 인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거나 인권문서를 잘 모르고 있다.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교장, 교사, 학부모, 학교이사장, NGO, 학생 등 많은 이해당사자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는 둘 다 영국에서 정부로부터 인권교육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난 10년 간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교사, NGO, 지방정부 교육 고문관, 대학의 교사 교육자 등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회의, 학습의 날, 훈련과정, 교과과정 개발 프로젝트 등을 조직하였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살피왔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왔던 때는 시민권 교육의 도입과 함께 교과과정청(QCA)이 학습프로그램을 제안해 왔을 때였다. 초안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고, 2002년 영국에 시민권 교육이 도입이 되었을 때 인권이 포함되었다. 시민권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법적 권리 및 인권과 의무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비록 형식상 표현이 어색하여 작성 당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이제 영국에서는 인권에 대해 가르쳐야 할 성문법적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는 여타 많은 유럽국가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시민교육, 정치교육, 사회교육 등의 과목에 포함이 된다.

이제 인권학습이 정규 학교교과과정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성과이다. 이제 첫 발짝을 내딛었을 뿐이다. 인권교육은 시민권 교육이나 시민교육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주제이다. 인권교육은 사회와 공동체, 학교를 포함한 기관들을 검토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공정성과 정의를 증진시키고, 학교나 교육당국의 실무와 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행되는 지 예를 보여 줄 것이다.

IV. 인권교육에는 인권원칙과 인권문서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필요하다.

당신이 권리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인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는 교사와 인권을 배우는 이들이 생명권 (아동권리협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40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7조). 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제3조, 제10조, 제24조, 제19조)에 따라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권리이다

구체적인 인권에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인권이 실생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인식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것을 명시성(explicitness)의 원칙이라고 한다. 인권교육이 주요 인권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협약의 지식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권교육이라 할 수 없다. 교사들은 이들 문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이 문서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인권이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자 인권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은 인권담론에 익숙하게 되고, 인권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권에는 평등, 존엄성, 공정한 대우, 정당한 절차,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학교들은 캠페인 NGO들의 포스터나 인권문서의 본문을 전시함으로써 인권문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영국에서 인권문화를 개발한 학교들은 학생들이 제작한 포스터나 정보를 게시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나라에 있는 국제연합협회(United Nations Associations)와 유네스코(UNESCO) 위원회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본문을 교실에 게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 되살아나면서 교사들은 다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본문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서들이 교실 벽이나 학교 복도에 게시되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서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유니세프와 같은 다수의 NGO들은 학생들이 읽기 좋게 예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제작물은 참고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는 쉽게 풀어 쓴 것들도 만들었다. 시민권 및 인권 교육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항상 학생들이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원본 문서 전체와 쉽게 풀어 쓴 것들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 문서들을 교과서에 부록으로 실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문서들에 익숙하게 되고 자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의 여러 공간의 명단을 만들고 (학교, 절/교회/이슬람사원, 신문사, 영화관, 경찰서, 역, 경기장 등), 참가자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협약을 읽게 한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 관련된 조항들을 찾아내게 한다. 예를 들어 경기장은 여가, 건강,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할 수 있다. 경기장은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명단에 있는 각각의 공간들은 여러 개의 조항들과 연계될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

들이 이해하고, 생각해내고 혹은 경험한 것을 공유하게 된다.

오늘날 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쌍방향성 활동에 대한 출판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NGO들이 개발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교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도 있다. 외국어 시간에는 이러한 활동의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판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국어로 제작된 인권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여럿 있다¹⁾.

V. 인권적 학교문화의 개발

유럽의 인권교육정책은 20여년 전 유럽평의회 권고문 '학교내 인권교육 및 학습'에 대한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 권고 R(85)7. (Recommendation R(85)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학교 내 인권 교육 및 학습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에서 이미 정의된 바 있다. 이 권고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학교가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존중에 기반하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이다. 이 권고문에는 학교문화(climate of the school)를 언급하는 절이 있다. 학교가 표현의 자유를 일부라도 허용하지 않거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인권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은 배움과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평의회가 20년전에 작성한 이 원칙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해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인권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공적 전략들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학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르며 또한 교사와 학생 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자기가 받는 교육에 대해 파트너로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명시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가 인권 분위기나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학교 공동체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들이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통해 정규교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성인들을 위한 기회도 특별히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인권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인권원칙이 학

1) 교사 및 학습자를 위한 유엔 웹사이트 <http://www0.un.org/cyberschoolbus/humanrights/index.asp>
인권교육협회(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ttp://www.hrea.org/>.

교생활의 근저에 깔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교장의 비전의 학교운영이사회, 교직원, 학생들과 모두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에 학교에 갖는 의미에 대한 탐구, 경험의 공유, 공통의 인식 형성 등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교육이나 토론의 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교직원들을 위한 훈련 및 토론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미 인권교육을 받은 교직원 집단이 있는 경우 그들이 하루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다. 없을 경우 대학의 교사교육 교사 등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거나 NGO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행사는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정부교육당국에서 온 교육공무원들, 예를 들어 고문관, 감사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또한 이미 인권적 접근에 대한 의지가 있는 다른 학교 교직원들을 초대할 수도 있다. 학부모나 기타 학교 관련인사 역시 자신들의 전문능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훈련프로그램은 수업이 없는 날에 하는 것이 좋다. 교직원 전원뿐만 아니라 비서직이나 행정적 직원, 청소나 지원담당 직원, 교실 보조원 및 기타 보조원 등 다른 직원들도 초대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이사회 소속위원 역시 초대되어야 하며, 일부 학부모 및 학생 대표도 초대되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의 일정은 인권 개론,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공동체에 갖는 의미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모든 직원개발 프로그램은 우리의 질문지 '당신의 학교 환경은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가?' (Does your school environment give everyone a chance to enjoy their rights?)를 고려하여 만들 수 있다. 질문지는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이 학교를 고려해서 제기한 내용들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었다. 이 협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제공, 보호, 참여가 그 세 부분이다.

VI. 질문지에서 제기된 문제

첫 번째 항목은 학생과 교사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를 묻는다 (제29조). 이를 위해 정규 교과과정에 대한 심사와 국제앰네스티 학생그룹이나 유네스코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기타 과외활동 그룹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다. 이

질문은 학생만큼이나 교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 관련하여 고급과정을 이수할 기회가 있는가?

네 번째 항목에서는 국사 교과를 살펴 보는데, 여성과 소수자에 비중을 두어 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다 (제2조, 제13조, 제28조, 제29조 1항 c와 d, 제30조). 인권적 측면이 역사 교육과 명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잘 알려진 실제의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직면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 넬슨 만델라는 저항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 1842년 미국에서 어떤 가족이 도주하는 노예를 보호하려고 할 때 어떠한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까? 그 가족이 백인이었을 때와 흑인노예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 당신이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친구를 돕겠는가?

구체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숙고를 통해 학생들은 인종주의와 그 종식을 위한 해결책 등을 비롯한 도덕적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Claire, 2005).

첫 번째 절의 마지막 항목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술, 음악, 연극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할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느냐 하는 질문이다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1조).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관여하고, 그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방법이다. 매년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이 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학생들이 콘서트, 전시회, 연극공연 등을 개최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훌륭한 예이다. 인권은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주제이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 10주년 기념행사가 있던 때 케이프타운의 한 극장에서 저녁에 연극을 관람할 영예를 누린 적이 있다.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몇 주 동안 전문배우들과 함께 준비한 자작극들을 공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극공연은 공연 뿐만 아니라 음악, 의상, 무대, 조명, 음향 제공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질문지의 두 번째 부분은 보호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 항목은 학생의 사적

재산 소유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관련 정보의 비밀보호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이 항목에서 특히 중요하다. 학교는 전통에 따라 조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요구되는 정의 기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기준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훨씬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는 한 학교장에 의해 개발된 예를 들자면, 조사, 해결, 회복, 제재, 의사소통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제도를 만들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 증인의 증언과 서면기록 작성이 포함된 조사
- 상호 합의에 따른 분쟁의 해결, 사과가 뒤따를 수도 있음. 앞으로의 행위와 관련하여 서면 계약을 맺기도 한다.
- 손실에 대해 보상하거나 학교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회복. 가해자로 하여금 자기 존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제재는 모욕적이거나 품위를 잃게 하는 활동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한번의 위반행위에 대해 한 번 이상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 의사소통에는 학교가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를 밟을 때 그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Osler & Starkey, 1996; Cunningham, 2000)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칙과 행동규범을 가짐과 동시에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도, 이러한 학교규칙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바탕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를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에서 교사가 무엇을 나쁜 행위로 인식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교사들이 흔히 다른 학생이 촉발시킨 것에 대해 어떤 학생이 반응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실제 원인과 누구에게 실제로 잘못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인권적 접근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대할 때 성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 교사는 즉각적으로 처벌을 선언하는 대신, 사실에 대한 조사를 선언할 수 있다. 처벌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며, 학교환경 개선을 돕는 등 가능한 건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만일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사과를 할 경우 그것으로 문제를 종결하는데 충분한 경우도 많다.

질문지의 마지막 부분은 참여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항목은 학생이 학교활동 중, 교사의 견해에 상관 없이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기타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또 다른 항목은 실제에 있어서 아동들이 성인을 존경하는 만큼 그 정도의 권리를 갖느냐에 관한 질문이다 (제12조, 제19조, 제29조 1항 c). 위의 두 항목은 모두 학생을 인권을 가진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복이나 복장규범에 관한 것이다. 모든 조직은 그 구성원들의 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대나 요구사항이 있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교복을 입게 하고 있다. 또한 두발이나 보석에 대한 것과 같은 복장규범도 있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그러한 기준은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하에 시행될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교복착용 기준이 완화되어 학생들은 특정한 색깔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이슬람계 여학생들은 학교색의 머리스카프를 쓰면 되고, 시크교도 남학생들은 학교색 터번을 머리에 두르면 된다. 다른 경우로는 재킷 대신 학교로고가 찍힌 스웨터를 입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학교 복장규범이 학부모 및 학생 대표들과 상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항목에서는 공식적으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지, 학교 관리 단위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프랑스, 포르투갈, 덴마크 등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영국에서는 학교에 선출직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명문화된 요구규정이 없다. 그러나 시민권 교육을 도입하면서 오늘날 아주 많은 수의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갖고 있다. 학교들이 민주주의 학습에는 공식적인 민주적 구조에 참여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다.

VII. 학생회

우리는 최근 연구 검토(Osler & Starkey, 2006)를 통해 따르면 영국 학교 가운데 인권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일정 정도 변화를 이룬 몇몇 학교들의 예를 찾을 수 있었다. 한 사례 연구에서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에서 활동조사 접근 방식으로 인권원칙을 적용하였다 (Carter & Osler, 2000). 알더슨 Alderson (1997, 1999, 2000) 역시 자신의 학교민주주의 연구를 명시적으로 1989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틀에 위치 지었다. 그녀가 한 초등학교에 대해 실시하였던 사례연구(1997)에서는 학교이념으로 민주적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학생들의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두 번째 사례 연구(1999, 2000)에서 더 확대되었다. 한편 다른 연구 결과 역시 학생 참여가 높을

수록 보다 나은 학습분위기가 조성되고 학생배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확인하였다 (Davies, 1998 Osler, 2000).

한편 민주적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문헌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주제 중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참여를 위해 생긴 공식적인 구조(구체적으로 학생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Trafford, 2003; Cunningham, 2000; Taylor and Johnson, 2002; Rowe, 2003). 학생회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원의 배치에 관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때 가장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선거 제도가 소수자나 덜 부유한 가정 출신의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과 포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학생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학생회 회원과 직원을 위한 훈련 또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함께 일했던 레스터(Leicester) 지방의 한 학교는 다른 학교의 학생회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회가 학생들로 구성된 교육팀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점차 많은 학생회 회원들이 자기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직 후보자 면접 등 다른 역할들을 맡기도 한다. 면접단은 보통 학생의 견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VIII. 유니세프 권리존중 학교 프로그램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많은 학교들이 유니세프의 권리존중학교(RRS)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권리존중학교상을 받기 위해서 학교는 네 가지 측면에 있어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1. 학교공동체 안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얼마나 되며, 학교이념과 교과과정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2. 교육 및 학습 스타일과 방법이 아동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3. 학생들이 학교 전반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4. 전략적인방향성과 적절한 전문성 개발을 통해 권리에 기반한 학교이념을 세우기 위해 리더쉽이 의지를 갖고 있는가.

영국 햄프셔(Hampshire)의 한 교육당국은 유니세프 프로그램의 자체 버전인 교내 권리, 존중, 의무(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in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권리협약에 바탕을 둔 교사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교육 감사관들은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학생들은 '권리, 존중, 의무' 프로그램이 교과과정에 기여하는 지역적 및 지구적 측면을 볼 때 학생들은 큰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 내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IX. 학습자와 교사 간의 공식적 합의

햄프셔에서 사용된 여러 인권교육 프로그램 성공사례의 한 가지 특징은 학생과 교사 간에 합의문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래는 10세 아동이 만든 합의문의 한 예 가운데 일부이다.

권리, 책임, 존중에 기반을 둔 교실 행동규범 합의문 샘플

우리는 우리 학교의 모든 아동에게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권리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종교적 및 문화적 활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이유로 못 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우리는 모든 이의 차이를 존중할 것이다.

...침해와 무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시간만을 존중할 것이며, 그러나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이 행동규범에 동의하며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을 인정한다.

(Covell and Howe, 2005).

X.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

인권에 바탕을 두고 시민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런던의 한 중등학교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가 훼손될 것이 걱정되어 어린 학생들과 권리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리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사를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의무를 알게 되고 교사들과의 관계도 향상되었다. 이 연구조사에서 제시한 한 가지 중요한 권고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교사들로 하여금 인권을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었다(Hudson, 2005). 오슬러(Osler)의 저서에서 수많은 유럽에서 행해진 성공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부모들은 학생들이 권리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경우 학교 성적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21개국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취도도 높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 (Unicef, 2007).

XI. 결론

영국의 인권교육 실시는 유럽평의회, 유네스코, 유니세프와 같은 정부간 기구들의 역할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격려와 함께 광범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영국정부는 교육부(DFES)를 통해 인권지식을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 포함시킨 학습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감사관들은 이 학습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은 자료제작, 네트워크 형성, 훈련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둘 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석사수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 영국에서 시민권 교육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이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은 훈련 받은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는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인권문서에 익숙하게 하고, 연구문헌에 비판적으로 관여하게 하여, 자신의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 오슬러(Osler) 교수가 이끄는 학제간 교육과 민주주의 석사과정 (MA in Education and Democracy)은 민주적 시민권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는 대학원생과 경력 전문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교육학 과정과 정치과학 과정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지구적으로 민주적 시민권 교육, 정치교육, 인권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재개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성장하는데 발맞추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권 교육 교과과정이나 학교정책 개발을 담당하거나, 유네스코와 같은 초국적기관에서의 직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 참가자로 하여금 오늘날 변화하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및 정치적 문제점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 지역, 국내, 국제 차원에서 시민권의 토대가 되는 인권을 연구하고,
- 교육학과 정치학의 경계선 상에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및 기타 영역의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런던대학교 교육대학(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스타키(Starkey) 박사가 이끄는 시민권과 역사교육 석사과정 (MA Citizenship and History Education) 은 대학의 외부프로그램으로 원격교육 코스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영국에 올 필요가 없다. 이 프로그램은

- 우수한 국제적 학자들이 만들었으며, 교육대학(Institute of Education) 전문가들이 개별지도를 하며,
- 접근 가능한 이론과 강한 실용적 접근을 접목하였으며,
- 질 높은 인쇄 및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 모든 국가나 국제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간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 교육을 통한 인권문화를 증진시키고,
- 컴퓨터회의를 통해 전세계 학생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 Alderson, P. (Ed.) (1997) *Changing our school 우리 학교를 바꾸자* (Plymouth, Highfield School).
- Alderson, P. (Ed.) (1999) *Learning and inclusion: the Cleves School experience 학습과포섭: 클레브학교 경험* (London, Fulton).
- Alderson, P. (2000) *School students' views on school councils and daily life at school 학생회와 교내 일상생활에 관한 학생의 관점*, *Children and Society 아동과 사회*, 14, 121-134.
- Carter, C. & Osler, A. (2000) *Human rights, identities and conflict management: a study of school culture as experienced through classroom relationships 인권, 정체성, 갈등관리: 교실 내 관계를 통해 경험한 학교문화 연구*,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캠브리지 교육학저널*, 30(3), 335-356.
- Claire, H. (2000) 'You did the best you can': history, citizenship and moral dilemmas '너는 최선을 다했어': 역사, 시민권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 in: A. Osler (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교사, 인권, 다양성: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교육* (Stoke on Trent, Trentham).
- Covell, K. & Howe, B. (1995) *Variations in support for children's rights among Canadian youth 캐나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나타난 아동권 지지 양상*,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국제아동권저널*, 3(2), pp. 189-196.
- Covell, K. & Howe, B. (2005)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report on the RRR initiative to Hampshire County Education Authority 권리, 존중, 책임: 햄프셔주 교육당국의 RRR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고서* (Winchester, Hampshire County Council).
- Cunningham, J. (2000) *Democratic practice in a secondary school 중등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in: A. Osler (Ed.)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schools: diversity, identity, equality 학교에서의 시민권과 민주주의: 다양성, 정체성, 평등* (Stoke-on-Trent, Trentham), 133-142.
- Davies, L. (1998) *School councils and pupil exclusions 학생회와 학생 배제* (London, School Councils UK).
- Hudson, A. (2005) *Citizenship Education and Students' Identities: a school-based action research project 시민권교육과 학생의 정체성: 학교기반 활동조사 프로젝트*, in: A. Osler (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교사, 인권, 다양성: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

- 민 교육 (Stoke on Trent, Trentham).
- Osler, A. (2000) *Children'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understandings of school discipline* 아동의 권리, 책임과 학교규율의 이해,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교육학연구논문, 15(1), 49-67.
- Osler, A. (Ed.) (2005)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교사, 인권, 다양성: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 교육 (Stoke on Trent, Trentham).
- Osler, A., Rathenow, H. & Starkey, H. (Eds.) (1996) *Teaching for Citizenship in Europe* 유럽에서의 시민권교육 (Stoke, Trentham).
- Osler, A. & Starkey, H. (1996) *Teacher Education and Human Rights* 교사교육과 인권 (London, Fulton).
- Osler, A. & Starkey, H. (2005) *Changing citizenship: democracy and inclusion in education* 시민권의 변화: 민주주의와 교육의 포괄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Osler, A. & Starkey, H. (2006)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 review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995-2005* 민주적 시민권 교육: 1995-2005년 연구, 정책, 실천의 검토,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교육학연구논문 21.
- Rowe, D. (2003) *The business of school councils: an investigation into democracy in schools* 학생회의 비즈니스: 학교 내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London, Citizenship Foundation).
- Taylor, M.J. & Johnson, R. (2002) *School councils : their role in citizenship and 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학생회: 시민권, 개인적 및 사회적 교육에 대한 역할 (Slough,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Trafford, B. (2003) *School councils, school democracy, school improvement: why, what, how* 학생회, 학교민주주의, 학교개선: 왜, 무엇을, 어떻게 (Leicester, SHA).
- Unicef 유니세프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7) 아동빈곤의 관점: 부유국에서의 아동복지 개관 (이노센티 보고서 카드 7)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tudy Day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Creating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lessons from experience in Britain

Hugh Starkey

Abstract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HRE) presents a challenge to schools.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volves understanding that the purpose of human rights is to create a culture where the dignity of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is recognised and that this includes the right of individuals to influence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and work. Because of their historical origins, schools as institutions have been modelled on a sense of hierarchy and expectations of obedience. A human rights culture requires new definitions of authority, based on commitments to common shared goals. This paper presents examples of ways in which schools in Britain have responded to these challenges.

Introduction: the implic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HRE

Since 1989, the CRC has been ratified by 190 of the 192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major comprehensive universal human rights instrument that is legally binding on states. Although it addresses the rights of children (in fact all young people under 18 years of age), it has important consequences for adults and for the process of formal education.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the CRC is that it integrates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effectively recognising the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of these rights. Children's rights, as covered in the Convention, have been categorised as the 3 Ps: those of protection, provision (services, material benefits) and participation. The

Convention recognises that children, particularly those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need special protection, and that children may have group needs for which specific provision must be made.

Article 12 of the CRC guarantees the right of young people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to have their opinion taken into consideration. Of course, as with all human rights there are limitations. These are not absolute rights. Article 13 states that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uch as those] necessary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However, the principle is that all those dealing with young people, such as teachers, should allow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and futures. As a Belgian expert on children's rights and education argues, children are citizens, rather than citizens-in-waiting.

Respect for children as human beings means they are no longer perceived as mere objects of protection but as subjects, bearers of human rights like all human beings. This new perception applies to the child as an individual as well as to children as a social category.

(Verhellen, 2000: 34)

Now that children are citizens, with rights, their role in education becomes that of partner rather than pupil. We are obliged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and listen to their views. There need to be processes for students' views to be formally expressed and then considered. In many schools in England as in other countries the main mechanism for this is a school council.

Since the CRC is a universal convention, its standards and principles are particularly relevant in multicultural societ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o longer possible to rely on a consensus around the interpretation of national values. We can, however, look to a supra-national level to find a commonly acceptable basis for agreed social values. At a global level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provide many carefully constructed agreed

statements of value and principle, including the UDHR and the CRC. These statements have a unifying theme. They are all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ince human rights are founded on a concern for individual human dignity, in other words treating others as you wish to be treated, the sam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any human context or community. The school is one such communit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HRE

Children and adults have a right to human rights education (HRE) under Article 26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UDHR) and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overnments therefore have a moral obligation to provide HRE. However, a government commitment to providing HRE is just a starting point. It is our experience in England that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DfES), inspectors working for the national school inspection service (Ofsted) and those working in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 have very littl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or familiarity with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culture depend on actions at local level involving many stakeholders including heads, teachers, parents, school governors, NGOs and students. It is also our experience that successfully implementing HRE has a political dimension and that it challenges many traditional practices and procedures in schools.

Both of us played leading roles in a ten-year campaign to gain official government support for HRE in England. We set up a network of teachers, NGOs, local government education advisers and teacher trainers in universities. We organised conferences, study days, training sess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s. We also wrote to ministers and looked for every opportunity to influence officials. Our best opportunity came when, with the introdu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he curriculum authority (QCA) proposed a programme of study. The initial draft did not include human rights. We campaigned hard to change this and when citizenship education was introduced in England in 2002 it was included. The programme of study for citizenship states that: 'pupils should be

taught about the legal and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pinning society'. Although the formulation is poorly worded and suggests that those drafting had little real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ere is now in England a statutory obligation to teach about human rights. This is also the case in many other European countries, where it is included in subjects such as civic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or social studies.

It is an important achievement that study of human rights is now included in the formal school curriculum. It is only a first step. HRE is more challenging than citizenship education or civic education. It provides a lens for examining societies,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schools. Its aim is to promote fairness and justice and challenge injustice and discrimination in the practices and procedures of schools and education authorities. The following sections provide examples of how HRE has been implemented in schools.

HRE requires explicit reference to human rights principles and instruments

A right is not a right unless you know about it.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name human rights. We would expect teachers and those learning about human rights to be able to identify specif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CRC article 6); the right to a fair trial (CRC article 40);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CRC article 31); or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CRC article 17). All these rights are also rights for adults under the UDHR (articles 3, 10, 24 and 19).

Being able to name specific human rights and recognise how human rights apply to everyday situations is a crucial aim of HRE. This is the principle of explicitness. HRE is not HRE unless it is based on knowledge of the key human rights instruments, particularly the UDHR and the CRC. Teachers need to be familiar with these texts and they also need to help students to be able to use the texts for themselves.

When human rights are included in the formal curriculum it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systematic study of human rights instruments. In this way

students become familiar with discourses of human rights and the key concepts that help us to understand human rights as a way of looking at the world. These concepts include: equality, dignity, fair treatment, due process, fundamental freedoms and democracy.

Schools can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a human rights culture by displaying posters from campaigning NGOs and the texts of human rights instruments. We also find that schools in England that have developed a human rights culture display posters and information created by students.

Soon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UDHR in 1948, United Nations Associations and UNESCO commissions in many countries recommended that the text of the UDHR be put on display in classrooms. As interest in HRE has been revived in recent years, teachers have started once again to display the text of the UDHR and/or the CRC. When these are posted on classroom walls or in school corridors it gives out a sign that these are important texts that everyone should know about. A number of NGOs such as UNICEF produce attractive versions and these are then available for students to read and they act as a point of reference. For younger students there are simplified versions.

When we lead courses for teachers of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we always ensure that they have access to the texts of the UDHR and CRC in a full and a simplified version. We also include these texts as an appendix in the books we write for use in our courses.

We also have a number of activities that we use with teachers and with students to encourage them to become familiar with the texts and to apply them to their own situation. In one such activity we provide a list of places in the local community: school; temple/ church/ mosque; newspaper office; cinema; police station; rail station; sports hall. We then ask the participants to look at the UDHR or the CRC and to identify articles that are relevant to these places. For example, the sports hall represents the right to leisure, to health, to freedom of assembly. It is also a place where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Each of the places on the list

will have several articles associated with it and the participants share their understandings, insights and possibly experiences.

There are now many published interactive activities for learning about human rights, many of them developed by NGOs. These are often available on the internet where teachers can access them. Such activities can also be used during foreign language lessons, for instance by using a version in English, French or Japanese. There are a number of sites that provide multi-lingual resources for HRE.²⁾

Developing a school culture of human rights

HRE policy for Europe was defined over twenty years ago in a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R(85)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Recommendation is that schools can be models of communities bas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There is a whole sec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the climate of the school. HRE is not likely to be effective in a school that does not allow som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at is not committed to fairness and justice. In other words, human rights have to be experienced as well as learnt.

The principles formulated twenty years ago by the Council of Europe have been given new impetus by the dissemination of understandings of the CRC. There have been many successful strategies for implementing HRE and all depend on schools being prepared to adapt and develop new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This stems from recognition that young people have a right to be partners in their own education.

The principle of explicitness needs to inform the process of a school

2) UN website for teachers and learners

<http://www0.un.org/cyberschoolbus/humanrights/index.asp>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ttp://www.hrea.org/>

developing a climate or culture of human rights. All those involved in the school community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Whereas the curriculum provides for formal classes in which young people learn about rights, opportunities for adults have to be specially created. In schools that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HRE, the school principal was convinced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recognised that human rights principles should underpin the life of the school. The principal's vision needs to be communicated both to the governing board of the school and to the staff and students.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of a human rights vision requires opportunities for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human rights for the school and for sharing experience and creating common understandings. This can be facilitated by special training and discussion days. We have experience of successful training and discussion days for school staff. Where there is a group of teaching staff already trained in HRE they can lead the programme of the day. If not, then an external facilitator such as teacher education staff from universities may lead the day or support staff from NGOs. The day is an opportunity to involve education officials from the local or national education authority, such as advisers or inspectors. You can invite staff from another school that has already made a commitment to a human rights approach. Parents or others connected to the school may have expertise to offer.

The training day needs to be on a day when there are no classes. All the teaching staff should be invited but also the other staff such as secretarial and administrative staff, cleaning and caretaking staff and classroom and other assistants. School board members should also be invited and also some representatives of parents and of the students.

The agenda for the day will involve an introduction to human rights, the UDHR and the CRC and a consideration of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the school community. We have found that a whole staff development programme can be built around consideration of our questionnaire Does your school environment give everyone a chance to enjoy their rights?The

questionnaire is based on considerations for schools raised by articles of the CRC. It is in three parts: provision,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Issues raised by the questionnaire

The first item ask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and teachers have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o consider its implications for the school (Article 29). This invites an audit of the formal curriculum and of other opportunities including extra curricular groups such as a school Amnesty International group or participation in UNESCO programmes. The question concerns teachers as much as students. Do they have opportunities for taking advanced courses in HRE, for example?

Item four looks at the teaching of national history and the weight given to women and minorities and to their versions of history (Articles 2, 13, 28, 29.1c & d, 30). One way in which a human rights dimension has been explicitly linked to the teaching of history is a project where children in primary schools are asked to consider the moral dilemmas faced by individuals and groups in some well-known true historical situations.

- How should Nelson Mandela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his role as resistance leader and his role as father and husband?
- What risks should any family take to protect a runaway slave in America in 1842? Does it make a difference if the family is white and the slave black?
- Would you risk your own life to help a friend in a situation like the Holocaust?

Considering such questions, alongside issues of specific human rights that were being abused, enabled the children to engage in deep discussions of moral and ethical issues, including racism and how to combat it (Claire, 2005).

The final item in the first section is the extent to which the school provid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art, music and drama (Articles 13, 14, 29, 31). These are powerful means to help students engage with and express their views on human rights

issues. We have observed many excellent examples of students celebra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10 December) with a concert, art display or theatrical performance. Human rights provide a particularly stimulating theme for many young people. We were particularly privileged to attend an evening in a theatre in Cape Town, South Africa at the time of the tenth anniversary of democracy in the country. Students from a number of schools performed improvised dramas on which they had worked for weeks with professional actors. Such dramatic performances is an opportunity to include students with a range of skills such as providing music, costumes, scenery, lighting and sound systems as well as acting.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naire concerns issues of protection. One item is about the right of students to private property. Several concern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about their students held by schools. The right to fair treatment and due process is highlighted in other items. As they have been traditionally organised, schools have often used a standard of justice that is far below that demanded by adults. This is clear discrimination, and some schools in England have now developed much fairer systems. One, developed by a school principal commit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vestigation, resolution, restitution, sanctions and communication. Some of the key elements are:

- An investigation that includes witness statements and the taking of written notes
- Resolution of the dispute by common agreement, possibly following an apology. It may be followed by a written contract for future behaviour.
- Restitution by paying for damage or 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chool community. It should encourage the offender to regain self-respect.
- Sanctions should not involve humiliation or degrading activities. Students should not be punished more than once for an offence.
- Communication includes ensuring that the victims of offences are kept informed of the steps the school has taken to protect them.

(Osler & Starkey, 1996; Cunningham, 2000)

As well as having a set of school rules and a code of behaviour that applies to teaching staff and students, schools need to develop new ways of enforcing the rules. This approach to school discipline is challenging in situations, in England, and probably also in Korea, where teachers have the power to impose punishments for inappropriate behaviour on the basis of their own impressions of the situation. In fact there may be many explanations of what a teacher perceives as bad behaviour in schools. What teachers often see is a student reacting to provocation by another student. An investigation is needed to discover the real cause and who is really at fault. A human rights approach requires teachers to react to the students as they would to adults. Rather than announce a punishment immediately, the teacher can announce an investigation of the case. The punishment itself is given later and it should be as constructive as possible, such as helping to improve the school environment. If the badly behaving students offer an apology, this may be enough to close the matter.

The final section of the questionnaire concerns participation. The first item considers whether in their schoolwork, students have the freedom to express their own political, religious or other opinions, whatever the opinions of the teacher (Articles 12, 13, 14, 17). A further item asks whether in practice young people have as much right to respect as adults (Articles 12, 19, 29.1c). Both these items imply that students are being considered as citizens with human rights.

One of the issues that may concern students and on which they are entitled to give their opinion is that of uniform or dress code. Any organisation may have expectations or requirements about the appearance of its members. Many schools require students to wear uniforms. There may also be a dress code that includes standards for hair and jewellery. We have found in Britain that such standards can be enforced with the agreement of parents and students, so long as there has been sufficient consultation. In some cases, the requirement for a uniform has been modified so that students have to wear clothes of a certain colour. This

allows Muslim girls to wear a school colour headscarf and Sikh boys a school colour turban. In other cases jackets have been replaced by sweatshirts with the school logo. The important thing to stress is that the school dress code should be determined after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parents and students.

A further set of items asks whether there is a formally elected school council and whether students are represented on the governing body of the school. In England, unlike many countries including France, Portugal and Denmark there is no statutory requirement for schools to have an elected student council.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he vast majority of schools now have a council. The schools understand that learning about democracy includes participating in formal democratic structures.

School councils

In our recent research review (Osler & Starkey, 2006) we found several examples from England of schools that were transformed to some extent when they applied human rights principles. One case-study applied human rights principles an action research approach within a school, to address the issue of violence (Carter & Osler, 2000). Alderson (1997, 1999, 2000), also explicitly situates her studies of school democrac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19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er case study of a primary school (1997) highlights how the institution was transformed and student achievement enhanced by adopting democratic principles as the basis for its ethos. This is extended in a second case study (1999, 2000). Other studies confirm that greater student participation provides for a better climate for learning and may help reduce pupil exclusions (Davies, 1998; Osler, 2000).

One strongly represented theme within the literature on democratic schooling is the role of formal structures for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s, specifically student councils (Trafford, 2003; Cunningham, 2000; Taylor and Johnson, 2002; Rowe, 2003). School councils are found to operate best where the council has its own budget and is therefore able to make real decisions about the allocation of resources.

Schools need to address equal opportunities and inclusion issues to ensure that the mechanisms for elections encourage students from minorities and those from less wealthy homes to participate. An effective council also requires training for council members and for staff. The school council of a school with which we have worked in Leicester has a training team of student that provides training for councils in other schools. Increasingly members of school councils take on other roles, including interviewing candidates for the post of principal or teacher in their school. The views of the students are usually considered very important by the interview panel.

Unicef Rights Respecting School Programme

A number of schools in Europe, 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participate in UNICEF's Rights Respecting School (RRS) programme. This appears to provide the framework within which HRE can be introduced effectively. For a school to receive the RRS Award, they must show evidence that they have reached the required Standard in each of four Aspects:

1.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mongst the school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the school ethos and curriculum.
2. Teaching and learning styles and methods are commensurate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s rights.
3. Pupils actively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throughout the school.
4. Committed leadership to building a rights-based school ethos through strategic direction and appropriate professional development.

One education authority in England, Hampshire, has introduced its own version of the UNICEF programme called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in Schools. The programme includes training for teachers in HRE based on the CRC. The success of the programme has been noted by government education inspectors. For example they wrote about one primary school:

Pupils benefit greatly from the local and global dimension the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programme gives to the curriculum. Through it pupils learn to appreciate the cultural diversity within society.

Formal agreements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One feature of many successful HRE programmes in schools that has been used in Hampshire is the drafting of agreements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Here is an extract from an example made by 10 year olds.

Sample Class Code of Conduct Agreement based on rights, responsibilities and respect

We recognize that every child in our school has the right...

...to the opportunity to practice their own religion and culture

 and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ir practice of their religion and culture.

...to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and we have the responsibility not to say or do nasty things based on someone's differences. We will respect everyone's differences

...to protection from abuse and neglect

 and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bullied or picked on. We will respect their time alone but are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no one is left out.

We have all agreed to this code of conduct and recognize our responsibilities in making sure every child enjoys their rights.

(Covell and Howe, 2005).

Children's Rights and the Authority of Adults

Research in a secondary school in London that also implemented a programme of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human rights noted that teachers were anxious about discussing rights with young people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it would undermine their authority. In fact, the introduc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about rights gave the opportunity for the young people to understand the rights of others including the teachers. In this way they becam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s improved. One important recommendation from the research is to help teachers better understand human rights at the beginning of a programme of HRE (Hudson, 2005). There are a number of other examples of successful HRE programmes in Europe in

Osler (2005).

Parents too may be concerned that their children's achievements at school may be undermined by too much attention to rights. However, a recent study of 21 countries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have enjoyable schooling and high results, although not all countries achieve this (Unicef, 2007).

Conclusion

Implementing HRE in England has been influenced by the work of Inter-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UNESCO and UNICEF all of which have provided encouragement and broad strategic guidance. The British government ha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DFES), has set out a programme of study that includes knowledge of human rights as an important dimension. Inspectors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stud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have developed materials and also created networks and provided training.

We are both involved in producing programmes of teacher education at master's level that are open to educators anywhere in the world. One weakness in the implement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UK is the lack of trained teachers. We have worked hard to remedy this through programmes provided by our universities. We attempt to disseminate good practice, familiarize our students with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invite them to engage critically with the research literature and apply it to their own situations.

The interdisciplinary MA in Education and Democracy at the University of Leeds, led by Professor Osler, is designed for graduate students and experienced professionals who wish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ts unique feature is combining education modules and modules taught by political scientists.

The programme has been developed in response to renewed interest across the globe i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political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in response to growing interest in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It attracts those responsible for developing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ar and policies for schools and

those interested in careers in trans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UNESCO.

The programme:

- offers participants an opportunity to explore contemporary educational and political challenges in a changing world
- examines human rights principles as an underpinning for citizenship at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develops knowledge and skills at the interface of education and politics
- develops knowledge and skills relevant to careers i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lated fields

The MA Citizenship and History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led by Dr Starkey is offered as a distance learning course by the University's external programme. Students study from home and there is no requirement to travel to the UK.

The programme

- is created by leading international academics and tutored by Institute of Education experts
- combines accessible theory with strong practical orientation
- provides quality materials in print and online
- adopts an intercultural approach adapted to any national or international context
- promotes a culture of human rights through education
- brings together students from across the world through computer conferencing

References

- Alderson, P. (Ed.) (1997) *Changing our school* (Plymouth, Highfield School).
- Alderson, P. (Ed.) (1999) *Learning and inclusion: the Cleves School experience* (London, Fulton).
- Alderson, P. (2000) School students' views on school councils and daily life at school, *Children and Society*, 14, 121-134.
- Carter, C. & Osler, A. (2000) Human rights, identities and conflict management: a study of school culture as experienced through classroom relationships,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0(3), 335-356.
- Claire, H. (2000) 'You did the best you can': history, citizenship and moral dilemmas, in: A. Osler (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oke on Trent, Trentham).
- Covell, K. & Howe, B. (1995) Variations in support for children's rights among Canadian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3(2), pp. 189-196.
- Covell, K. & Howe, B. (2005)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report on the RRR initiative to Hampshire County Education Authority* (Winchester, Hampshire County Council).
- Cunningham, J. (2000) Democratic practice in a secondary school, in: A. Osler (Ed.)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schools: diversity, identity, equality* (Stoke-on-Trent, Trentham), 133-142.
- Davies, L. (1998) *School councils and pupil exclusions* (London, School Councils UK).
- Hudson, A. (2005) *Citizenship Education and Students' Identities: a school-based action research project*, in: A. Osler (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oke on Trent, Trentham).
- Osler, A. (2000) Children's rights, responsibilities and understandings of school discipline,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15(1), 49-67.
- Osler, A. (Ed.) (2005)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oke on Trent, Trentham).
- Osler, A., Rathenow, H. & Starkey, H. (Eds.) (1996) *Teaching for Citizenship in Europe* (Stoke, Trentham).

- Osler, A. & Starkey, H. (1996) *Teacher Education and Human Rights*(London, Fulton).
- Osler, A. & Starkey, H. (2005) *Changing citizenship: democracy and inclusion in education*(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Osler, A. & Starkey, H. (2006)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 review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995–2005*,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21.
- Rowe, D. (2003) *The business of school councils: an investigation into democracy in schools* (London, Citizenship Foundation).
- Taylor, M.J. & Johnson, R. (2002) *School councils : their role in citizenship and personal and social education* (Slough,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Trafford, B. (2003) *School councils, school democracy, school improvement: why, what, how*(Leicester, SHA).
-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7)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수도권역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on Human Rights Education:
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일시 · 장소 ||

◇ 수도권역

- 일시 : 2007. 2. 22.(목) 10:00 ~ 17:30
- 장소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대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

목 차

제 1 부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 발표 】 인권교육 도입하기 - 도전,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 토론1 】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The Need for Both University and Differentiation in Human Rights Education)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 토론2 】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도입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학장)

제 2 부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 발표 】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 토론1 】 학교 인권현황 및 과제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 토론2 】 학교내 인권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신정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

【 토론3 】 가고 싶은 학교의 첫걸음,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 토론4 】 학생인권을 위한 정부의 역할

유윤종 (청소년인권교육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5 】 학교에서 인권 인식하기

고옥경 (서울 청담중학교 교사)

제 3 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 발표 】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 사례발표1 】 도전! 인권교육과 함께 한 1년

지선아 (경기 북창초등학교 교사)

【 사례발표2 】 학교 인권문화 개선 방안

김유성 (경기 죽전고등학교 교감)

Session I.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Integration of Human Rights Perspectives
into School Education

발표(Presentation)

인권교육 도입하기- 도전, 문화, 교육과정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토론 (Discussion)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The Need for Both Universality and Differentiation in Human

Rights Education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 도입

(이재연 숙명여대 교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강순원
(한신대학교 교수)

Audrey Osler교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권교육,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관련분야의 권위자이다. 영국 리즈 대학교(Leeds University)교수님이긴 하지만 유럽연합 및 유네스코 등의 관련 활동을 통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등 영국을 넘어선 국제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 인권교육에 관하여도 인권교육의 보편적 틀을 중심으로 미래를 향한 심도 있는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오슬러 교수의 논제에서 지적하신 세 가지 검토 사안은 우리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학교교육을 둘러싼 교육여건이다. 즉, 학교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감이 균형 있게 조화된 인권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아동권리협약(CRC) 정신을 중심으로 학교 인권교육의 종합적인 틀을 제시하며 셋째, 학교교육과정과 학교문화가 이러한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수원리를 제시하는 것. 오슬러 교수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세 가지 논제는 한국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학교교육과정만의 개발을 통해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반드시 학교문화(풍토)의 총체적인 환경이 인권 친화적(human rights-friendly)방향으로 함께 설정될 때 인권교육에 대한 냉소주의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처한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논지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첫째, 영국에서도 학교의 권위주의적 문화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인권교육은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한국에서 인권교육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켜 줄 주도적 교육주체가 누구인가?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하고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을 통해 매우 권위적이고 심지어는 전제적이기까지 한 군부독재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과 민주화 운동의 결과 오늘날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독립국가로 인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인권의 신장으로 이어졌고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사회풍토로 인해 일부는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이를 사회적 혼란과 경쟁력 저하로 인지하고 있다(Kang, 2002). 특히 학교는 사회적 출세의 사다리로 인지되었던 오랫동안의 관행에 따라 교육성공이 사회적 성공의 지표로 굳어졌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교직은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평가받으면서 현재 교사는 최상의 학업성취에 도달한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직의 사회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별로 높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한국적 교육환경은 교사의 이러한 사회적 지위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입시위주의 권위주의적 교육은 한국의 교육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교육적 화두이다. 이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소자녀화 현상으로 인해 포기되어졌고 아이들의 입시교육은 일부 학교보충교육과 사교육에 일임되어 있고,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로 인한 교육정책은 대부분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의해 교육주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아이들과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쉼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진 대열에 올라섰지만 기실 CRC에서 언급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기 어렵다. 결국 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에 의해 외부에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낮은 만족감은 아이들을 조기유학으로 내몰고 혹은 사교육으로 빼앗겨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학교'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학교환경이 되었다(조혜정, 1997). 결국 학업성취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교육과정은 주요 교과 중심으로 크게 왜곡되어 있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특수교육권은 거의 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원노조나 학부모단체들도 자기 자녀뿐만 아닌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학생들은 이에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 있으나 아직은 그 소리가 옹기 수용되고 있지는 않다.

오늘러 교수는 특히 교사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지원하여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학교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한국의 교사들은 자기 교과교사로서의 정체감을 내세워 인권교육을 또 하나의 잡무 혹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교사의 도움 없이는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을 만들 수 없으나 동시에 교사도 인권교육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누가 학교 인권교육의 중심적인 교육주체인지에 관하여 신중히 논의하고 교육주체들의 협력을 당위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학교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CRC와의 관련이다.** CRC가 인권교육의 중심으로서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for All)’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오슬러 교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교가 직면한 과도한 교육과정,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성평등, 인종차별주의 금지, 통일성과 다양성을 향한 어린이 교육, 학원폭력 예방 및 금지, 등은 어느 사회나 그 정도는 다르지만 겪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은 분명 CRC정신과 철학에 맞지 않음으로 반드시 노력하여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부분 다 역사적 기원이 있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사연수 시 다루어지는 인권교육에서는 현상과 그 뿌리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국과 같은 강대국의 식민지였었고 인종차별주의의 기원이 식민통치에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주제들은 개인적 수준의 인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수준에서의 결속권(right to solidarity)도 있다는 점을 CRC에서 반드시 짚어줘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CRC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슬러 교수도 지적했듯이 아동권리는 반드시 아동의 권리를 위한 기반구축(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Participation)에 근거해야 하나, 학교교육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CRC를 관장하는 부처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한국 정부 관련부서는 보건복지부이나 학교교육 관련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 정부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우리 사회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CRC를 다루어야 할 어떠한 책임과 근거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지도자들이 CRC를 근간으로 하여 학교를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CRC를 인권교육의 기반 철학으로 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 인권교육의 교수원리는 인권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교 안팎에서의 차별이 논쟁 중에 있고, 교육주체들의 학교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충분히 열려있지 않으며,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성의 문화는 아직도 부족하고, 기본적 자유는 정의롭게 논의되고 존중되지 않으나 학교에서는 자유가 책임감을 수반하지 않는 방종으로 비쳐져 회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과 통신의 놀라운 성장으로 인해 정보인권의 문제가 사생활자유와 함께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여전히 학교교육을 둘러싼 학교 안에서의 권한관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 주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가상세계를 통한 창의적 교육개발은 언급되고는 있으나 실천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오슬러 교수가 제시한 인권교육의 교수원리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인권 교육을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 원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슬러 교수는 결론적으로 인권교육과정의 개혁만으로는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고 반드시 학교문화(풍토)의 개선과 함께 인권교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문화가 잔존하는 사회에서는 영국과 같이 학교중심의 교육운영(local governance)에 의해 학교지도자의 역량과 의지가 CRC에 근거하고 있으면 교사들과 함께 노력하여 학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기 어렵다. 학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학교운명을 책임진다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중앙집중적 교육행정(centralization in educ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개혁 + 학교문화(풍토) 변화 + 국가교육정책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학교가 개선되기란 요원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국가인권정책방안(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제시를 총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특히 '인권교육강화를 위한 세계 프로그램(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에 반영되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주체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WPHRE 19조에 의거하여, 인권교육이 아동 중심적이고 참여적인 교수학습과정, 교육자에 대한 새로운 역할정립을 통해 학습 성취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그로써 사회적 갈등과 결속에 기여하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 한층 더 확산되어 전 사회의 인권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이다.

Summary

The Need for Both University and Differentiation in Human Rights Education

Kang, Soon-won
Professor of Hansin University

I agree with Professor Osler's following three suggestions which are universally applicable in the HRE. First,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human rights education, which strike 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ose involved in education; Second, the framework should uphold the spirit of the CRC and; third, a pedagogic principle should be offered in a way that the school curriculum and school culture can be harmonized. Now, I would like to make three suggestions which are particularly applicable to the HRE in Korea.

Too much test-oriented and authoritarian educational method in Korea gave rise to side effects: students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academic performance which, in turn, has made their parents send them overseas; the curriculum has been distorted to focus on major subjects which help students to enter best colleges; students who needs special education have been ignored; teachers' unions and groups of parents are reluctant to hail "education for all"and; students cannot have their voice heard in school. Professor Osler argued that teachers should take initiative to create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 However, teachers in Korea like in Britain are overloaded with grading and reporting work and they are victims of the HRE. Therefore, rather than asking for cooperation of actors in education, we should consider a tailored measures suitable for each school's condition. He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cooperate.

Second, spreading contents of the CRC has limitations in Korea because there are two ministries dealing with the CRC and school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in charge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charge of the CRC) A lack of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has gotten the responsibility of the CRC education nowhere. Thus, we need to think hard how we can coordinate ministries' work and responsibilities together to take advantage of the CRC as ethos of the HRE.

Third, unlike the local governance system of Britain, Korea's educational system is very centralized and operated by the MOE. Therefore, it would be a remote dream to foster a human rights friendly culture in school unless the school curriculum reform, change in ethos of schools, and revision of the national educational policy are combined in an effective way. In this context,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should guide a human rights education policy and be implemented so that as many people as possible can have access to education.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 도입

이재연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학장)

오슬러 교수의 '인권교육의 도입'에 관한 발제문은 영국의 학교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인권과 교수법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적인 골격과 학교당국자들의 리더십이 강조되었다.

영국과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문제들이 유사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앞서 고민했던 나라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인권에 관한 영국은 긴 쟁취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교육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복잡한 협력 과정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켜 인권친화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과 일부 검증된 연구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학교는 가장 아동친화적인 장소이자 인권친화적인 장소이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오늘날 많은 심리적 사회적인 증상들을 보인다. 폭력과 왕따, 과도한 경쟁, 등교거부와 공포, 교실 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은 대부분의 교실에서 벌어지고, 사교육은 범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로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권위에 복종하여 구체적인 규칙을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적절한 교육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한국에 대한 UN의 2차 권고에서 "경쟁위주의 교육 지양 및 아동권리협약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을 검토" 하고, 아동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 받았다 (CRC/C/15/Add.197).

아동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들어서면서 인권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중요하게 여겼다. 즉,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교육하고, 아동은 자기의 관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며 (CRC 12조 1항),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CRC 29조 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학교는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아동의 존엄성을 일관되게 존중해야한다.

학교생활에서 아동 참여는, 학교위원회, 학생회, 또래 교육, 또래상담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아동의 관여가 학습과 권리 실현을 체험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장려되어야 한다(Report on the 26th session, 2001, CRC/C/103, Annex IX, para. 8)

발제에서 권리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교수법상의 6가지 원칙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중에서 아동참여권은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동권리교육 또는 인권교육의 시작과 완성은 참여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여는 인권의 본질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부여하는 첫 번째 인권협약이다. 더욱 특별한 점으로 아동권리협약은 적절한 정보, 표현의 자유, 의사결정권,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참여권을 보고 있다. 이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기 위한 수단이자 다른 권리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사회는 아동을 성인과는 다르게 다룬다. 아동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배제된다. 성인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기 일쑤이다. 의사결정에서 아동을 제외하는 일은 통상적인 일이고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참여는 아동 자신의 생존, 발달, 보호권을 요청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

아동의 참여는 아동기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에서 아동참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성인의 태도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문화는 자녀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시 위주의 양육방식도 문제이지만, 부모가 지니고 있는 권리인식의 수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서 아동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부모들은 당연하게 여겨왔다. 우리의 교육 풍토는 교사 주도의 교육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아동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학교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참여권 신장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동참여는 특권이 아니다. 소수의 특별한 아동참여이벤트에 다른 아동들에게 소수 아동을 '대표시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동참여를 이야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부모, 교사 및 기타 아동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동에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과 간섭하면서 그 제한과 간섭의 명분은 대개 아동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배려를 통한 아동참여는 아동이익최선의 원칙과 직접 관련된다. 아동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이나 혹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아동에게 적합한 것인지 즉 아동친화적인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학교처럼 아동과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관에서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학습 성과가 향상되고,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민주적인 가치 확립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II.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HRE in Schools: Experiences of Korea

발표(Presentation)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조금주 상명대학교 교수)

토론 (Discussion)

① 학교 인권현황 및 과제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교사)

② 학교내 인권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신정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

③ 가고 싶은 학교의 첫걸음,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윤지희(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④ 학생인권을 위한 정부의 역할

유윤종(청소년인권교육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⑤ 학교에서 인권 인식하기

고옥경(서울 청담중학교 교사)

학교 인권현황 및 과제

천 희 완
(전교조 참교육실장)

여기서는 학교 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번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포함된 조사 내용과 이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전교조는 창립 때부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교원단체,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인권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나 소속 조합원들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1. 학생 인권과 관련된 학교 현실에 대한 의견

교사는 일차적으로 학교와 학급에서 교육과정이 정한 일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각종 요구와 부딪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즉, 학교에서 학습 목표 달성이라는 교사의 인위적인 활동과 청소년 본연의 자연스러운 욕구 충족에 따른 학생의 활동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 달성과 학생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이렇게 상호 갈등의 면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이 갈등의 면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학생 인권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이 내면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해진 학습 목표 혹은 입시 성적 향상을 위하여 열의를 갖고 교육활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체벌도 할 수 있거나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일정한 문화로 학교장을 포함한 많은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에게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정시에 등교하

여 교육과정에 정해진 수업 시간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생 발달 정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학교 운영을 한다고 호평하기보다, 너무 공부를 안 시킨다고 혹평하고 심지어 전학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나도 어느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꽤 있는 것 같아 보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낮거나 요구가 있다고 하여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곤 합니다. 학습 성과 달성 우선의 사회 상황에서 학생 인권은 찻잔의 태풍으로 머물곤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고 전학을 가는 것은 보았어도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전학을 가는 현상을 보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은 학업성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도 학습 시간을 줄여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나 국가의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요구가 있다고 하여도 그 목소리는 작으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어느 학교에서 강제 자율 학습이 심해 고통을 받던 중 전교조 학교 분회가 강제 자율 학습을 없애자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고 열의가 없다고 성토를 하였는데, 자발적인 자율 학습 이외에 강제로 일률적으로 자율 학습을 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조합원들의 행동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지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선생님들은 학생의 인권과 건강을 중시하는 교사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선생님이로 취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논의는 현실에 입각한 논의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 현실과 법규의 괴리, 학교 활동의 목표에 대한 상이한 판단,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과 이해 당사자의 의식상의 혼란 등은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의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중에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침해당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 학생 간에 돈을 빼앗거나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학생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2-3번 혹은 다수에 걸쳐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생과 상담하고 달래고 화해시키고 혼내고 처벌을 하고 그러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 않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과 규칙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온정적인 문화를 가졌고 법치주의가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과 규칙에 따른 일처리보다는 법과 규칙에 맞지 않더라도 온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이 더욱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정해진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규칙이 있더라도 그냥 규칙일 뿐 엄격히 적용되는 살아있는 규칙이 못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각종 제도나 문화들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온정주의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직업을 얻게 한다는 취지에서 학력 신장을 우선시하는 풍토도 생존권과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교육 제도와 법규 그리고 활동 양식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인권의식이 향상된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최상 가치인 인권의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2.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의견

첫째, 무엇보다도 학생도 국민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존재임이 확인되고 명확히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책무성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와 책무성은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학교 주변 사회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 조성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이 힘들고 수업에 몰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학년 초 며칠은 수업시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후는 수업 시간에 나 몰라라 하고 담당 교사와 부딪치게 됩니다. 이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되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늘상 노출되게 됩니다.

셋째, 학급당 인원이 감축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급에 수업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한 학급에 35명은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외의 경우는 40명에 육박하는 학급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떠드는 아이, 뒤에서 소

곤소곤하는 아이, 옆드려 자는 아이 등등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서 교사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정상 수준을 넘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교실 속에서 노동 조건이 나빠 자신의 수업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멸감을 갖게 되는데 이 속에서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 한 학급에 35명이 되면, 교사의 충분한 관심과, 학습 지도를 받기가 어려워 학습권이 침해됩니다. 또한 대규모 밀집 집단에서는 사회 구성원끼리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장의 지도 방침과 방향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인권 보장 지침과 교육 지침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교칙이 상세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 방침과 지침이 명문화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활동에 대하여 상급 행정기관의 지도 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 장학이나 학교 평가 사항에도 넣어야 합니다. 온정주의적 문화 속에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규정대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포함하여 외부적 지도 체제를 통해야만 인권 교육이 정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3. 전교조의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입장

전교조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에 대하여 종종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행동도 하지만 체벌에 관한 지침 등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제안과 활동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다소 적응하기 힘들더라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교조의 창립 정신이 이러한 지향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주장하여 온 것 중 두 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첫째, 학생들이 주체가 되고 학교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해야만 인권 보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학생회 법제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주장합니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고 활성화되어 교육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각각 그리고 함께 자신의 몫을 책임질 때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학생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제한할 경우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규칙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규칙은 공개되어 학교 구성원과 외부에서 쉽게 자세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을 하는 교육 공동체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제한이 아니면 학생에게 기본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의 학교 내 서클 활동, 학교 외 단체 활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입니다.

4. 연구 팀이 조사하고 정책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의견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다는 소신 혹은 명분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학교 규칙의 제정, 학생의 참여 보장, 교사와 학생의 협의 및 소통 구조의 제도적 마련, 인권 교육의 필요성, 인권 관련 갈등을 해결할 기본 철학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동의합니다.

인권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의 발굴과 전파 및 홍보, 학생 인권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학생인권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제안된 정책 중 인권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과 전파에 전교조는 적극 찬성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할 것입니다.

전교조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 인권법 제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론회 및 공청회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기관, 시민 단체 그리고 제 정당과 협력하면서, 학생인권법안이 국민과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내 인권의 현주소와 개선과제

신정기
(한국교원총연합회 교권국장)

1. 들어가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인권이 향상되고 개선된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을 논할 때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은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학교내 인권을 논할 때에는 학생을 위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교화와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의 인권보호에 관해서는 헌법과 교육관계법,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학생의 인권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학생의 의무 규정도 추가하여 교원의 교권과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인권의 주체이고 학생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대하여

발제문의 내용은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교원·학부모·학생의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차이를 통해 각 교육구성원이 갖고 있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평가·제언은 학교가 처해 있는 다양한 현실을 감안하기 보다,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고, 특히 문제해결 방식을 ‘법제화’, ‘지침·규정 제정’ 등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발제문에서도 나타나듯 학생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교육구성원간 인식차이가 큰 상황에서 학교현장에 대한 고려없이 법적 측면만 강조하게 될 경우 학교현장에는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발, 복장, 체벌 등 학생인권 문제가 거론 될 때마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신체적, 인격적 발달 정도가 다르고, 남학생과 여학생, 실업고와 인문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어할 때 명시적인 효과외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각기 상황이 다르므로 교육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켜나가도록 하는 민주적 운영이 중요할 것이다.

두발과 관련해서는 비단 본 연구 뿐만 아니라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국 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청소년인권의식 및 고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선정한 인권침해 1순위로 ‘두발규제’를 꼽고 있다. 또한, 두발규제 문제는 두발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벌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학생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부분이다.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원의 지도라 할지라도 학생의 두발에 대해 강제적이거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두발의 제한 및 규제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즉 학생두발 제한 및 규제는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되, 단위학교는 두발 관련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 반드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벌문제는 오랫동안 해묵은 논쟁으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최근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물론, 학교현장에서 체벌이라는 지도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가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체벌금지의 당위성만 강조되어서도 안된다. 체벌은 교사의 학생지도방법의 하나인 징계행위로서 법이나 제도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성질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교육적인 식견에 맡겨야 할 문제이다. 가뜩이나 교사의 권위가 하락하고 학생들은 거칠어지고 있으며,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부모의 간섭이 도를 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학생의 인권문제와 함께, 교권의 문제와 어우러져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는 있다. 성적향상 또는 두발, 복장 등 교칙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체벌은 금지한다던지, 교육적 체벌의 범위 한계,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학생인권에 대한 당위성과 현실성간의 괴리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따라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발제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이로 인한 학생인권에 대한 좁혀지지 않은 인식차가 큰 문제로 여겨진다. 예를들면 체벌문제에 관해서도 교사는 충분히 체벌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벌을 주었으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왜 체벌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을 받았다고 여김으로써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 부재,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의 의식 부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교사들중 대다수는 인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게다가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또는 교사가 된 이후의 재교육 과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의 내용이 무

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평소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대나 사범대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이수 과목으로써 인권교육보다는 유사한 과목, 예를 들면 교직윤리나 교사론 등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또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학생 인권이라고 함은 차별, 두발자유, 교복자유, 학내 종교의 자유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은 소극적인 권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의 적극적인 목적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제로 깔려 있다. 자신의 권리만을 가르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 선언도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요한 핵심은 타인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활동도 강화하여야만 한다.

셋째, 학교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칙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부분(차별, 두발, 복장 등)에 대해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이 개선되고 학생들도 정해진 기준을 스스로 지키고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회 법제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를 오히려 상위 법령에서 학교 자치 강화라는 명분에 근거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단위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자치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국가는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불편해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교육환경에 관한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탈의실은 반드시 필요하며, 겨울철 화장실 온수 사용, 학교급식 개선, 상담교사 부재 등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체벌, 두발 등 학생인권 문제들이 거론될 때마다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전국의 1만천여개 학교의 24만개 학급에서 42만 명의 교원과 1,200만 명의 학생이 만나는 장(場)이다. 수업시간과 생활지도의 현장은 항상 가변적이다. 결코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4. 마치며

학생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당연하다. 이번 인권교육 국제워크숍을 계기로 우리 학교현장이 인권친화적인 장소로 변하는데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인권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모든 교육 공동체는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가고 싶은 학교의 첫걸음,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윤 지 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들어가며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를 자처하고 모임 뒤끝마다 교육이야기로 끝을 맺지만 교육문제만큼 풀기 어려운 영역도 없을 것이다. 특히 사회변화와 가장 무관하게 고여 있는 곳이 학교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학생인권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더딘 부분이다. 이따금 극단적인 체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체벌 찬반 논쟁만 뜨겁게 벌이다가 어떤 합의나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내 잠잠해지고 만다. 작년 여름에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지각한 학생을 교사가 몽둥이로 200대를 린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해 기대하였으나 지금까지 별 다른 활동도 없고 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체벌 금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도 무시되고 있다. 교육단체와 청소년단체들의 노력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나 정치적 상황에서 성사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오늘 자리가 하나의 성과라도 얻고 진전을 이뤄내길 바란다.

1. 학생인권신장을 발목 잡는 조건

1) 학생의 비주체적 지위

학생인권이 신장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 즉 미성년자이며 미성숙한 존재이고, 교육을 받아야 할 비교육자의 신분이라는 데 있다. 모든 인권운동은 당사자들에 의해 가장 힘 있게 추진되는 것이다. 흑인인권, 여성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등 여러 인권의 문제가 당사자들의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동력이 되어 신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은 학생 자신들이 중심과 주체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다. 모든 의사결정의 비주체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신장의 주체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이 학생인권이 여타의 인권보다 더 열악하고 그 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길 외에 없다. 학교운영에서 학생의 의견이 정당하게 제기되고 수렴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 격차

최근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실천해 온 모범 사례나 우수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또 많은 학교들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학생인권과 관련한 모범사례나 우수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만큼 여러 교육문제 가운데 가장 척박하고 열악한 것이 학생인권문제이다. 그것은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이 교사가 중심이 되어 열성을 다할 때 그 성과가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학생인권부분에서는 교사들의 관심과 열의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 있다. 학생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의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생인권 신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발제의 실태조사에서도 보듯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72.6%가 청소년의 인권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학생들은 33.2%만이 잘 지켜준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교사들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열성적인 노력들이 나오기 어렵다. 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인권 신장의 지름길이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그나마 고무적이다.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체벌 및 복장에 대한 학교 규율을 정할 때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 격차뿐 아니라 각 집단내에서의 인식의 차이가 많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학교 규율이 인권적 관점에서 정해지기보다 목소리크고 주장이 강한 사람에 이끌리거나 각 집단 사이에 힘이 센 쪽의 의견에 기울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3) 입시경쟁교육 및 교육논리의 우위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한 삶은 모두 대학입학 이후로 유예되어 있고 대학입학을 위해 편재되어 있다. 학교의 학습분위기를 해치는지, 공부에 방해가 되는지, 공부시간을 조금이라도 잡아먹는 행위인지 등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공부와의 득실에서 판단된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그 기준에서 양해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은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입시경쟁교육이라는 치열한 한국적 교육 상황이 학생인권을 유예해도 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와 같은 교육상황 역시 학생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흔히 인권만을 보장하다가 교육을 할 수 없다고들 한다. 떠드는 학생 한 명을 놔두다가는 나머지 다수의 학생 교육이 침해되니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각적인 행동의 중지를 위해 체벌이나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의 논리가 인권의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전개하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논리와 인권의 논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인권을 신장하고 고려하는 노력이 곧 교육인 것이다.

2. 학생인권 신장 방안

1) 모든 학교교육에서 학생 참여의 제도화

발제에서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을 위해 학생대표와 교사 대표의 협의체 구성이 법제화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자신들의 문제인 학교생활규칙의 제·개정에 주체로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발제에서 제시된 학생회의 예·결산권의 확보는 학생회가 자치조직으로서 서는 데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현재는 전혀 고려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학생회의 법제화, 학생회의 예·결산권과 자율권 확보,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등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몇몇 사려 깊은 학교장과 교사에 의해 배려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학생인권교육 실시

교사(학교장 포함), 학생, 학부모 모두 아직 인권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수준이다. 교사는 교사양성과정과 임용 후 정기적인 연수과정에서 인권교육 이수 필수화를 통해 학생인권을 포함한 교사 자신의 인권, 학부모의 권리 등 학교구성원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 및 권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를 깨고 스스로의 인권과 권리를 찾는 주인으로서 도록 돕는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교육이 정례화되어야 하며 학생인권교육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학생인권신고센터 설립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은 학생인권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신고센터가 갖는 부정적이고 갈등적인 이미지 때문에 '학생인권지원센터'(가칭)와 같이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인권예방활동을 전개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 인권실태조사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이때 이 센터는 교육관료들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민간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학교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어도 인권적 관점에서 제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센터'가 교육행정청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별다른 진전이 없을 수 있다.

학생인권을 위한 정부의 역할

유윤종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1. 학생인권 현황을 '폭로'하는 것의 한계

“학생인권의 현황과 도전 과제”가 주제니만큼 학생인권의 현황에 대해 먼저 말해야 하겠지만, 학생인권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학생인권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젠 다소 식상하게 느껴진다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해야겠다.

학생인권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최순영 의원실에서 작년 국정감사 때 썼던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100여 개 학교에서 들어온 신고내용을 보라. 두발규제를 비롯한 용의복장규제, 폭언, 각양각색의 체벌, 강제자율보충학습, 건강권·생존권·생명권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성(性)적 권리 침해, 의견반영권 박탈, 장애청소년에 대한 배제...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수많은 유형들이 있다. 학생인권의 현실이 이렇게 열악하고 끔찍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면, 그 자료가 딱 적당할 것이다.

나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로 들어온 사례들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자료 만들기에 한몫을 하긴 했지만, 그런 식의 고발에서 한계를 느낀다. 신문에는 200대 체벌이라거나, 바리깡으로 자르고 하키채로 때리는 현실이 보도되지만 그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심한 학교도 있다.(혹은 “꽤 많다.”)”라는 하나의 자극적인 가십거리 이상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은 교사의 재량이거나 학교장의 재량, 혹은 열성적인 교육으로 간주된다. 청소년은 정치적 주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가 100대 넘게 때리면 신고하라.”라는 말처럼,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대까진 교육이지만 3대부터는 폭력이라는 어떤 교총 교사의 말처럼, 머리에 바리깡도 안 대는데 무슨 인권침해냐는 말처럼, 혹은 어떤 악플러의 나 때는 저것보다 훨씬 심했다 — 엄살 부리지 말라는 말처럼, 피해의 심각성이 가시화되어야만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다. 학생인권침해가 “교육”이 아닌 “폭력”으로 인지되려면, 그 정도가 심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침해는 가정폭력과 닮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언하고 그 관점을 계속 전달해야만 한다. 단지 학생인권의 실태가 어떻다고 폭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권의 관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계속

해석하고 발언하고 사회의 기존 인식들 및 구조·관계들과 충돌하고 그것들을 뒤 흔들고 바꾸어가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성인-청소년, 혹은 교사/학부모/학교/사회-학생 사이의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교육vs인권?

그래서 나는 발제에서 엿보이는 일부 관점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소해보이지만, 학생인권 문제는 교육이라는 가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갈등이며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 문제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이냐의 교육 패러다임의 차이이다.

이렇게 봐야, 교육과 인권의 가치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는 모호한 목소리는 폐기되고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을 창조하거나 도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인권’이 정말로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목적이고 원리라면 학생인권을 침해해야만 가능한 교육, 학생인권을 침해해야만 유지가능한 학교란 건 사라지거나 바뀌어야 한다. 좀 더 강하게 발언하자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면, 지금 학생인권을 침해해가며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교육이 아닌 ‘무언가’일 터이다.

특히 외국 교칙들에 대해 그 명확성을 언급하는 것은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육과 인권의 가치 충돌’ 관점과 유사한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인권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내용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3. 정부 개입 자체를 두려워하진 말라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발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정부 개입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다. 각 학교 단위의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민주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고개를 가웃거린다. 만약 학교에서 살인이나 인체실험이나 고문(사실 국제기준에서 체벌을 비롯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처벌은 고문의 일종으로 규정된다.)이 자행되고 있다면, 정부 개입을 망설일 ‘여유’가 있을 것인가? 정부의 개입을 염려하는 것은 십

분 이해하지만, 그것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학생인권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마치 가부장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내에게, 그 정도 폭력을 가지고서 집안일에 정부가 끼어드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 또한 국가나 정부 개입의 '효율성'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고민은 갖고 있고 전시성 행정이 다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의무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과가 염려스럽다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일 것이다.

4. 정부의 역할

정부는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인권을 옹호하고 되찾기 위한 움직임 또한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발제에서는 “바꿔주세요.”라고 표현되었는데, 실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바뀌달라는 부탁까지,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목소리들은 더 강하게 억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런 저항의 목소리들을 수용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무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 토론회가 학생인권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텐데, 학생인권에 대한 주장이 가시화된 게 언제이며 또 이런 토론회는 대체 몇 번이나 있었는지도 모를 지경인데 아직도 실질적이고 성실한 제도·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정부의 학생인권 신장 의지의 진실성을 의심케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려고만 한다면 사법, 행정, 입법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이 있다. 사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했던 강의석 씨의 퇴학을 무효로 결정한 판결처럼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을 위한 저항과 불복종을 옹호하는 판결들이 나와야 한다. 행정부에 속하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종종 포괄적인 지침만 내려 보내고 되도록 학교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인권보다 학교의 독재적 자율성, 혹은 학교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태도다. 교육청의 학생들의 민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태도, 그리고 학교 감사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학생면담도 하지 않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인권에 관한 집회를 할 때마다 감시 비슷하게 나오는 장학사들과 교사들을 없애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입법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학생인권법안'처럼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히 주문하자면,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자유나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의 중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교육상 필요최소한' 같은 모호한 언어를 쓰기보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즉 정말로 교육상 필요최소한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쓴 소리를 좀 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작년 여름에 있던 청명고등학교 사건에 대해 내놓은 결정문은 실망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명고가 학생들의 두발자유 학내시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2차 시위를 막기 위해 소지품검사까지 하여 시위물품을 색출했으며, 휴대폰 문자를 검사하고 외부단체·언론과 접촉한 학생을 밀고하라는 설문지를 돌리고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을 추적한 사실 등에 대해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낸 진정 중 학내집회나 소지품 검사 등에 관련된 부분을 기각했다. 학교 측의 서면 답변 한 장만 받고 현장 조사나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문제에 대해 침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이런 자리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과연 학생인권 증진의 의지와 그에 대한 성실성·충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도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한다. 학생인권에서 인권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학교의 억압적 인권현실에 대한 저항과 불복종을 장려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은 분명하다. 인권상황과 인권교육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인권이라는 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란 점, 또 인권상황의 개선이 없이는 인권교육은 기만적인 교육이 되리란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내용에 대해 한 가지 부탁하자면, 나는 인권교육에서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키면서 고쳐야 한다거나 절차를 우선 따져야 한다는 식의, 오랜 전통을 가진 불복종 운동과 인권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저항을 무마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저항과 인권을 위한 행동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Session III.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Successful Implanta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발표(Presentation)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Creating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Lessons from Experience of Britain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사례발표

도전! 인권교육과 함께 한 1년

지선아 (경기 북창초등학교 교사)

학교인권문화 개선방안

김유성 (경기 죽전고등학교 교감)

도전! 인권교육과 함께 한 1년

지선아

(복창초등학교 교사)

1. 인권교육 그 자체가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체는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머릿돌이다.”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2006년 3월, 복창뜰.....인권교육의 중심에 서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은 아직 걸음마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은 만만치 않았다.

3월 초 연구학교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은 했었지만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인권에 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었다. 교육을 책임진 교사들 중에서 인권연수를 받은 교사가 2명이었으니.....

외부에 인권교육연구학교가 되었다는 말을 했을 때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가능해? 인권적이지 않은 것이 뭔데..... 인권교육은 뭐 특별해.. 그게 그거지.....’ 이런 냉소적인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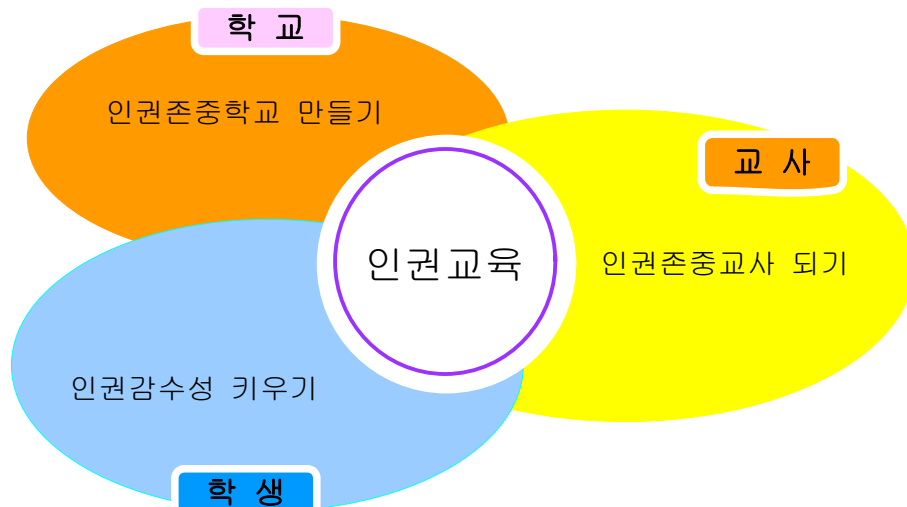
그러나 본교교사들은 인권교육이 무엇이며,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한편으로는 막막해하면서도 돌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인권교육과 다른 교육들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즉 학교교육에서 중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도덕교육과 어떤 차이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었다. 본교 교사들은 제 1회 토론주제를 ‘인권교육과 도덕교육의 차이’라 정하여 열띤 토론을 한 후 본교 나름대로의 인권교육방법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하였다.

둘째,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실행하면서 궁극적인 목표 설정이었다. 사회일각에서 학교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표현하곤 한다. 이 말은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비인권적이며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비인권교사임을 암시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인권교육이 변화의 주체를 먼저 학교와 교사에게 두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학교들은 연구과제의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인식되는 학교, 교사의 변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교의 모든 교사들은 인권교육이 교사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인권존중학교, 인권존중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아울러 '다양한 인권체험 활동을 통한 인권존중의식의 내면화' 주제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인권교육의 전제조건이면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전제조건 그리고 최종목표>

2.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 인권존중학교 만들기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인권적이어야 한다. 학생, 교사들이 함께 학교교육활동의 전체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비인권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비인권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수정보완활동을 계속 실시하였다.

- ⊗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전교어린이회의(복창인권어린이회) 구성에서부터 활동을 인권적인 틀 안에서 실시하였으며 복창인권어린이회 대표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게 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알게 하고자 하였다.
- ⊗ 복창생활규정의 체벌규정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인권적요소인 체벌의 근절을 위해 체벌규정을 과감히 삭제하였다.

- ☛ 교사들의 토론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아 토요반성조회의 폐지, 전통적인 운동회의 탈피, 실내화주머니 가지고 다니기, 학교시설, 학교기자재의 보수 및 충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 ☛ 주 1회 지역의 전문상담가를 초청하여 인권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처음에 자기의 고민을 말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던 아이들이 차츰 상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상담가와 담임선생님과의 만남시간을 가져 학생지도에 참고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 ☛ 학생 출석번호는- 남녀 구분없이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 학교예산 편성시 전교사의 예산 요구서를 수렴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지출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실태분석을 통한 수정보완활동〉

영역	실태 요소	세부요소	실태분석		비인권요소 수정보완활동
			인권	비인권	
학교 시설면	학교 건물	학교시설의 안전		●	• 학교건물의 누수로 전기누전의 위험이 있어 교육청에 보수 의뢰
		학교시설의 청결	●		• 담당구역 청소 배정
		장애인을 위한 설비	●		•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장	놀이터시설		●	• 놀이터시설의 낙후로 계속 보수중
		체험할 공간		●	• 다양한 체험공간의 부족
		운동장 안전성	●		• 자갈 및 돌멩이 줍기 활동
	교실	안전		●	• 누수되는 반이 있음-보수의뢰
		청결	●		• 모든 교실 공기점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		●	• 사물함 및 교육기자재의 낙후화로 인해 교체 요망 • 왼손잡이를 위한 자료 구입 • 장애체험을 위한 도구 마련
	복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	●		• 장애인이동지시대 설치
		안전	●		• 불필요한 물건 및 못 제거
	화장실	청결		●	• 화장실 사용지도 및 복창인권어린이회에서 캠페인활동, 청소 용역
		보수		●	• 지속적으로 화장실 사용지도 교육
		장애인 시설		●	• 세면대에 장애인지시시설 설치해야 함 →내년 예산 반영
	학교 운영면	교사 활동	교사업무배정	●	
담임배정			●		• 본인의 희망 우선
보직교사 배정			●		• 본인의 희망 우선
교사들 간의 배려			●		• 분과위원회 조직 운영 • 동호인활동을 통한 친목도모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			●		• 기획위원회에서 월중 계획 확정 •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교육을 위한 기자재				●	• 토론을 통하여 교육기자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프린터2, 컴퓨터2, 스캐너1 구입 • 2007년도 프린터 전반 배치 예정
		행정실과의 협력	●	• 학교예산편성-모든 교사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편성 및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공개
학생 활동		학생자치회 활동	●	• 복창인권어린이회활동의 활성화 -캠페인활동, 포스터활동 실시
		학생들의 의견반영	●	• 복창인권어린이회의 건의사항 및 학생들이 만드는 토요일방송 실시
		학교운영에 대해 알 권리	●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 복창인권어린이회 임원 참관
		학생들 간의 배려	●	• 인권사랑실천엽서를 통해 칭찬하기 • 홈페이지'참 인권친구를 칭찬해요' 개설
		급식메뉴공개	●	• 학생선호도조사실시 후 참고 • 한달에 한 번씩 급식메뉴 배부
		실내화	●	• 실내화주머니 가지고 다니기 안내
		출석부번호순서	●	• 2007년도 반영 -남녀구분없이 가나다순 번호 부여
				생활규정
학생과 교사	교사	학생 존중	●	• 체벌은 하지 않으나 학생들의 의견수렴결과 교사들의 언어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어 전교사가'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길잡이' 숙지 후 월 1회 점검
		학생정보 유출	●	• 아동명부 기록란에 주민등록번호 삭제 의무화
		차별	●	• 남녀차별이나 성적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음. • 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길잡이 항상 숙지 •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직업란 삭제
		체벌	●	• 인권교육연구학교가 된 후 체벌금지 의무화
		상담 및 대화	●	• 과중한 업무에도 학급의 다양한 문제 (따돌림, 갈등) 및 학생 개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화실시 • 지역인사를 활용한 주1회 상담실 운영
				자녀존중
학부모와 자녀	학부모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인권존중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들이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방향 및 인권교육의 우수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등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운영상 어려웠던 문제

- 인권존중학교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 인권교육에 대한 인적인프라가 부족하였다.- 본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인권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으며 전 연구학교의 운영을 그대로 접목한 경우가 많았다.
- 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들의 학교연구학교운영에 대한 지도 절실
- 교사 및 관리자 등의 도덕교육과 인권교육의 상충 - 권리교육이 아닌 의무사항 이행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3. 학생들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 인권존중교사 되기

인권존중학교 만들기에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교실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인권교육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린 학생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며 권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학생 자신이 가진 인권을 알고 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실에서의 인권교육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우리들은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은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인권학급문화 형성, 인권교사되기 프로그램 실시하여 인권존중교실 만들기, 인권존중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 ⊗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교사들의 언어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있었다. 교사의 언어활동 중 학생들의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말을 알아보기 위해 4월 말, 학급별로 ‘어린이를 존중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설문작업을 실시하였다.
- ⊗ 강제적인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및 일기장 검사의 지양, 체벌금지, 학급별 규칙을 정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지켜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 학급별로 특색있는 인권문화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상담 및 대화의 시간 갖기, 사랑의 편지쓰기활동, 인권도서 읽고 생각 키우기, 다양한 인권체험활동하기 등 학급특색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여 인권존중교실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 ⊗ 교사들이 먼저 인권교육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인권알기에 적극 참여하였다. 다양한 인권연수, 인권수업연구, 인권교육 교재연구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존중교실, 인권존중교사되기 활동>

영역	활동 내용	비고
인권존중교실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아이들이 존중하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여 학급운영에 반영 - 좋아하는 선생님 상,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 	
	▣ 강제적인 소지품검사 및 일기장 검사 지양	
	▣ 체벌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학급규칙 - 서로 배려하는 학급 문화 만들기 -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 서로가 함께 만드는 학급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특색있는 인권문화 만들기 - 사랑의 편지쓰기, 인권도서읽기, 다양한 인권체험 활동하기 	
	▣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의 직업란 삭제	
인권존중교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적인 교실을 위한 길잡이 항상 숙지 	인권관련 수업연구를 통해 활동중심의 인권교육을 찾을 수 있었음.
	▣ 인권존중교사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수활동을 통한 인권의식 고취 - 선진지 학교 견학(전직원 1회, 부장교사들 3회) -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토론연수 4회 실시 - 자체 인권관련 연수 (월 1회) - 인권전문가 초청연수 (3회) -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직무연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수업연구 실시(6회) - 교실수업 활동 내에서 인권교육의 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협의회 실시 - 수업활동의 일반화 노력 	
교육과정과 함께한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관련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내용 중 인권침해내용 분석을 통해 수업활동에 참고 - 학년별 교과관련 인권교육 지도내용 추출 - 창의적 재량활동 중 연간 20시간 인권교육 실시 	

운영상 어려웠던 문제

- **인권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 교실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권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인권관련 교육과정 편성시 인권전문가의 협력이 요구된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인권전문가나 인권위원회의 지도활동이 요구된다. 즉 인권전문가에 의한 교육내용 선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4. 인권아, 친구하자 - 인권 감수성 키우기

많은 학생들이 인권이란 단어 자체도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한 1년, 이제는 아이들에게서 ‘인권존중, 인권침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온다.

“친구를 놀리고 따돌리는 것은 인권침해지요?”

“처음에는 장애인 친구들이 무서웠는데요. 동방학교를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학교에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애자’라고 놀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친구를 존중하지 않은 거죠.”

“오늘 인권테마방송에서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변화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가슴에서는 이미 인권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생 단계에 맞는 다양한 인권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이 생겨나고 인권감수성도 길러진 것이다.

- ⊛ 학생 자치기구의 활성화 - 복창인권어린이회 활동의 가장 큰 핵심을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문제의 인식 및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주1회 토의와 토론을 통해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터 활동, 캠페인 활동 및 월 2회 ‘웃으며 함께 해요’토요방송을 실시하였다.
- ⊛ 인권체험투어, CCAP체험활동, 인권골든벨,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화상수업 등 인권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 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초등학생단계에서 알아야 할 인권지식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음악회’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실시한 화상수업,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와 사이버 인권배움터를 활용한 인권테마방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권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인권체험활동>

인권체험활동	활동 내용	비고
복창인권어린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어린이회 임원단으로 구성 - 주 1회 회의 및 포스터 및 캠페인 활동 실시 ☞ 토요방송 ‘웃으며 함께 해요 방송’ 운영 ☞ 복창어린이 인권선언 제정 ☞ 평택북부대표로 평택시의회에서 ‘학교주변의 뽑기에 대한 찬반토론’ 실시 	
인권체험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관내의 특수학교인 동방학교, 에바다학교와 연계교육 - 5학년 : 청각장애인친구와 등산하기(에바다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년 : 동방학교의 행사활동에 도우미 활동 ☞ 직접 장애인과의 대면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CCAP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유네스코 주관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 총 6회 실시 -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인도 ☞ 외국인이 직접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테마방송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 인권배움터 및 인권위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활용한 아침방송 실시 -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게 참여한 프로그램 ☞ 화상수업 - 5,6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화상수업 실시 - 인권 골든벨 대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개 ☞ 인권문화체험 '음악회' - 초등학생을 위한 찾아오는 인권문화마당 활동 	
인권행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창인권한마당 개최 -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인권 O, X 퀴즈 ☞ 장애인의 날 행사 실시 - 장애관련 비디오 시청 및 각 반별 장애체험활동 ☞ 사랑의 나눔장터 - 수익금 전액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보조 ☞ 인권학예행사 - 그리기, 표어, 포스터, 캐릭터그리기, 만화 그리기 대회 - 학생 작품 복도 게시판에 전시 ☞ 인권가족신문 인권사랑실천엽서 전시회 - 인권의식 높이기 활동 및 친근한 인권인식 고취 ☞ 인권골든벨 대회 - 인권지식 및 인권감수성 키우기 ☞ 인권독후화, 독후감쓰기 - 인권도서 읽고 인권감수성 키우기 	

운영상 어려웠던 문제

- **초등학생의 인권교육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웠다.**: 초등학생 단계에 맞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구안이 어려웠다.
- **학생의 학생 자치회 활동이 소극적이었다.** : 학생들 스스로 학생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학생자치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행사활동이 많았다.** - 행사활동이 정선되어야 한다.



5. 다시 도전하는 인권교육 - 이제는 희망으로.....

연구학교 운영과제의 실행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지낸 1년,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값진 시간들이었다. 1년 동안의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 '성공이나, 실패나'를 가름하기보다는 학교의 인권존중학교로의 작은 발걸음, 교사들의 인권의식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의식 및 인권신장에 노력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다시 인권교육에 도전하는 2007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2006년도의 연구학교 운영평가회에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할 점을 점검하고 2007년도 인권교육 운영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 인권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인권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작년에 제작한 인권재량활동 지도내용을 수업활동에 적용할 예정이며 수업활동 후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활동을 계속 실행할 것이다.

셋째, 본교에서 구안한 '배움과 실천이 있는 인권이야기'일반화자료를 적용하고 다양한 인권체험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넷째,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교실 만들기이다.

학생, 교사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하는 교실

학생과 교사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학급어린이회의 활성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급규칙, 상담활동의 활성화, 친구 배려하기 등 학급 구성원들이 만드는 인권존중교실 되기를 실천할 것이다.

우리가 1년동안 실천한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이 비록 미비해 보일지라도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쓴 교사들의 땀방울, 학생들의 작은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희망을 본다.

< 영남권역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on Human Rights Education:
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일시 · 장소 ||

◇ 영남권역

- 일시 : 2007. 2. 23.(금) 10:00 ~ 17:3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목 차

제 1 부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 발표 】 인권교육 도입하기 - 도전,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 토론1 】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보장 체계의 강화
(Spreading Human Rights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to Protect HR)
김중섭 (경상대학교 교수)

【 토론2 】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해 학교를 참여와 자치의 민주공화국으로
(Making Schools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to Promote Student's Rights)
심정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제 2 부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 발표 】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 토론1 】 학교 인권실태와 인권개선 방향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교사)

【 토론2 】 구호, 논의 정책속에 갖혀 있는 학생인권 - 이제는 나와야 한다.
김정숙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 토론3 】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교육현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 토론4 】 학교의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이수남 (대구 영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제 3 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 발표 】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 사례발표1 】 학교를 '어울림'의 공간으로
이성일 (대구 동변중학교 교사)

【 사례발표2 】 학교인권문화 개선방향
지경진 (경북교육연구원 연구사)

Session I.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Integration of Human Rights Perspectives
into School Education

발표(Presentation)

인권교육 도입하기 - 도전, 문화, 교육과정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토론 (Discussion)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보장 체계의 강화

Spreading Human Rights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to Protect HR
(김중섭 경상대학교 교수)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해 학교를 참여와 자치의 민주공화국으로

Making Schools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to Promote Student's Rights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보장 체계의 강화

김중섭
(경상대학교 교수)

오슬러 교수의 발표는 영국 중심으로 학교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지적과 개선 방안은 여러 점에서 한국의 상황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의 인권교육 발전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우리가 더욱 주의깊게 새겨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첫째,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인권 교육 증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과중한 시험 부담, 지나치게 복잡해진 교과 과정, 다민족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증대되는 인종차별과 타인종 혐오, 폭력과 따돌림 등은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학교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으로서 인권교육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둘째, 세계어린이청소년 인권협약(CRC)은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오슬러 교수는 세계어린이 청소년 인권협약을 중심으로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고, 학교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하며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배우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유를 누리며, 개인의 영역을 보장받는 일련의 인권 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사회의 협약이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보장되도록 만드는 것이 인권 실행의 관건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 교육은 1차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인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어린이청소년 인권협약을 비롯하여 국제 사회의 인권협약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권 교육의 발전은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 교육정책 결정자, 행정책임자,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등 교육 환경을 인권 측면에서 개선하는데 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인권 교육의 문제가 좁은 의미의 교과 과정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학교 환경이나 문화가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슬러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점들은 우리 나라 인권 교육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훌륭한 지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인은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 교육 증진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인권 교육의 토양으로서 인권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 확산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오슬러 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의 효율성은 교과 과정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문화적 토양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 크다는 점이다. 장유유서 전통에 따라 권위주의가 강한 문화적 풍토나, 남녀유별의 전통 속에서 여성 차별이 강하게 남아있는 관습 같은 것은 여전히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강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권 문화의 확산을 주장하는 것을 뛰어 넘어 구체적으로 전통 문화와 인권문화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학교 인권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에 걸맞는 인권교육 교과 과정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의 폭발적 증가,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빠르게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단일 언어,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유지해온 동질적 사회라고 고집하는 관습과 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 갈등이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 방안으로서 인권 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인권 발전의 주요 방안이 인권 교육 강화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자인 교사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모두 인권과 책임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인권 교육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인권(human rights)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발전해 가고 있으며, 또 내용이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민 전체의 인권 교육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또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일지라도, 인권을 '배우는'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책임자, 행정 지원자 등 학교 교육 당사자 모두에 대한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인권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인권 보장 체계(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 교육을 하면서 학교 환경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육 효과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 환경이나 신체적 안전조치 위협 하는 시설물,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의 부재 등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한 환경에서 인권 교육은 소기의 효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권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본인은 학교의 인권 교육을 발전하기 위해서 인권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인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권 교육의 토양을 배양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권 실행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인권교육은 오늘날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여러 형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또 인권 친화적인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관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Spreading Human Rights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to Protect HR

Kim, Joong-seop
(Sociology Department of Kyongsang University)

Professor Osler's presentation pointed out challenges of human rights education (HRE) in school of Britain, and suggested some ideas for improving the HRE. I think Korea also shares the challenges and could take advantage of her ideas. Some of them carry significanc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HRE by identifying problems schools are facing. Too much focus on exams, "overcrowded curriculum", "racism and xenophobia" borne out of the emerging multiethnic society, violence and bullying are not only problems in Britain but also raise serious concerns in Korea. I truly agree with her argument for strengthening the HRE to solve these problems.

Secondly, she rightly well indicated th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CRC) should be a barometer which will set contents of HRE and its direction. The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can be guaranteed only by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aws. In this context, the HRE in Korea should be carried out by observ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including the CRC.

Thirdly, 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education policy makers, administrators, parents and students all together should be involved in improving the HRE. The role of those in charge of improving the education environment outside the school is very important as well thereby bringing such environment into schools.

Now, I would like to add my opinions which specifically concern the Korean case of HRE. Above all, due to the Confucian tradition, there are some elements that may violate human rights in Korea. Therefore, one should not stop short spreading the human rights culture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he human rights culture, but further such resolution could be reflected in the HRE.

Secondly, as Korea transforms into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ociety, it is urgent to establish HRE courses to embrace such transformation.

Next, both teachers and students require receiving programs that teach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articular, teachers who "teach students" need to have a chance to "learn" human rights as students.

Lastly, it would be desirable to set up a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to create a human rights friendly atmosphere. A mechanism which enables schools to create and nurture the human rights friendly culture is needed in Korea. This would maximize the effects of the HRE in a way that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related to human rights can be solved in the long term.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해 학교를 참여와 자치의 민주공화국으로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

민주주의가 실천되지 않는 현실은 초중등학교의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 제한된 입시정책과 임시미봉의 학교폭력대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공포되는 우리의 현실이 인권교육이 아직 사각지대임을 말해준다. 미완의 민주주의의 완성은 인권교육으로부터 시작됨에도 인권교육이 교육부의 핵심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정권초기에 강조했던 참여와 자치의 교육이 실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권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부산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 모임을 계기로 부산지역의 학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

2

Audrey Osler 교수는 역사적으로 세계의 아동 인권은 학교에서 별로 보장되지 않았고, 민주주의·평화·인권·비판적 각성은 학교교육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한다. 그 이유로서 대중적 학교교육체제는 민주적 가치보다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조건에서 그는 학교가 **인권친화적 기관**이 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진단과 제안은 우리의 교육이 여전히 교육이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의 적합성을 가질 것이다. 오슬러 교수는 인권친화적 제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로 학교장, 교사, 학생,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당사자들이 존중해야 할 적극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제안을 한다. 이런 제안을 모두 지지하면서 첨언을 하고자 한다.

1) 먼저 발표자는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해 각 국가 당사자가 **유엔의 아동권리헌장**을 준수할 것과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가 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함께 아동권리헌장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유엔의 인권선언과 함께 아동의 권리헌장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권교육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발표자는 질 좋은 교육을 저해하는 학교가 직면한 도전으로서 **경쟁적 시험 중심의 환경**이 인권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지나친 시험과 테스트로 그 정도가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다. 1990년에 들어 각종 테스트의 증대로 교육이 황폐화되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장거리의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경쟁교육이 심화되어 학습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아동들의 자기신뢰감이 상실되고 자아배제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왜곡은 쉽게 측정될 수 있는 특정 형태의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적 정서적 웰빙, 공감, 관용, 경청, 협동,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등과 같은 함께 더불어 사는 민주적 기술과 가치 및 태도를 덜 강조하는 것으로 유도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황일 것이다. 지나친 시험, 잦은 학력경시대회는 **공부의 본질적(내재적) 의미**를 무화시키고 있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등에서 **진리의 발견하는 공부의 기쁨**을 만끽하기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출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는 주객전도의 교육이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삶의 본질적 의미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

3) 발표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참여적인 학생 중심의 수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을 진단한다.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시민성(권)교육, 인권교육과 같은 주제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4) 발표자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다문화사회의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곧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한 '문화상대주의'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사회도 이전의 제 3세계적 지위에서 벗어나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이런 선진사회에 걸맞게 이주노동자의 소수자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학급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그것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국가에서 **이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탈근대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강대국 팽창주의에 맞서는 약소국으로서 최소한의 방어적 민족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자민족중심주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발표자가 강조한 대로 민족국가로서의 '**통일성**'을 본질로 하면서도 인종, 계급, 종족, 종교, 언어, 젠더 등에서 세계국가로서의 '**다양성(다름)**'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발표자는 **소년친화적 교육과정**을 양성평등적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년과 소녀가 동등하게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 내용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양분화되어 성고착화를 조장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화로운 관계의 유지가 폭력을 예방하는 적극적 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발표자는 인종주의와 외국기피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전에는 백인종 우월주의가 황인종과 흑인종을 열등시하는 인종주의의 폐해가 극심했으나 우리가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문화선진국이나 윤리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에 황인종 우월주의와 같은 한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유린은 식민지시대의 일제에 의한 한민족의 침탈을 재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7) 발표자는 인권교육이 관용, 정의, 평등, 존중, 민주주의 등의 핵심 개념을 탐구하고, 동시에 애국심, 세계동포주의, 안보 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논평자는 이에 덧붙여 인권교육은 폭력의 극복과 차이의 인정을 중시하는 평화교육(peace education), 공동선과 협동 및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는 공동체교육(communitarian education)을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치배합을 잘 이루는 교육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8) 발표자는 인권친화적 제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 변화가 필요한 이유로 학교교육과정과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교수학습 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인권을 위한 교수학습 원리로서 ①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할 권리와 괴롭힘을 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받을 기회의 보장 ② 선택과 책임 그리고 협상을 행사할 기회를 갖는 참여의 원리(민주적 참여의 원리가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보호에 필수적임) ③ 개인의 다양성 정체성(가족, 문화, 정서, 신체 등)을 인정하고 포용할 것 ④ 표현과 양심을 최대한 할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를 할 자유, 교수학습과정에서의 학생과 교사의 충분한 대화 ⑤ 매스미디어,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국가적 국제적 자료로부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왜곡과 차별 등에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권리 ⑥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9) 발표자는 인권교육이 폭력과 따돌림의 수위를 줄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교교육의 권위주의적 관계가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인권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발표자는 학생들의 인권문화 신장이 교사의 권위를 포기하거나 무통치(anarchy)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교규칙은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토의와 반성을 거친 협동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논평자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학교운영의 핵심적 원리에 정의(justice)와 배려(caring)를 중심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정의와 보살핌을 중시하는 배려가 충만한 학교의 건설은 교사들의 민주적 동료의식과 연대,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활동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학교의 인권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10) 인권친화적 제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로서 법적 기구, 행정제도, 교육과정, 교수법, 학교풍토 등에서 **교육청과 학교지도자들의 협동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 다양성과 평등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한 학교지도자의 효과적이고 헌신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사회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기에 앞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장에 대한 인권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상향적이고 소통적 대화에 능숙한 **민주적 리더십 함양**이 중요할 것이다.

3

그런데 오슬러 교수에게서 전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교육을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인권교육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이익 중심으로 만들며, 나아가 모든 관계를 사물화하고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 정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첨가하고 싶다.

작금 우리의 학교교육정책은 학년초 3월이 되면 학교폭력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범인시하여 적발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은 반인권적이다. 이런 방식은 학생을 더욱 폭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랑과 배려의 교육을 학교가 최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학기초부터 무엇이 신고할 것이 많다고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 이런 방식은 결국 학생들간의 불신문화를 조장하고 학생들간의 우정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정책은 학교를 경찰서의 기능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나아가 교육의 본질 자체를 실종시키고 만다.

학교폭력의 문제해결 과정은 교육적 원리로 풀어야 한다.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 책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안의 강압적 통제와 획일적 관리체제가 만연하여 비롯된 권위주의적 침묵문화를 소통과 대화 그리고 합의와 연대를 통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그것을 실제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학생자치조직을 꾸리고 그 조직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응해 가는 사회적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의 자발적 반성과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내고,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학생재판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은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을 통해 폭력적 학교분위기의 개선, 학생의 민주적 참여와 자치회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생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학생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소속감과 친밀감을 통한 인간관계의 형성, 그리고 학우들간의 활발한 대화와 유대를 중시하는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급운영, 징계와 처벌 위주가 아닌 적극적 상담활동, 학교안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민주적 학부모회의 활동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인권교육(human right education)은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과 대치해서 존재해서는 안된다. 양자는 적절한 융합을 통해 균형잡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권없는 인격이나 인격없는 인권은 모두 불완전한 개념이며 가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없는 인격교육은 양보와 인정에 치우치는 수양운동에 편향되어 불의에 대한 대처를 방관하기 쉽고, 인격없는 인권교육은 자기주장과 권리쟁취에 치우치는 사회운동에 편향되어 사람됨의 형성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런 입장은 시민권(성)(citizenship)의 강조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다. 즉 시민권(성)은 시민으로서 권리(자유권과 사회권 등)와 시민으로서의 태도(예절과 교양)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되어야 하듯 인권과 인격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극단적 개념 채택이 아니라 포용적 개념 채택을 하여 유연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인간성이 좋지 않거나 인간이 안 되어 있으면서 인권운동을 한다거나 사회부조리의 직면을 회피하면서 안전하게 인격수양을 하는 두 편향성은 모두 문제가 있다. 인격의 완성은 불의에 직면하여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어야지 인품만 그렇듯 하게 포장하는 무골호인은 부정의한 사회를 방치할 뿐이다.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 제도적 모순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 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한 과거 이력의 힘으로 상대에게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하는 비인격적 인간이 되어서도 안된다. 밖에 있는 제도적 폭력에 대해서는 비판을 잘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래 축적된 내면적(심리적) 폭력의 잔재를 치유하는 의식변화 작업을 소홀히 하면 폭력의 완전한 극복을 어렵게 한다. 인권교육을 하는 활동가들은 내외의 문제의식을 동시에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대아적이고 전체적인(holistic) 관점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인권교육을 제도권 학교교육에 적용할 때는 사회운동 방식이 아닌 교육적 방식을 채택하고, 아울러 학교의 현실여건과 학생들의 발달단계 그리고 학부모의 의식수준과 여론 등을 고려한 인권교육의 유연한 실행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요즘 8차 국가교육과정 작업에서 학생들의 시민권교육(권리와 책임의 공존 등)이나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학교인권지수**가 밑바닥인가보다. 그래서 학교안은 여전히 '겨울공화국'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학생의 인권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의 민주주의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 안의 보이지 않은 은밀한 관행이나 태도 그리고 암묵적 동의로 자행되는 폭력문화를 명료하게 들어내어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학교현장을 **참여와 자치의 민주공화국**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지체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Making Schools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to Promote Student's Rights

Sim, Seong-bo

(Professor of Busan Education University)

Professor Osler well argued some concerns which may apply to the case in Korea. And I'd like to suggest my ideas adding to her argument.

Based on her argument that state parties should conform to the CRC and that NGOs should call for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e education policy should comply with the CRC. Children should be familiar with the CRC along with the UDHR. Considering this, we should evaluate to what extent our curriculum has incorporated these conventions and prepare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HRE with respect to the incorporation.

Secondly, the HRE should focus on making efforts to transform this homogeneous country into heterogeneous one as we create a school culture where the ethnic minority's cultures are accepted. We should set the HRE direction for diversity (being different) taking unity into consideration.

Thirdly, as for the racism and xenophobia, Korea should overcome the long-established perception of homogeneous nation as it develops into the advanced country group. Committing violence and human rights abuses against migrant workers is equal to what the Japanese rulers had done to us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Fourth, the HRE should balance between peace education (to prevent violence and recognize differences) and the communitarian education (to seek a common good and cooperation).

Finally, along with her argument that the HRE "can reduce levels of bullying and violence in schools," Schools should be operated with justice and care. These two can breed a democratic companionship among teachers and their solidarity, and students' participation and autonomy.

However, I'd like to point out Professor Osler failed to criticize that the neo-liberal education policy makes the HRE more difficult because this type of policy makes the human relationship materialistic.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evaluating teachers could violate teachers' right to education and further students' right to learning.

In addition to this, students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run their student councils and respond to school violence, committed either teachers or students themselves with autonomy. A student tribunal can be an idea to control and prevent school violence. The HRE and character education should go hand in hand. Activists responsible for the HRE should have a holistic perspective taking the educational approach not social movement approach when they apply to the formal school edu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ity and public opinions. In this way, students can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breed democracy within school thereby can get rid of violence in schools.

Session II.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HRE in Schools: Experiences of Korea

발표(Presentation)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조금주 상명대학교 교수)

토론 (Discussion)

① 학교 인권실태와 인권개선 방향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교사)

② 구호, 논의 정책속에 갖혀 있는 학생인권 -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김정숙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③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교육 현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④ 학교의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이수남 (대구 영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학교 인권실태와 인권개선 방향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1. 교육의 지향점,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 양성

학교는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하는 場이다.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무엇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2. 학생인권 침해 이유

‘인권’에 대한 교육주체들 간의 상이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두발지도, 교복지도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또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상담창구를, 학생들은 상담창구와 정부의 감시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체벌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교사들은 효과가 있는 교육지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학생들 사이의 인식 상의 차이라고 표현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민감한 한편, 평균적 교사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는 낮다. 그래서 학생들과 인권교육 개념, 그 실현을 교육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주로 자유권-이 침해 받았을 때 교사에 대한 항의, 그 외 학생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학생회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규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법 제도 아래서는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마저 실현할 수 없다. 학교장의 투철한 교육신념에 따라 두발지도, 복장지도, 교문지도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훈육’과 ‘지도’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인식이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체벌'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강제보충수업, 타율적 야간자율학습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종종한다. 이런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훈화도 서슴지 않는다.

3.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과 제언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참교육'이란 기치를 내걸고 학생들이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해 저항하고, 학생자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실천사례들을 모아 학생생활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실천하고 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전후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공동수업, 여러 문화행사를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통해 실천사례를 공유, 실천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의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법안 토론회에 참여, 2006년 7월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에 참여하여 학생인권과 자치신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영남지역에서의 전교조의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을 위한 2006년의 실천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토론회에 학생들이 참여를 지원(울산)하고, 체벌금지 교사 선언을 조직(경북)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학생이 민주적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칙을 개정(마산)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학생인권법안의 법제화를 통해 학생인권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와 연결하여 학생들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주체 간의, 특히 교사-학생 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한 각성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이나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 학생인권의 개념, 학교 생활규칙의 개정 가능성, 학교 생활 규칙 개정 때 교육주체로서의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자격연수와 학교 내 연수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인권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학교장, 교사들이 인권이 실현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체벌 금지의 경우, 법제화와 더불어 교육부, 교육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교조 교사들은 체벌 금지 법제화와 교육기관의 감독, 체벌이 아닌 다른 교육방법의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기인권을 지키는 주체로 서기 위한 제도적 조건은 학급회·학생회의 법제화, HR의 강화,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칙 제정에 참여, 학교운영위에 참여 등이다. 이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참여해야 함을 배우고,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2007학년도에도 전교조 학생생활국은 학생인권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학교 학교생활규칙의 민주적 제정을 위한 실천을 계획하고 있다.

구호, 논의 정책속에 갖혀 있는 학생인권 -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

김정숙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1. 시작하며

오래 전 '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라는 책으로 모두 공부한 적이 있다. 그 때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생에게 인권은 있는가?'라는 말을 했다.

학생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관련자들조차도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심각한 갈등과 모순을 경험한다고 진단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서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구속된 삶',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삶', '행복하지 못한 삶', '불균형적이고 순응적인 삶', 을 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폭넓은 공감의 의미를 의미한다. 즉, 학생들의 '학교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진단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담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싶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란 단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예를 들고 시작하고자 한다.

새학년 첫수업 시간이었다. 첫 만남에 선생님은
" 미리 여러분에게 얘기해 두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은 절대로 매를 들지 않아요. 이걸 약속하면서 원칙입니다. 내가 매를 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
"아, 저번 학교에서 애가 죽었군요."

아무런 생각 없어 그저 날이 추워
바람사이로 들리는 말 내 귀를 스쳐가 '시험 잘 보고 와'
내일이면 다 까먹을 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삶을 반납했었나?
쉬는 시간이 됐어 너무 답답했어. '야, 담배나 한 대 피러 가자'
복도엔 구름 화장실에 천둥 번개 치네.
우리는 대체 무슨 꽃을 피우려고
우리 인생엔 떡구름이 이토록 자욱하나
rap : 참어 참어 참어 참어 모든 건 대학 간 후에 해도 돼
대학가기 전까지 니넨 죽었다고 생각해
딴 생각하지 마
이등은 필요 없어 앞 만보고 달려가
내려오는 사람들 얘기 듣지만
이 선생 말이 진리란 말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공부만 해 친구들이랑 사귀면서 도대체 언제 공부 할 거야
 무조건 외워 외워 외워
 피타고라스 정리 외워
 시 같은 건 느끼기 전에 외워
 니네들이 다르게 생각해도 그건 답이 아니지
 참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고 밑줄치고 그대로 외워
 (이준승 작사 작곡 '겨울이 끝나는 날' 중에서)

2. 발제문에 대한 소견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조사들은 조사에 그친 예가 많다.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있어왔던 조사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는 듯하다. 여전히 학생인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 적법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침해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져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외국의 학생인권 상황의 분석은 의미 있으나 그 나라의 인권 정책이나 인권 실태의 분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어 아쉽다. (부산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때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던 일본의 한 현의 인권 조례를 첨부한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싶다.)

이번 조사의 결과로

-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칙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기 필요하고,
- 2) 민주적인 학교규칙 제, 개정을 위하여 학생대표와 교사 대표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것,
- 3)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음은 의미 있다고 본다.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나온 인권교육 부분은 그동안 뜻있는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시도해 오고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의 큰 역할 중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 교육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 질문: 1) 국가인권회의 2007년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 교육계획은 어떠한가?
- 2) 발제자는 자칫 형식적일 수 있는 인권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 3) 발제자가 ‘학생인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위헌 요소는 없는가? 학생인권이라고 하면 제도권 내의 학생만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 데, 조사에서 학교 밖에서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인권법’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학생인권과 청소년 인권을 분리하여 법을 제정한다는 뜻인가?

3. 참교육학부모회 생활규정 분석 팀 분석 내용

참교육학부모회 생활규정 분석 팀에서 2006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 교칙 분석 보고서’를 제출 한바 있다. 이는 2006년 7월에서 9월 전국 202개 중고등학교의 현재 생활규정의 인권 침해 실태를 분석한 자료이다.

그 결과를 보면,

- 1) 학생선도, 징계규정 분석에서 대상자 진술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부여해야한다’로 규정한 학교는 66.5%였다. 이에 비해 ‘부여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한 학교가 11.25, 아예 규정 자체가 없는 학교가 23.2%로 학생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 받고 있지 못했다.
- 2) 재심청구 규정에서는 18.6%의 학교가 재심규정을 두지 않았고, 재심 청구권을 둔 학교마저도 대부분이 재심 신청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 대상자나 혹은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 3) 학생회 규정에서는 임원출마 자격으로 품행항목이 41.5%, 성적제한이 16.5%, 징계유무가 39% 등 각종 제한을 두고 있었다.
- 4) 학생회칙 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 되어 있는 학교는 65.4% 나머지 34.6% 는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심지어 회칙 개정 시 학생이 아닌 교사회이나 지도위원회인 경우도 있었다.
- 5) 두발 규정은 89.1%의 학교가 규제규정이 이었으며, 신발이나 가방에서는 색깔이나 모양 등의 제한도 있었다. 심지어 양말, 머리핀 색깔 까지 규제하는 학교도 있었다.
- 6) 체벌규정에서도 체벌을 할 경우 왜 처벌을 하는 지 먼저 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한 학교가 56.8%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자료와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규정 분석 보고서는 이 땅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인권이 있어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 부산의 학생인권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

2004년 12월 부산교육개혁연대 주최로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박영관 교육위원의 주도로 전교조 부산지부 교육정책 연구소에서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52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관계 규정(학생회칙, 선도규정, 용의복장) 실태조사 분석’과 학생 인권 의식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학생 대표의 출마자격, 학생회칙 개정의 주체, 신발 등 용의복장에 관한 규제, 징계 시 진술기회 부여 등에 관한 분석은 이번 참교육학부모회 분석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국 어디서나 학생인권 침해 상황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한 지역이었지만 교육위원회 내에서 조차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고 말았다.

5. 구호, 논의, 정책 속에 간혀있는 학생인권 이제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1) 초중등 교육법 개정

초중등 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이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적 체벌은 없다는 것을 부르짖는다.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2) 갈등해결 조정기구의 필요성

학교당국과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 주로 교사나 학교당국의 권위나 규제에 의해 무시 은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 개인의 보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간혹 학생, 학부모의 극단적인 저항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언제까지 은폐하고 논의만 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학교에 따라서 조정기구를 두기도 하지만 당사자의 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학생자치권 보장

학생들에게도 자치와 자율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참여자로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용되고, 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 학생관련 의제의 설정 및 제출, 학생자치 규율의 제정, 학교축제의 자율적 기획·운영, 졸업앨범 제작 등에 대해 학생들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권교육의 제도화

이번 조사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도적 자치가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법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독립과목의 신설, 및 인권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들이 인권을 스스로 해석하고 인권의 개념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기르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구호로만, 논의로만 학생인권을 가둘 것인가? 인권교육이 추상명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밖으로 드러내고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교육의 효과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태어났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걸 다시 기억해 내는 일입니다.

선생님은 인권에 관한 전수자가 아니에요. 그저 기억을 깨우쳐 주는 도우미면 충분해요.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합니다.

-루마니아 인권교육자의 말-

[참고자료]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많은 시민과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며, 이 조례의 내용은 ‘아동권리조례검토연락회의’와 ‘아동권리조례조사연구위원회’에서, 약 2년 간 200회를 넘는 회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아동과 어른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간(권리의 주체)으로서 존중하고, 권리침해로부터 지키며, 아동이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위하여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나 이념을 정리한 전반부와 아동의 생활의 장에 따른 권리보장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을 규정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21세기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생기 있게 자라며, 자신과 타인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가와사키시 · 가와사키시 교육위원회

前文

아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며,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며,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확보, 차별의 금지, 아동의 의견의 존중 등의 국제적인 원칙 하에, 그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아동에 있어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풍부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 등을 통하여 아동은 권리의 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힘이나 책임 등을 체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파트너이다. 아동은 현재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미래사회의 담당자로서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의 형성에 있어서 고유의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도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야 한다.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국내외의 아동과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에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시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은 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생을 진전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들은 아동 최우선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평성원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이념에 기반 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진전시킬 것임을 선언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 ~ 제4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시 등의 책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가정, 보육·학교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용어의 정의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아동 : 시민을 비롯하여 시와 관계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 기타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양육·교육시설: 아동복지법(소화 22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학교교육법(소화22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한 학교, 專修학교, 각종학교 기타의 시설 중, 아동이 양육되고, 배우기 위하여 입소하고, 通所하는 시설
3. 부모에 대신하는 보호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수양부모(里親) 또는 보호수탁자 기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

제3조(책무) ① 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場에 있어서,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시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양육·교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직원(이하 [시설 관계자]라고 한다) 가운데, 시 이외의 시설관계자는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양육하는 아동 및 고용된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에의 요청) 시는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시외에 있어서도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제5조(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 ① 시민들 사이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 깊게 하기 위하여,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을 둔다.

② 가와사키 아동 권리의 날은 11월 20일로 한다.

③ 시는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참가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홍보) 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 등)

① 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가운데,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 등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시설관계자 및 의사, 保健婦 등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직무상 관계된 자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지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는 아동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자주적인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시민활동에의 지원) 시는 아동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에 대하여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과 함께,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제휴를 도모해야 한다.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제9조(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이 장에 규정하는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기 위해 특히 귀중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아동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하여 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
- (2)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되는 것
- (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
- (4)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받지 않으며, 방치되지 않는 것
- (5) 건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며, 성장에 어울리는 생활이 가능한 것
- (6)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제11조(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것
- (2)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
- (3) 비림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
-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정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것
- (5) 아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지 않는 것
- (6)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 여가를 가지는 것

제12조(자신을 지키고, 또한 지켜질 권리)

아동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모든 권리의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것
- (2)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 (3)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담의 기회가 상담에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확보되는 것
- (4)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5)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 그 회복에 적절한 분위기의 장소가 주어지는 것

제13조(자신을 풍부하게 하고, 힘을 복돋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은 그 성장에 따라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복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노는 것
- (2) 배우는 것
- (3)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는 것
- (4) 정보를 얻는 것
- (5)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14조(스스로 결정할 권리)

아동은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에 관한 것을 연령과 성숙도에 맞게 결정하는 것
- (2)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할 때에, 적절한 지원 및 조언을 받는 것
- (3)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제15조(참가할 권리)

아동은 참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을 표현하는 것
- (2)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3) 동료를 만들고, 동료와 모이는 것

- (4) 참가를 할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제16조(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은 그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아래에서 제시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아동 또는 그 가족의 국적,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기타의 처한 상황을 원인 또는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 (2) 前號의 처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에 共生할 수 있는 것
- (3) 장애가 있는 아동의 존엄을 지키고, 자립하며,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가가 도모되는 것
- (4) 국적, 민족, 언어 등에 있어서 소수의 입장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 등을 향유하고, 학습하며, 표현하는 것이 존중되는 것
- (5)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의견 표명의 방법, 참가의 방법 등에 대한 공부 및 배려가 주어지는 것

제3장 가정, 양육·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절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17조(부모 등에 의한 아동의 권리의 보장)

- ①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는, 그 양육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이다.
- ②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모 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양육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부모 등은 양육·학교시설 및 보건, 의료, 아동복지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동 본인의 정보를 얻는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양육의 지원)

- ① 부모 등은 그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시는 부모 등이 그 아동의 양육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9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 ① 시는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있어서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동의 심신상황을 특히 배려해야 한다.
- ③ 시는 학대의 조기발견 및 학대를 받은 아동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회복을 위하여 관계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양육·교육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1조(양육·교육환경의 정비 등) ① 양육·교육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그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도록 양육·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前項의 환경의 정비에 있어서는 그 아동의 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과 제휴를 도모함과 함께 양육·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양육·교육시설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부모 등 지역의 주민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안전관리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아동의 자주적인 활동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 시설 및 설비의 정비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제23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등) ① 시설관계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④ 시설 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이지메의 방지 등) ①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설관계자는 이지메의 방지를 위해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이지메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설설치관리자는 이지메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학교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시설관계자는 이지메를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이지메를 행한 아동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는 바탕 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 등)①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前項의 문서 중 아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작성에 있어서 아동 본인 또는 그 부모 등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한 문서의 작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한다.

③ 양육·교육시설에 있어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아동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전항의 정보는 양육·학교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의 문서 및 제3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아동 본인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되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양육·학교 시설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아동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제26조(아동 성장의 장으로서의 지역) 지역은 아동 성장의 장이고, 가정, 양육·교육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장인 것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고 아동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아동의 居場所)① 아동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인 것, 휴식하여 자신을 되찾는 것, 자유롭게 놀고 활동하는 것, 안심하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한 장소(이하 居場所라 한다.)가 귀중한 것을 고려하여 시는 居場所에 대한 사고방식을 보급하고 居場所의 확보 및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는 아동에 대한 거장소의 제공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관

계 단체와의 제휴를 도모하고,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활동은 아동이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시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아동의 참가(제29조~제34조)

제29조(아동의 참가의 촉진) 시는 아동이 시정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양육·교육시설 기타 활동의 거점으로 되는 장에서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또는 지역에 있어서 문화, 스포츠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 시책에 있어서 보장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참가를 촉진하고, 그 방책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0조(아동 회의)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회의(이하 [아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아동회의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③ 아동회의는 그 주체인 아동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아동의 총의로서의 의견 등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등을 존중해야 한다.

⑤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아동회의에 모든 아동의 참가가 촉진되고, 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참가활동의 거점 만들기) 시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들만이 자유롭게 안심하여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자치적 활동의 장려) ①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자치적인 활동에 의한 아동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양육·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3조(좀더 열린 양육·학교시설)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 부모, 기타 지역주민에게 좀더 열린 양육·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행하고, 그들 및 양육·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아동의 의견) 시는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동에 참가 등의 방법 등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상담 및 구제(제35조)

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 계획(제36조·제37조)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에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 (3) 부모 등, 시설 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하나의 동을 지원 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제38조~제40조)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를 위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 해야 한다.

제8장 雜則(제41조)

제41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기타 집행 기관이 정한다.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교육 현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1. 인권개념의 확장과 진화

인권의 개념이 국제적 제도화로 구체화 될 시기인 1948년도 당시의 인권의 개념은 인간권리를 위한 최소성의 개념으로 실현되고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권력과의 관계로부터 한 인간을 최소성의 개념으로 보호해 주기위한 권리체계를 실현한 것이 세계인권선언문이며, 그 후 UN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인권협약들의 체계가 매우 소극적인 이유와 다소 추상적인 해석으로 초기 인권의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은 그 시대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20세기의 전 지구적 차원의 전제시대와 폭력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념화된 인권은 인간의 삶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즉자적 차원의 자유권으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유권의 확립이 세계적 관심을 넘어 국제적 동의단계에 이르게 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인권의 개념에 관한 국제적 토론은 초기 인권 개념의 한계성을 직시하고, 인권개념을 국가의 권력으로부터의 한 인간의 권리라는 기본 가정을 전면 수정하면서 인간을 둘러싼 국가와 권력 그리고 제도와 장치라는 이른바 공공성과 최대성의 측면에서 인권의 개념을 확장 적용하는 단계로 이행한다. 인권의 개념은 자유권과 함께 사회권의 강화로 인권에 대한 담론으로 강화되고, 2000년대에는 이른바 평등권의 개념으로 진화한다

2. 한국사회와 인권의 적용

1970년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자유권을 신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의 강화는 급속할 정도로 자유권의 강화로 이어지고, 헌법적 측면에서의 국민기본권의 보장으로 기결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장애인 및 여성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면서 이른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복지제도의 성장을 통한 사회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의 관점에서 인권개념이 확장되고 강화되기 보다는 인권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인권개념을 해석하는 차원에 매몰되고, 천민자본주의의 성장과정에서 인권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는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인권적 측면에서 외향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인권개념의 해석과 적용의 측면에서는 편협되며, 사회권의 성장과 평등권의 신장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유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장애물들

한국사회에서 인권개념의 공공성과 최대성의 해석과 적용을 가로막는,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국민이 고통당하고 있는 교묘한 논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천민자본주의, 경제제일주의, 물신주의로 인한 철학의 상실.
- 경쟁의 논리로 인한 공존 철학의 부정.
- 인치주의, 관치주의로 인한 법치주의에 대한 방해.
- 군사문화의 존속과 인간존엄성 부정.
- 유교문화의 존속과 인간에 대한 서열화.
- 사회 양극화와 인간에 대한 방치.

4. 대표적인 인권 장애물/ 주거권과 교육권에 관해

인권개념에 대한 최소성의 적용과 해석은 한국사회에서 사회권과 평등권의 성장과 실현에 있어 장애 논리로 정당화 되고 있다. 그 중 한국사회에서 특별하게 돋보이는 인권문제는 주거권과 교육권의 부정이다.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 조건인 의·식·주에 있어 주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권의 실현을 통한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아야 권리는 한국에서 매우 취약하다. 한국사회는 노동권의 실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노동권을 확보한 사람조차도 주거권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경제주의, 경쟁주의로 인해 그 기본적 삶을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노동권의 실현을 통한 기본적 삶은 교육권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즉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을 부정하는 사회의식으로 인해, 또한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을 전면배치시키며 국민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의 안정적 삶을 피폐화 하고 있다. 주거권과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공공의 권리로 인식하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논리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너무나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5. 인권교육과 교육권의 부정

유엔은 인권교육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 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의 차

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인권교육의 하위목적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격과 인간존엄성의 완전한 발달 추구,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은 인간 교육이자, 인간 조건에 대한 교육, 인간 처우에 교육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향하는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공공성과 최대성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로 인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은 실시되나, 교육권은 그 목적과 가치, 그리고 이를 위한 민주적 교육방법등을 전면 부정하는 한국의 교육제도로 인해 실현되지 않고 있다.

6. 교육현실과 인권문제

한국의 교육현실은 교육권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보다는 국민을 비인간화하고 잔인한 경쟁주의의 희생물을 양산하는 그야말로 인권침해적 환경을 확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는 개인적 책임이라는 천민자본주의와 경제제일주의의 교묘한 악한 논리의 희생물이 되어왔다. 학생들의 건강권, 정서 함양권, 기본적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및 지식 등 인간경험을 배울 권리, 신체의 자유, 옷을 골라서 입을 권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인간존엄성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는 철저히 부정되어 있다. 또한 교사들의 권리도 교육체계와 유교관습에 의해 배제되고 철저히 부인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현실이다. 이러한 교육현실과 교육현장에서의 인권문제들의 발생케 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일그러진 교육체계와 교육철학의 부재. 입시교육의 비인간화
- 공교육을 잡아먹은 사교육체계.
- 군사문화의 잔존 및 경제제일주의, 출세주의로 인한 비인간화.
- 학칙 및 선도규정 등 교육현장에서의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
- 경쟁 합리주의 등

7. 한국에서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으로의 확대와 적용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특히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주거권과 교육권의 문제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한국 민중의 당면과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근대적 교육체계로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교육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며,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과 인권으로 대별되는 인간 철학이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과 이해로부터 우리는 현재의 기형적이자 암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중단시키고, 인간화를 위한 교육, 인간적인 교육, 인권교육으로 한국의 교육권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 인권보호법안, 학생 인권 상담센터, 학교운영에 학생을 참가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 차원에서 교육을 둘러싼 모든 제도와 토대를 다시 허물고 세우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의 공공성과 최대성의 개념을 도입함과 동시에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교육체계를 최우선적 과제로 모색해야만 한다.

학교의 인권문화 향상을 위해

이수남

(대구 영진고등학교 진로상담부장)

I. 서론

2000년 8월 경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두발 자유화'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세를 결집하여 거리로 나서는 일이 발생했다. 성인들과 대학생들을 흉내 낸 이들은 두발 자유화를 자신들의 인권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면서 교육의 한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의 행동에 교사들과 교육 당국자들은 몹시 당혹스러워 했으며, 그때부터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것으로 여겼고,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생활 지도를 계속했다. 집단행동은 수면 아래로 잠재되었지만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더욱 빈발해 지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과 외부로부터 학생 인권 존중에 관한 강한 열풍이 학교로 파고들면서 교사들도 좋건 싫건 간에 관심과 변화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인에 따라서는 교사의 생각만으로 학교생활을 이끌어 갈 수 없고, 상호 존중과 합의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나의 인권이 중요하면 학생들의 그것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II.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그동안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일반인들의 인권 신장에 관련되는 연구에는 비교적 열성을 보였으나,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2000년 무렵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사회의 한 중요한 구성원 집단으로 보고,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것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되었다.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입시만 앞세운 나머지 그들의 인성과 인권에 대해서는 꼼꼼이 따져볼 여유도 없었고 의식도 거의 없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는 꼭 필요한 시점에 잘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연구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설문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학교 현장에서는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문 분석을 한 것 같다. 학교생활 규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평소생활에서는 거의 법을 모르고 살고 있듯이, 그 규칙에 대해서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것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때에만 찾기 때문에 인지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절대다수가 해당 규칙이 있으나마나 하다고 응답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차츰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기회가 찾아지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그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사 연수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하거나 게시판,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개하여 숙지할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설문 결과로 제시되는 비민주적 제·개정은 차츰 해소되고 있으며, 규칙에 대한 만족도도 차츰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또한 두발에 대한 문제는 일정부분 단속을 해야 한다는 교사 측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기를 주장하는 교사사이에는 큰 인식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단속하다보면 체벌을 가하고 언어폭력을 가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복장에 대해서는 인문계의 경우에는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교칙에 위반할 만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인권을 무시한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마땅한 지도교사를 찾지 못해 허락 없이 모임활동을 하다가 오해를 받아 교사들과 마찰을 빚고 그것이 인권 침해로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있다.

IV. 결론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여기는 경우는 이제 학교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교사는 명령하고 지시하며, 모든 결정과 행위들이 존중을 받는 입장이었다. 요즘 학생들은 달라졌다. 교사의 지도가 온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에는 그들도 자기주장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주변에 의지하는 경우가 잦다.

그 때문에 종종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가 자칫 사회 문제로 까지 비화되기도 하는데, 타격은 학생보다는 교사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권신장에 대한 의식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교사들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 성숙의 노력을 할 때라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들을 아주 귀중한 개체로 보고, 비록 어리지만 생각하는 것은 속으로 다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부여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로서 말썽이 적은 학교 생활을 잘 이끌어 가는지도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각종 상담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원만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서 서로 승자가 될 수 있는 학교 풍토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Session III.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Successful Implanta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발표(Presentation)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Creating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Lessons from Experience of Britain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사례발표

학교를 '어울림'의 공간으로

이성일 (대구 동변중학교 교사)

학교 인권문화 개선방향

지경진 (경북 교육연구원 연구사)

학교를 '어울림'의 공간으로

이성일
(동변중학교 교사)

I. 들어가며

2년 전, 인권교육이라는 용어조차 낯선 상태에서 시범학교를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몇 편의 자료에 의지해 계획서를 작성했던 때를 떠올려 보면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용기였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아마도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했던 몇 해 동안, 뭔가 대안을 찾고 싶었던 막연한 심정이 작은 동기가 되었던 것도 같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선행연구학교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숨기고 싶은 시행착오와 오류들 투성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의 보람은 있었던 것 같다. 우선은 올해 본교가 배출한 첫 졸업생들이 인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경험을 가졌다는 점이 다행스럽고, 둘째는 인권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졌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32개교에서 인권교육 정책연구학교가 실시된다고 한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연구학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사례들이 점차 축적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그 결과들이 우리 학교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에 희망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 믿고 있다.

연구학교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자료의 공유와 학교구성원들 간의 논의들을 통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적 프로그램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본교가 운영과정을 통해 느꼈던 어려움과 장애요인들, 그리고 오류들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인권교육의 정착을 위한 제언

1. 교사가 인권교육의 성패를 가름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일반의 우려 중 하나는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리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동안의 교권침해 관련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일부의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본교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시범학교의 지정과정에서부터 폭넓은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그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또한 인권교육의 과정이 지나치게 학생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선생님들이 느끼는 권리의 문제들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선생님들의 소외가 적지 않은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일방적인 소통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교무실의 문화는 교실의 문화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교사가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면 학생들의 자존감도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사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학교에서는 선생님들부터 성공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내고, 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출발선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란다.

2.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가 가장 좋은 학습 자료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실재를 경험함으로써 학습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가장 좋은 학습 자료는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많은 학교들이 학교의 생활규정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현재 중등학교의 생활규정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구나 인권의 문제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런 법제화의 과정은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이 문제의 해결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친인권적인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본 뒤의 결과를 살펴보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생활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인권교육으로 삼는 경우이다.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는 인권존중보다 스스로 쟁취한 한가지의 권리가 교육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바람직한 관점은 후자의 경우로 보인다.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 내고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교의 경우 시범학교의 운영 초기에 생활규정의 개정을 위해 교육부 예시안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권리조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교육법전, 그리고 각 학교의 생활규정들을 비교 분석하여 잠재적인 시안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이 시안은 일부의 수정을 거쳐 1차년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공식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개정 이후에도 생활규정 중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인권교육의 수업 소재로 활용하였다.

<표 1>에서 보듯 생활규정 외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인권의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 모든 것들이 인권교육의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표 48> 2004-2006 언론재단을 통한 검색 결과 중 일부

학교 내 인권관련 주요 이슈 모니터 자료	
학교 성폭력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통합교육)
교육적 차별에 법적 제도적 논란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문제
운동부 차별에 대한 진단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습권
차별의 교육적 효과와 인권	일기검사, 소지품 검사 관련
보충수업 관련	NEIS 관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급식비 및 급식사고 관련	교육환경 및 학습권 침해 관련
가정환경 조사 시 인권침해	전자명찰 도입 관련
성적차별	생리 결석제 도입 관련
성차별 및 탈의실 관련 문제	두발규정 및 강제이발
용의복장의 지나친 규제	학생회의 독립성, 학생회칙 문제
학생인권법 관련 및 정치권 동향	CCTV설치에 관한 논란
스쿨폴리스 도입 관련	교사 경찰권 논란
집단 괴롭힘 관련 문제	학교 내 폭력서클 관련

3. 학교 내 약자를 위한 노력

현재 학교가 건강하지 않은 징후들은 대부분 학교 내의 소수자와 약자를 방치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누구나 문제 학생으로 대하면 문제 학생이 된다. 비단 학생들이 아니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가지지 못할 때 문제를 생산하게 된다.

어느 사회에나 약자와 소수자는 존재하며, 이러한 약자와 소수자를 방치한 사회는 결코 건강해 질 수 없다. 학교도 다르지 않다. 성적, 가정환경, 외모, 각종 질환이나 장애 등 수많은 이유로 인해 약자의 위치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교육이 장애체험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몇 차례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뜻을 가르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교가 이러한 학교 내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를 교육과제의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하며, 학교 밖에서는 이것을 진학률에 결코 뒤지지 않는 교육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2004년 본교가 개교할 당시 입학생이었던 한 학생은 1학년 동안 매우 심각한 정도의 폭력 문제를 발생시켰다. 수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같은 반뿐만 아니라 모든 학급에서 이 학생의 이름이 수도 없이 거론될 정도로 일상적이었다. 별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 학생에게 우선은 학생부장 선생님의 협조를 통해 벌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선생님의 일을 돕거나 일상 중에서 여러 가지의 공식적인 일들에 참여를 유도하였다. 3학년 초에는 개정된 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 봉사부장으로 추천되어 가장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치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자존감의 회복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 본 표본적 사례이다.

4. 평가가 교육활동을 견인한다.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학교는 항상 소극적이었고 방어적 태도를 보여 왔었다. 이런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해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원인이 있는듯하다.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고 있는 교육목표는 액자에 갇혀있고, 학교가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학력과 실적 중심의 목표에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인 교육목표와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숨겨진 교육목표가 이원화되어 있는 셈이다.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단위교육청의 교육활동을 견인하는 평가 시스템이 학력과 실적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큰 원인이 있다. 학교의 소통구조와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결과의 정도만을 일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교의 건강한 하부구조를 다지기 위한 일관된 교육적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구성원들은 열심히 달리지만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듯 체자리에서 지쳐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친인권적 학교문화 만들기는 일견 전적으로 학교구성원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인 듯 보이지만 이를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몫도 적지 않아 보인다.

Ⅲ. 마치며

지난 2년간 인권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인권교육이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거듭 생각해 보았다.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들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교경영자는 각자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권리들이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소통과 합의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과거 군사문화 속에서는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일방적인 소통구조마저도 지금은 무너진 까닭이다. 서로 단절되고 고립된 학교의 주체들에게는 어떠한 교육적 비전이나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쉽게 통하지 않는다.

CCTV설치, 교사경찰권, 스쿨폴리스 등,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되어 왔던 많은 정책들도 결국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듯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권교육은 학교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소하는 가장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학교문화의 체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교육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 보기를 제안하고 싶다.

다음은 2007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중학교 신입생 학력진단평가’ 사회 교과에 출제되었던 문제이다.

14. 다음 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잘못 말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왕따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스스로 해결한다.
- ②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많이 만든다.
- ③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많이 만든다.
- ④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늘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 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의 정답을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풀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 호남권역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on Human Rights Education:
Promo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일시 · 장소 ||

◇ 호남권역

- 일시 : 2007. 2. 26.(월) 10:00 ~ 17:30
-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대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목 차

제 1 부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 【 발 표 】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 【 토론1 】 학교에서 인권문화 만들기
(Making HR Culture in School)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 【 토론2 】 영국 인권교육의 시사점
정경수 (전남대학교 교수)

제2주제.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 【 발 표 】 2006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조금주 (상명대 교육학과 겸임교수)
- 【 토론1 】 학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인가?
김재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 【 토론2 】 교원의 입장에서 보는 인권현황 및 과제
기노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지부, 교장)
- 【 토론3 】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
윤민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전남지부, 정책실장)
- 【 토론4 】 청소년 단체에서 바라본 학교 인권방향
이재웅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
- 【 토론5 】 학생인권 인식하기
배이상헌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사)

제3주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 【 발 표 】 인권교육 도입하기 - 도전,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 【 사례발표1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체험프로그램 운영사례
이경아 (전북 옥구초등학교 교사)
- 【 사례발표2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방안
최형찬 (전북 설천고등학교 교사)

Session I.

학교교육에 인권적 관점 도입하기

Integration of Human Rights Perspectives
into School Education

발표(Presentation)

학교내 인권문화 만들기 - 영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Creating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 Lessons from Experience of Britain

Prof. Hugh Starkey (Institute of Education of University of London)

토론 (Discussion)

학교에서 인권문화 만들기

Making HR Culture in School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영국 인권교육의 시사점

(정경수, 전남대학교 교수)

학교에서 인권문화 만들기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Hugh Starke 교수의 '학교에서 인권문화 만들기: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Creating a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lessons from experience in Britain)을 잘 들었다. 그의 발제를 요약하면,

유엔 회원국 192개국에서 190개국이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약은 성인과 공식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권리협약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핵심내용은 보호(Protection), 제공(Provision), 참여(Participation)이다.

아동은 의사표현의 권리 등 모든 권리를 가진 시민이고, 대기하는 시민이 아니다. 아동은 시민이기에 학교에서 아동의 역할은 학생(pupil)이기보다는 동반자(partner)이다.

아동과 성인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아동권리협약 제29조). 하지만 영국에서 교육당국은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가 낮고, 현재 학교 인권문화는 교장,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학생 등에 달려 있다.

인권교육 10개년사업을 통해서 교사, 엔지오, 지방교육자문관, 사범대학교수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2002년 영국에서 '학생은 법적 권리, 인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배워야 한다'는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떤 권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권리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타기 교수는 **인권은 학교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교육은 학생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사, 학교운영자에게 필요하고, 엔지오와 연결시켜서 특별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환경은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즐기기엔 충분한가? 에 근거하여 몇 가지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서 인권을 배울 기회가 있는가?

- 인권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비중은?
-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미술, 음악, 드라마로 표현할 기회를 주는가?

둘째, 보호받을 권리는 존중되고 있는가?

셋째, 참여받을 권리는 존중되고 있는가?- 학교위원회의 운영

유럽의 여러 나라는 현재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의 권리존중학교(RRS)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rights), 존중(respect),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에 부응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에서 모든 아동은 1) 스스로 종교와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고, 2)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3)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과 엔지오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

스타키 교수의 발표문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아동권리교육은 어떠한 지에대해서 반성해보았다. 한국은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을 서명하였고, 1991년에 비준하였다. 이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였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당국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을 가르치지만, 모든 인간이 갖는 권리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가르쳤고, '권리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과, 아동권리가 학교에서 구현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다.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의 내용과 함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인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영국의 경험에서처럼 최근 한국에서도 인권교육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과서에서 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인권교육기법을 연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사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구학교 등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동이 인권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한국사회에는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관습이 살아있다. 최근 남존여비사상은 성차별로 비판받고 있지만, 학교에서 아동은 남자 혹은 여자로 성장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여자다움"을 강조하는 학교문화는 남녀유별이란 미풍양속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성차별 문화는 여자중고등학교의 교훈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학교는 정숙, 현모양처 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차별보다 훨씬 뿌리 깊은 것은 연령차별이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연령차별문화는 생활 속에 매우 뿌리가 깊다.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학교는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선후배 문화가 매우 강력하다. 이러한 문화는 남자학교에서 훨씬 강하고, 여자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문화가 온존하고 있는 곳이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연령이 많은 교사는 연령이 낮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학생’으로 인식한다. 학생은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배우는 학생은 모름지기 교사에게 회초리를 맞아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생각한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간의 위계와 같이 교사와 학생간을 위계로 인식한다. (학생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미풍양속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교문화를 크게 바꾸어야 한다. 교사는 모든 교과목에서 학생에게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아동권리협약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사와 학교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한국에서 교사가 학생을 하대하는 것은 마치 교육당국과 학교법인 관계자가 교장/교감을 대하고, 교장/교감이 교사를 낮게 보는 위계적 인간관계의 연속이다. 마치 군대처럼 상명하복 문화가 학교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상명하복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교육당국, 학교법인 관계자, 교장/교감 등 교육관리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교육, 인권을 고려한 교사재교육과 양성교육과 병행될 때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은 더욱 신장될 것이다.

인권의 역사를 보면, 인권은 차별받은 사람, 보호받지 못한 사람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서 신장되었다. 흑인의 노력에 의해서 인종차별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인종차별이 점차 철폐되었듯이, 학생 스스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학교가 학생에게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교수방법도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아동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정권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끝으로 스타키 교수에게 영국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당국과 엔지오의 네트워킹을 강조하였는데, 네트워킹에 성공적인 사례와 네트워킹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교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스타키 교수의 견해도 듣고 싶다.

이용교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고, 한국복지교육원 원장이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한다. 연락처는 010-4610-2458 ewelfare@hanmail.net 이다.

Summary

Making HR Culture in School

Lee, Yong-gyo

(Welfare critic and Professor of Kwangju University)

To change the current school environment that ignores the human rights of the child in schoo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complying with the UDHR and the CRC. To this end, as Britain did,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have to be subject to the HRE.

In Korea, age discrimination prevails and it has taken root deeply in every corner of society. Many Korean sayings well represent how Korean society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seniority.

Although the society changes very fast, the school is the last place where gender and age discrimination still last. As a result, teachers see children as "students" not as "human beings" looking down upon them. Even schools themselves have a hierarchy like in the military: from the top, the education authorities and school foundation down to principal/vice principals to teachers. Therefore, the top ranking officials should be the first to receive human rights education to eliminate the age discrimination. Along with this, teachers should receive initial training and refreshment courses on human rights thereby raising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Through the history of human rights, those who were discriminated, not protected, were the first ones to claim their human rights. As African Americans first campaigned for anti-race discrimination movement which consequently gave way to the elimination of the race discrimination, students should be the ones to create a school environment where their rights are respected. Moreover, teachers should change their pedagogical methods in a way that they respect opinions of students. It would be a good idea to guarantee students' rights to vote and to be elected outside the school as well.

In conclusion, I'd like to ask two questions to Professor Starkey.

First, you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etworking between the education authorities and NGOs. Could you make some examples of successful networking cases in Britain? And what kind of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networking process?

Secondly, some teachers insist that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could undermine their authority. Could you comment on their argument?

Session II.

학교내 인권교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HRE in Schools:
Experiences of Korea

발표(Presentation)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Survey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조금주 상명대학교 교수)

토론 (Discussion)

① 학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인가?

김재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② 교원의 입장에서 보는 학교인권현황 및 과제

기노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지부, 교장)

③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

윤민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전남지부, 정책실장)

④ 청소년단체에서 바라본 학교 인권방향

이재웅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

⑤ 학생인권 인식하기

배이상헌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사)

학교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인가?

김재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교사)

1. 학교에 관한 씩씩한 은유

안심하는 정반장의 표정. 도청적발장치를 집어넣고, 상우를 지그시 바라본다.

정반장 : (한숨) 난 참 부덕한 놈인거 같애. 너 **학교**에 가는 거 변호사 선임해서 빼줬고, 간통한 증거 잡아달라고 들어오는 애들 넘겨서 용돈도 벌게 해.

상우 : (취해서) 형님 같은 분이세요. 제게. 자기 행동에 책임 못 지는 놈들은 다 **학교**에 가야돼.

- 영화 '오 브라더스' 중에서

교무실 - 학교를 주름잡는 선생의 소굴. 완벽한 시설을 자랑하여 냉방에서 난방시설까지 없는 것이 없다.

교문 - 교내의 불순분자들을 걸러내는 공간. 보통 학생부에서 파견된 선생과 그 부하들인 선도부들이 문을 지킨다. 학교마다 학생부장이라는 최고의 수문장이 한 명씩 존재한다.

교실 - 열역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는 약 8m × 10m × 2.5m의 계를 일컫는다. 무질서도의 증가와 선생이 일을 하여 무질서도를 낮추는 일이 24시간을 주기로 동적 평형상태에 있다. 학교의 타아 기능의 95%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뒷칠판 근방 2m는 책·걸상이 없는 곳으로서 쉬는 시간에는 학생의 놀이터로, 수업시간에는 잠이나 말이 많은 학생들이 입식(立式)수업을 하는 곳으로 쓰인다. 냉 난방이 아주 잘되는곳. 겨울엔 시원하다 못해 춥고, 여름엔 훈훈하다 못해 덥다

교칙 - 교사들의 모든 비합리적인 언행을 정당화해 주는 수단.

[교칙의 특성]

자의성(恣意性): 교칙과 윤리, 도덕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며 교칙은 우연히 그렇게 결정된 것.

사회성(社會性): 자의성에 의해 결정된 교칙은 어떤 학생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역사성(歷史性): 교칙은 유구한 세월에 걸쳐 전해진 것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다.

분절성(分節性): 교칙은 연속적인 사물, 현상을 언어로 풀어놓아 잔피를 부린다. 그 예로 앞머리 3센티미터라 하면 어디부터가 앞머리의 경계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다 잘리고 만다.

추상성(抽象性): 교칙은 있지도 않은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한 학생의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 모두 여기에 끼워 맞추려 한다.

학생회 -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 세운 어용단체. 학생회의 지키지 못할 약속들(두발자유화를 하겠다. 급식을 개선하겠다. 학생회를 적극 운영하겠다. 등)

- 인터넷 '학교대사전' 중에서

1. 학교의 하교시간은 밤 10시(야간자율학습). 군대의 취침시간도 밤 10시.
2.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는다.
3. 규칙이 까다롭고, 어기면 심한 제재를 받는다.
4. 학교와 군대를 가야만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5. 상명하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6. 휴식시간 때 가장 열광하는 곳은 매점과 PX(군대 매점).
7. 국방비와 교육비는 국가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8. 개혁적인 장교와 교사는 퇴출당하기 쉽다.

- 인터넷 유머 '학교와 군대의 공통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거친다. 대중매체가 빈번히 학교를 소재로 다루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대중매체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선정성과 과장을 주요 기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 속의 학교의 이미지는 결코 간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대중매체 속의 학교의 이미지는 대중들의 경험을 통한 집단적 통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고괴담의 '공포', 봉숭아 학당의 '우스꽝스러움', 말죽거리 잔혹사의 '폭력' 등 학교를 마치 폭풍처럼 평정해 버리는 이미지는 추억하는 자들의 유희 거리이면서도, 현재에도 유효한 학생들의 실존에 대한 규정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사랑과 소통, 배움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입시와 교육과정 등 학교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신뢰와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권 존중에 바탕을 둔 신뢰 관계가 아닌, 감시와 통제를 기제로 한 권력적 관계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일이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타임머신을 타듯 검정색 제복을 갈아입고 교문을 들어선다. 교실에 와서 앉는 순간 아이들의 생활주기는 《교육부→교육청→교장→교사→학생》의 수직적 시스템에 완벽하게 종속당한다. 교사와 아이들은 정부가 만들어 준 교과서를 갖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입시에 맞춰 공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위임한 교칙(대개는 선도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학생회는 사실상 대표권이 없는 선언적 의미로 규정되고 운영된다. 학생회는 법률적으로 교육과정상 특별활동에 해당되는 영역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구성하여 학교당국에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갈 통로가 전혀 없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학생인권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2. 학생 인권을 둘러싼 교사들의 일상적 언술

2.1 “교사 인권도 없는데 무슨 학생 인권을…….”

현장 교사들이 보이는 대표적 반응이다. 비민주적이고 열악한 학교 구조 속에서 교사들도 인권이나 교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들의 권리가 확보되면 학생 인권 신장이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장담하는 교사들도 있다.

물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항상 조화로운 것은 아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 주체 간의 긴장과 갈등은 당연히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다.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의 권리를 적대시하고 배척한다면 갈등은 치유될 수 없고, 오히려 증폭될 것이다. 하지만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공존과 관용을 배울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누구나 국가의 인권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 항목을 알고 실천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학생도 스스로의 인권을 국가나 교사를 포함한 기성세대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견제하는 것은 스스로 ‘억압과 통제’를 통해 버티고 있다는 존재 기반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는 권리가 순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요즈음 경제계에서 ‘분배와 성장’ 논리의 대립을 연상시킨다. ‘파이가 커지면 나눠먹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와 ‘제로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이는 재화와는 다른 권리의 속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에 대한 교사들의 존중으로부터 학생 인권에 대한 보장과 논의는 시작된다. 인권이 존중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수립은 교사에게도 자신의 인권을 되찾는 길이다. 학교 공간이 교육적 삶의 지대로 바뀌는 것이 교사의 인권 회복과 결코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존의 집단적 통제 방식을 버리고,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다 차원 높은 교육적 전문성을 회복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개인의 인권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구조적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얼마 전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복도 한켠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꾸중을 듣고 있었다. 내용을 들어보니 학생이 교사용 화장실을 ‘함부로’ 썼다는 것이다. 꾸중하는 교사는 너무도 당당했고, 꾸중을 듣고 있는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와 ‘잘못 했습니다’만 연발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이 편칠 않았다. 기초적 생리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을 쓰는 데에도 교사와 학생을 갈라놓고 규제하며, 그것이 마치 대단한 ‘지도’인 양 하는 학교문화가 결코 아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는 없어 보였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생용 화장실은 교사용 화장실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그 교사의 항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하루종일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정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유일하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훼손당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것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은 이렇듯 비정상적인 교육내용과 차별을 가져온다. 대체로 교사 복지에 더 우호적인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상황을 외면하게 만들거나 개선을 더디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열악한 복지 재화로 인해 수직적 위계 관계의 상층부부터 권리가 보장되는 순차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은 교실에서 옷통을 벗어제끼는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특별한 용무 없이 교무실에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서라는 것을 감지하기 힘들다. 오히려 교사들은 ‘복장불량’과 ‘예의 없음’, ‘인내심 부족’ 등으로 취급해 ‘지도’를 행한다. 차별하는 구조를 간과하거나 당연시하며 학생 개인의 생활태도의 문제로 치환하여 ‘억지 춘향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 복지의 열악함은 구성원들 간의 권리 갈등을 부추기어 학생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마저도 차단하게 된다.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교사와 학생은 일상적 갈등의 장면을 연출하게 되고, 그로 인한 교사들의 불쾌감은 집단적 공감을 이루어 교육관(생활지도관)으로 정착하게 되어 다시 학생들에게 작용한다. 이러한 모순의 순환은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보다 넓은 시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2 “체벌 금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이군!”

학생들의 교사 폭행,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등 심심찮게 전해지는 교사 권위 추락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을 격해지게 만든다. 교사들은 그때마다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처지를 푸념하곤 한다.

다양한 원인과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학교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치료가 병행되거나 다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적응 행동'과 학생들의 '권리 요구', 그리고 학교에서 해결 불가능한 '과잉 행동 장애'³⁾ 등 치료를 요하는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구분하지 않은 채 교사 개인의 판단과 학교 교칙에 의거해 처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교육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체벌'과 '봉사활동'이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실행된다. 문제 행동에 대한 유력한 해결책으로 '체벌'을 여전히 떠올리는 현재의 학교는 충격적 사건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힘든 체제이다.

그 안에서 교사도 학생도 모두 그들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병리적 행동이 인권 보장의 분위기가 조장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하는 구조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학교교육 이외에 공공적 성격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거나 학생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여전히 교사가 체벌 등 반인권적인 교육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교사에게 본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다인수 학급, 과도한 학습량, 경쟁적 평가 시스템 등은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 방식을 뛰어 넘는 교육적 상상력을 거세시키는 굳건한 환경적 요인이다.

유네스코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는 교권 보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창조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전제라고 보고 있다. 교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가치에 관련되는 정신 활동이기에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교사들은 최소한 필요한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그 권리라는 것이 획일화된 교과서 중 선택하는 수준이다. 규격화된 내용에 기반한 교과서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창조성이 발휘되기는 쉽지 않는 일이다.⁴⁾ 더불어 획일적 평가 시스템은 다른 교사와 차별하여 가르칠 수 없고, 유사한

3) 부수적 특징은 나이와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데, 쉽게 좌절하기, 분노 폭발, 지배적 태도, 완고함, 과도하고 빈번한 욕구 충족에 대한 주장, 불완전한 기분, 사기 저하, 불쾌감,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낮은 자존심이 포함될 수 있다. 학업성취의 장애가 생기고, 평가 절하되는데, 전형적으로 가족과 학교 권위상과의 갈등이 초래된다

4) 악조건 속에서도 분투하는 소수의 열정적인 교사들이 있기는 하다. 그들의 열정이 부각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은폐될 여지도 다분하다.

진도와 점수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강요된다. 결국 교사는 학생들의 인내심을 강요하고, 참지 못하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상황을 반복하게 된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교육권의 보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하지 않게 만드는 해결책일 수 있다. 따라서 수업에 있어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은 교사들에게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심만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의 교육정책의 기초가 오히려 교사로 하여금 반인권적 교육 방법을 부추기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2.3 “학생이면 학생다워야지!”

두발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청소년 단체 활동가와 함께 두발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하지만 토론회는 인권이란 단어 앞에서 서성이다 본 게임에 들어 갈 수도 없다. 교장과 학부모의 요지는 “학교에는 학교의 질서가 있고 학생들은 학생다워야”하기 때문에 두발문제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모순이라는 것이다. 내 머리 내 맘대로 하겠다고 청소년들이 목청 찢어지도록 외치건 말건, 학생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고 하건 말건, 그런 이야기는 ‘학생다움’의 신화에 도전하는 불건전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인간이라는 조건 이상으로 요구되는 ‘다움’은 주관적 견해일 가능성이 크다. “넌 왜 학생답지 못하냐?”, “당신은 참 교사답구료.”라고 말할 때, 이미 화자의 가치 기준이 담겨있는 것이다. ‘학생다움’을 ‘변형하지 않은 교복에 단정한(대체로 짧은) 머리 모양을 하고, 오로지 학교(학원까지 포함)와 집을 오가는 것’으로 규정할 때, 학생들의 보다 다양한 요구는 ‘학생답지 못함’으로 여겨진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상적 삶의 패턴은 끊임없는 학습이고, 그 외의 것은 부정적이고 거세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된다. ‘생활지도’라는 미명아래 학교의 규칙은 ‘학생다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요 장치가 되고, 학생 개인의 편차를 배제하고 동일성만을 강조하여 수월성을 추구한다. 학습을 위한 생활의 통제를 ‘생활지도’라고 명명한 채, 자치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적 생활 교육을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활지도’의 철학으로 많은 교사들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 경험을 신념화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두발·복장 등을 규제하면서 ‘학생다움=용모단정=성적우수’라는 등식을 적용한다. 일부 교사들은 불변의 진리인양 이를 숭배하며 검증됐음을 확신한다. 하지만 국내엔 이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부실하다. ‘인권 존중’과 ‘교육적 효과’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검증에 대한 시도는 부족한 채, 막연한 믿음에 근거해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복장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와 비행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서울대 권재원)라는 논문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권재원은 학교복장 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결론은 청소년들이 복장규정을 잘 지킬수록 복종적 성향이 증가하며, 참여적 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 시민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적 시민 양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청소년의 복장이 비행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비행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장규정 준수도는 비행을 예방하지도 야기하지도 않았다는 분석이다. 복장규정과 청소년 비행 예방과 관련한 일부 교사들의 믿음은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막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뿌리 깊은 갈등을 권리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권력적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제 주체들 간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른바 ‘학생다움’을 규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은 현상 유지나 소극적 개선을 조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어수선한 현장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과정과 문화를 지니고 있는 대만의 경우는 정부 당국이 의미 있게 검토해야 할 사례라고 본다. 대만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학생 두발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교육부는 두발 규제는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신발, 양말, 복장 등’에 대한 규정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제기구의 수많은 인권적 권고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학교 교육력의 낭비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4 “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6살 난 딸을 가진 한 선생님은 딸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통해 선생님들과 소통을 한다고 한다. “이번 주 보육활동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 달은 어디로 나들이를 갑니다. 보육료 밀리지 말고 넣어주세요.” 등의 내용을 가정통신문 같은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딸의 가방 안에서 편지를 꺼내던 그 선생님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고 한다. “엄마는 왜 내 가방을 맘대로 열어 보는데?”라고 묻는 딸의 눈빛에 심한 부끄러움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가방을 맘대로 열지 않고, 선생님이 주신 편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딸의 동의 아래 편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 선생님이 가방을 맘대로 열어보던 근간에는 딸의 권리, 어린이 인권에 대한 여전한 무감각과 패권이 존재했던 것이다. 보호해야할 대상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는 잠시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부모가 어른과 보호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은 법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민법 909조는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라고 명

시되어 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라고 한다면 어떨까?

미성숙한 존재로서 학생을 규정하는 것은 교육학에 대한 무모한 부정이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이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모쉬맨의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연구 결과 등에서 대부분의 인지능력이나 도덕성, 자율성 등은 15세 이후 청소년들과 성인은 차별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를 이유로 한 권리 제한은 현실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보호를 위해서’란 명분으로 학생은 가정과 학교 안으로 유기된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라는 통계가 있는데도, 가정 안의 폭력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살짝 비켜서서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한편 두발 단속이건, 소지품 검사건, 학교 폭력이건 모두 학교장의 전권 아래,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보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어느 인권 의제와 마찬가지로 학생 인권 역시 국가와 법에 의해 공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권리주체로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할 때, 건강하게 생존하고 발달하고 보호받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존재적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도움과 혜택을 누릴 권리도 함께 가진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권리 주체로서의 경험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보호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경험 없이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 순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권리 행사의 경험이 주어져야 비로소 필요한 능력의 획득과 성숙이 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

2.5 “그냥 두면 관리가 안돼요!”

학생들을 통제하는 가장 큰 수단은 학교생활규정(선도규정)이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두발, 복장 등을 규정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두발과 복장을 자율로 해보자는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낸다. 또한 법령이나 학교 규칙에 근거한 통제가 아니라 상당히 교사 개인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군사정권 시절로 이어지고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담 당 사 무	
학급주임	교외운동장사용에 관한 것, 지각자 취조 및 지도, 복장의 단속(상의, 하의, 특히 上靴下靴), 운동복장의 단속, 略裝의 허가, 안경착용의 허가, 복장검열, 紛失物 遺失物 拾得物의 취급, 손상물변상사무, 귀성여행의 허가, 숙소변경의 허가, 宿所簿의 掌理, 宿所名札의 단속, 가정 및 숙소 방문, 청소의 지도감독, 교과서의 貸借忘失 등의 지도, 일반휴대품에 주의할 것, 양호 및 靜養室 사용에 관한 것, 교실내 청소도구의 보관 및 난로의 관리, 흥행물 관람물 단속, 級會의 허가, 級會의 지도, 교외집회 또는 단체가입에 관한 지도, 우편물에 대한 지도, 출납부의 검열, 수업료, 교우회비 怠納者의 지도, 釀金の 許否 및 단속, 방과시 생도의 교실 居殘 및 교실출입의 지도, 야간외출의 단속, 교관실, 회의실, 숙직실, 소사실, 직원변소, 玄關口 등의 생도 출입 단속
감독계	지각자 접수 및 통고, 비상소집소방연습, 등교, 외출, 여행, 원족, 복장 제정, 생도제복 調製에 관한 것, 복장검사의 時期 回數 및 統督, 紛遺失物 및 습득물에 관한 帳簿, 손상물변상에 관한 것, 방과시 교실 居殘生의 단속, 숙소변경 許否, 가정 및 생도 숙소 방문 시찰, 청소분담구역에 관한 것, 청소감독자의 배당, 청소지도감독 참가, 청소용구의 배급 검사, 飲用湯에 관한 것, 靴箱(신발장), 傘棚(우산 선반), 外套掛(외투걸이), 自轉車置場에 관한 것, 구급약, 靜養室 사용에 관한 것, 唾壺, 塵箱, 변소의 청결에 관한 것, 난로의 감독, 참가, 야간외출 단속에 관한 것, 興業物 관람 단속방법, 級會의 지도 참가, 校外社會의 모임 또는 단체에 관한 건, 교과서 검열에 관한 건, 우편물 爲替(換)증명에 관한 것, 계사의 許否 단속D)

위의 표는 1932년 해주고등보통학교 학급주임(담임교사) 및 감독계(학생부 교사)의 담당 사무를 정리한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규율의 적용 및 지도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지금에 있어서 '반장', '선도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이 천황제 중심의 군국주의 국가였으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규율이 실시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규율을 살펴본 것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경험한 학생규율은 대체로 60년대, 70년대의 학교 규율이다. 기성세대의 대다수가 비슷한 학생규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험이 기성세대의 학생규율에 대한 상식이자 통념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운 모습과 행위가 있으며, 학생들이 학생다운 모습과 행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교사는 적절한 단속과 검사를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학생다운 모습과 행위의 근간이 되는 학생규율이 어느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이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규율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교육이란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체험이요, 집단에의 경험이며, 과학적 이론의 확립이며,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민주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인권은 교육의 목적이요, 교육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자치활동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자치활동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서로를 높여주고 계발해주는 공동체의식이 자치활동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규칙을 스스로 정해보고 이를 준수하는 체험과 부적응 학생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도 학생집단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 특정 기준에 획일화시켜 통제, 관리하는 것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원시적인 교육 방법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학생 자치활동'을 교육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학생들에 대한 불신과 교사의 지도 영역 강탈(?)에 대한 반감, 그리고 기성 세대로서 교사들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재가 놓여 있다. 집단주의적 통제에 익숙한 교사들과 학교 시스템이 '자치 공동체'를 주요 교육 목표와 원리로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인권적 규율로 인한 침해한 문화적, 정치적 충돌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학교가 여전히 보수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교육관의 포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자치적 규율을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고 준수하는 학교의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 대개의 경우 기존의 교사 주도의 관리, 통제 방식에 비해 규칙 준수도와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교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에 대한 반감을 떨쳐버리고, 차분하게 학생들을 믿고 지켜봐 주는 노력만으로도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삶은 성숙될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3. 설문으로 본 광주 지역 학생들의 인권 실태

광주학생생활연구회는 지난 2003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활동을 포함하여 수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해왔다. 더불어 청소년 인권센터, 흥사단,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수 차례 개최한 바 있다. 광주의 다양한 단체들의 지속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진해되던 중, 2005년 각 단체들이 연대하여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 조례' 제정을 위해 광주 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권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다.

차원	내용
1) 조사 대상 및 응답 인원	· 광주 시내 중고등학생(중학생 366명, 고등학생 484명) ·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중학교 교사 239명, 고등학교 교사 204명) · 만 30세 이상 59세 이하 광주 시민 남녀(400명)
2) 조사 기간	· 2005년 12월 6일 ~ 12월 16일
3) 조사 방법	· 자기 기입식 설문(교사, 학생) · 전화 조사(시민)
4)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
5) 표본 추출방법	· 다단계무선층화집락표집(교사, 학생) · 비례층화무작위표집(시민)
6) 조사 기관	· 광주학생생활연구회 · (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와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재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실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조사 결과만 게재하도록 하겠다.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내용이라 변화무쌍한 학교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학생 인권의 실태를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조사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은 이 조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킨다고 하겠다.

[인권 보장 일반]

☞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합계		충분히 보장 되고 있다	보장 되는 편이다	보장 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보장 되지 않는다	모르 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4.9	39.0	30.8	13.5	11.0	.8
고등학교	100.0	484	3.7	36.6	33.6	19.2	6.7	.3
교사	100.0	443	6.3	65.0	23.6	1.7	1.4	2.0
시민(학부모)	100.0	400	5.7	41.9	37.3	8.4	6.6	.0

[학생 자치 활동 보장]

☞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합계		매우 자율적 이다	자율적인 편이다	자율적이 지 않은 편이다	전혀 자율적이 지 않다	모르 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3.0	31.7	22.1	12.0	29.5	1.6
고등학교	100.0	484	1.4	28.6	29.9	16.1	23.3	.8
교사	100.0	443	10.3	59.1	20.7	4.0	5.0	1.0

☞ · 학생회의 결정 및 건의사항 등을 학교가 수용하고 있다

	합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 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4.1	19.1	27.3	17.8	30.4	1.4
고등학교	100.0	484	1.2	25.1	29.1	24.2	19.6	.7
교사	100.0	443	7.3	55.7	23.2	2.0	9.3	2.6

☞ · 학생 축제가 학생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합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 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9.0	28.9	26.2	16.4	18.4	1.1
고등학교	100.0	484	10.8	26.4	21.5	21.9	19.2	.2
교사	100.0	443	5.7	38.2	32.9	17.4	3.3	2.6

[학생 관련 행사 및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

☞ .수학여행 관련 안전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나요?

	합계		매우 잘 반영된다	반영되는 편이다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모르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8.0	34.8	28.1	20.7	7.6	.8
고등학교	100.0	484	2.5	30.7	32.0	26.3	8.5	.0
교사	100.0	443	9.9	56.2	24.5	5.2	2.8	1.5

☞ .특기 적성 교육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합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12.3	20.3	25.3	26.4	14.6	1.1
고등학교	100.0	484	15.8	32.6	22.0	19.1	10.1	.3
교사	100.0	443	7.1	34.6	33.7	19.9	1.8	2.9

☞ .입시 준비를 위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할 때 자신의 의사 반영되었다

	합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2.7	18.3	20.5	10.7	46.4	1.4
고등학교	100.0	484	5.0	23.0	27.3	29.2	15.3	.3
교사	100.0	443	7.3	34.7	26.4	10.4	14.8	6.4

[인권 교육 실시]

☞ .재량활동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아본(실시한) 적 있나요?

	합계		받은 적 있다/ 실시한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실시한 적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13.4	64.1	20.3	2.2
고등학교	100.0	484	15.0	65.5	18.5	1.0
교사	100.0	443	21.3	40.2	16.4	22.2

☞ .재량활동시간에 평화교육을 받아본(실시한) 적 있나요?

	합계		받은 적 있다/ 실시한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실시한 적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9.9	64.9	23.0	2.2
고등학교	100.0	484	6.8	71.2	21.3	.8
교사	100.0	443	19.9	42.0	15.2	22.9

[적법절차의 보장]

☞ · 학교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합계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8.7	89.9	1.4
고등학교	100.0	484	24.7	75.3	.0
교사	100.0	443	70.8	27.6	1.7

☞ [학생] 학생생활과 관련한 상벌규정에 대해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나요?
 [교사] 상벌규정이 학생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합계		들은 적 있다/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	들은 적 없다/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않다	모르 겠다	무응답
	%	N				
중학교	100.0	366	34.1	37.7	26.4	1.9
고등학교	100.0	484	45.1	36.4	18.5	.0
교사	100.0	443	39.5	51.0	7.6	1.8

4. 미래를 기대하며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설문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입시중심 교육의 억압적 학교문화가 교육적 경험만으로 바뀔 수 있는 간단한 현실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자치가 자라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입시중심 교육체제가 생활 중심 교육체제로 좀 더 열리고 중심이동을 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교육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이다. 이 교육목표 재설정 과정에 인권적 가치와 자치의 의미가 반영되고,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고,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도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 교과로, 교육 과정과 평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이고 양적인 인권교육이나 자치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인권과 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배우고 체험하고 인정받고 평가받는 총체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입시 교육체제의 전면 개편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 모든 교육과 생활 전체가 오직 입시로 귀결되는 교육 체제에서 그 틈새를 벌리고 인권과 자치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한계를 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교실에서 자라고 있는 폭력과 억압과 침묵을 도외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인권과 평화의 감수성으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교육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인권의 상상력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이 시대 교사들의 과제이다.

최근 민주노동당, 전교조, 여러 청소년·인권 단체가 합심하여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두발규제금지, 체벌금지, 강제야자보충금지, 학생회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이 주장했던 요구를 모은 것으로, 통과가 될 경우 학생인권은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교사와 기성세대는 학생 인권의 침해자로서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은 역으로 학생의 교사와 기성세대에 대한 존경으로 확장될 것이다.

교원의 입장에서 보는 학교인권 현황 및 과제

기노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지부, 교장)

I. 시작하는 말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서 그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는 학생이며 또한 교사이다.

그런데 최근 인권 침해 사례는 양측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작금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 교원의 인권, 학부모의 인권 등 교육 주체간의 상충적 인권 침해 사례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본 발제 원고를 토대로 인권 침해의 유형을 대상별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발제 원고와 본고의 관계 설정

발제 원고의 내용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위주로 작성된 듯하다. 그 내용 분석의 타당도, 신뢰도면에서도 개인적으로 공감하여 교육현장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토론자가 초등학교 현장에 종사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인권 현황과 교원의 인권에 대한 것을 함께 모색해 보고,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도 이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인권

학생인권은 광의의 의미에서 '학생이 개인적·사회적 영역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협의의 의미로는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원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교사의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교원은 교사로서 자질이나 품성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권위로서 제도적 권위, 기술적 권위, 지적 권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 교원의 인권에 있어 상관 관계를 규명하여 볼 때,

학생은 자율적인 인격체이며, 인권을 지닌 권리 주체이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 권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자치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학생의 삶의 개선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다. 학생은 미래의 주역일 뿐 아니라, 현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다.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발전가능성과 가소성을 전제로 교원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지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교육은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 즉, 교원의 권위는 교육 작용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높이려면 교원의 권위가 세워진 가운데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또 교원들의 책무성 제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IV. 교육 현장의 인권 침해 현황

1. 학생 인권 침해 현황

(1) 동료간, 상하급생간

전통적인 선후배의 학교 문화 풍토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또는 약자가 강자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갈수록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하거나 집단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갈수록 학생들 사이에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2) 교원들로부터

학교 당국이나 교원들에게 받는 인권 침해의 사례를 들면 강제 자율학습, 두발 규제, 복장 규제, 과도한 체벌, 폭언, 성희롱, 사생활 간섭 등이 있다.

(3)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인식하여 지나친 과보호적 인권 침해→부모가 바라는 진로의 강요로 자녀의 특기나 적성을 무시, 방임적 인권 침해→양육에 대한 무책임, 부모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4) 학원으로부터

점수를 서열화하여 공지함으로써 받는 인권 침해, 성적에 따라 과한 체벌을 하는 인권 침해, 입시 지상주의로 인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언어적 인권 침해 등

2. 교원 인권 침해 현황

(1) 동료간

① 동성간

능력, 권력, 금력의 과신에 의한 인권 침해, 또한 출신성분, 가정의 환경, 사회적 활동 등의 과시에 의한 인권 침해

② 이성간(성차별)

편향적 여성관에 의한 여성 폄하 발언에 의한 인권 침해, 성적 모욕을 주는 언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

(2) 상하간

연공 서열에 의한 인권 침해→일방적 지시, 간섭, 요구

직권에 의한 인권 침해→학교장이나 교감이 염색 머리, 복장, 상스러운 말, 거친 말, 성적 농담으로 인한 인권 침해

(3) 학부모로부터

자기 자녀에 대한 편애의 요구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기의 일방적 요구로 인한 교원의 인권 침해, 자녀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학생 지도에 있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인권 침해

(4) 학생으로부터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교사의 인권 침해, 속어의 지칭이나 성희롱을 통한 인권 침해, 학교의 규칙을 어긴 경우 교사의 지도에 대한 반항적 태도, 악성 루머에 대한 인권 침해→인터넷 정보 매체를 통한 인권 침해, 흥기나 체력을 이용한 교사의 신체 위해, 흥기로 자기 신체를 자해하는 행위, 낙서 등을 통한 인권 침해

(5) 언론으로부터

(6) 행정청으로부터

V. 인권 침해 예방 대책

1. 학생 인권 침해 대책

첫째, 인권을 배우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적용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동시에 체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자치와 자율,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 학생관련 의제의 설정 및 제출, 학생자치 규율의 제정, 학교축제의 자율적 기획·운영 등에 대해 학생들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 허용과 학생회 사무실의 확보, 학생전용 게시판 설치, 다양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사용 등 물적 조건을 확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가칭 학생의 인권 침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겠다.

넷째,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위한 교사의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겠다.

2. 교원 인권 침해 대책

최근 교직 위기는 교육개혁 과정에서 개혁대상으로 내몰린 교직집단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과 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 교원의 잘못된 행태로 왜곡하는 사회풍토가 가장 큰 문제이며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면,

첫째, 범국민적으로 교사를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잘못은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규정대로 철저히 처리하되 이를 모든 교사들의 문제인 것처럼 과대확장 호도하는 것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둘째, 교사들의 꾸준한 자기 연수를 통하여 교수기술 및 전문분야에 대한 실력을 탄탄히 갖추었으면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회복이다. 이를 위하여 언제라도 ‘학부모 상주실’ 등 대화의 창구를 마련했으면 한다.

넷째,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칭 ‘교원의 인권 침해 방지 위원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종합하면 학생의 인권은 훨씬 더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다수의 학생은 교사, 학부모, 사회인 등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의 침해를 명분으로 교육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바른 인권의 바탕 위에 교육을 잘해 보자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교원의 인권 또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학교 현장의 인권보호는 법률에 의거하기보다는 교육가족의 의식 개혁과 교육정책 수준으로 또는 각 교육기관의 현장, 규칙, 교육시책 등의 제정으로 추진됨이 좋을 것 같다.

VI. 맺는 말

이상으로 학생인권 및 교권의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이며 운명이다. 학교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학생은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존재 가치로서 교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교육은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 교육활동의 성과를 높이려면 교사의 권위가 세워진 가운데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이끌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좋은 전통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통을 더욱 살려 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기회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체계적으로 적용·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아이들

윤민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전남지부, 정책실장)

1. 들어가며 - 교육부와 언론, 춤추는 인권

우리교육현장을 들여다보면 뭔가에 홀린 것 같다. 도깨비에 쫓겨 열심히 도망갔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악몽의 기억처럼 교육현장은 변한 것으로 보일 뿐 결국은 변하지 않았다.

대구에서 지각한 학생에 대한 200대 체벌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에서는 체벌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이 잠잠해진 지금, 실질적인 법제화는 추진되지 않았다. 다른 예로 두발단속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에서는 두발자유화 등 각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교육주체들의 합의하에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학교현장에서 각 주체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현장에서 문제 사안이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잠깐 몰려들어 호들갑을 떨고, 여기에 맞춰 교육부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인권은 문제의 시작점에서부터 점검하고 계획하기보다 일종의 여론홍보용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 학생생활규정 분석 및 모범안 마련, 교칙개정,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 학생인권법 개정 발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국가인권정책안에서의 인권교육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발성에 그치거나 각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회전반의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학문적 유희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변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2.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의 의의

가. 각 주체들의 인권의식의 드러냄

이번 연구조사는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동안 두발 및 용의단속, 학생자치활동 제한, 건강권과 같이 부분적인 영역에서의 조사, 토론회가 있었지만 이번의 국민기본권적 접근을 통한 분류와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인권의식을 중심으로 한 설문에서 학생과 교사간의 의식차이의 드러냄은 인상적이다. 우리는 '제재를 가하는 측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측은 인권침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과 훈육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규칙이 아이들에게 합리성을 인정받고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야 만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이고 인권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몸부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 또한 외모와 관련한 두발단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자치활동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은 우리교육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이기도 하다.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식의주이다. 사회양극화로 '점심값' 조차 낼 수 없는 처기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잣대로 급식비인식바코드가 학교 안에 등장하였다. 학생들의 부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불법 연장노동은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을 잘 드러내준다.

결국 각 주체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을 갖고 있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철학적 정의, 교육적 계획이 전무하고 이로 인해 인권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잘 드러냈다. 드러냄과 사실 확인, 우리교육의 아픈 현실이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마저도 기록하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나. 의사소통의 문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왜 처벌받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을 받는다. '교사는 충분히 통보했다고 응답하지만 학생들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두 집단이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적당히 눈치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이 틀렸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네가 000했기 때문에'라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처벌은 여전히 폭력이다. 교육은 고도의 '설득의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아이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다.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싫은 것이고 아프다고 하면 아픈 것이다. '다 너를 위한 것이다'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화를 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3. 학생인권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

발제자의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들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를 참석하는 기분은 찝찝하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권침해에 침묵, 방조하였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을 위해 아이를 “빡세게 잡”는데 있다. 일단 거리의 아이들 중 사립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는 반면 공립학교 아이들은 좀 더 불량스러워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단정한 머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교육적이었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립학교에서는 더욱 더 아이들을 ‘빡세게 잡’는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학교’를 만든 공범임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학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다른 주체들의 각성과 제도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학부모를 핑계로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을 벗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발제자가 제시한 1)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입각한 규칙 2)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의 민주성 보장 3) 의사소통의 강화와 보장 장치 마련 4) 인권교육강화 5) 교육철학의 합의를 바탕으로 1) 인권감수성을 해치지 않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마련 2) 교육청 차원의 관리 및 지원 3) 학생인권신고센터(가칭) 설립 4) 법 체제 마련 및 정비에 적극 동의한다.

우리지역에서는 지난해 장휘국 교육위원과 학생인권조례준비위에서 준비한 ‘학생인권조례’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적이 있다. 현재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안과 함께 지역 교육위원회 차원에서의 조례제정과 같은 방안도 함께 모색해도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거시적인 구호나 법제화보다 중요한 것은 세밀한 실천 계획이다. 그러자면 인권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우리아이들을 단순한 ‘인적자원’으로만 보고 경쟁력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아이들의 가슴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도 고민하여 적극적인 인권중심교육을 펼쳐야 한다. 우리아이들이 폭력에 길들여지고 학습하여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전에 말이다.

4. 나가는 말

우리교육현장에서는 미성년, 미성숙, 청소년, 학생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동의어이다. 쓰임이 같은 이 단어들은 우리아이들의 인권과 반대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학교는 교육현장이고 교육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아이들에게 전인적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현장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했고 제 기능을 상실했다. '사랑받은 아이는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안다' 우리아이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인권을 보장받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이 만드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할 것이다.

청소년단체에서 바라본 학교 인권방향

이재웅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

1. 들어가며

광주YMCA는 2000년부터 광주광역시로부터 청소년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인권신장과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 인권의식 지표조사, 인권침해 고발전화 운영, 인권포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것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담론이 일반화 된 지금에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2000년 당시만 해도 충남과 광주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로서는 앞서가는 청소년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역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권리신장에 얼마나 기여하였고, 또한 학교에서 학생인권신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이지만 8년 동안 청소년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는 청소년 단체로서 현재 학교내 학생인권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향후 학생 인권신장을 위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제언하고자 한다.

2. 학교 내 학생 인권현황

오늘 이곳에서 논의하는 주 내용이 청소년 인권 일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학교에서의 인권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한 것으로 중심이 맞추어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 개념인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항은 차 후 기회가 있을 때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2000년부터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지표 조사를 실시해 온 광주YMCA 청소년 인권센터의 2001년 설문과 2005년 설문내용을 비교분석 하면서 학교 내 인권현황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를 개괄하고자 한다.

지면상 설문내용의 전부를 비교분석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에서 5년 동안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선택했음을 먼저 밝힌다.

첫째 평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2001년에는 '관심이 있다'가 41%로 가장 많았고, '별생각 없다'가 32%, '관심이 많이 있다'가 15%, '관심이 전혀 없다'가 6%로 나타났다면, 2005년에는 '관심이 있다'가 43.2%, '별생각 없다'가 31.3%, '관심이 많이 있다'가 14.6%, '관심이 전혀 없다'가 4.6%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부분에서 외모, 성격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있어서는 2001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없다'가 58%이고,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42%로 나타났다면, 2005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없다' 55.5%,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44.2%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두발, 복장, 개성 등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있어서,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84%로 이며, '침해받은 적이 없다'가 14%로 나타난 반면, 2005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81.6%, '침해받은 적이 없다'가 18.2%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평화적 집회 및 동아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 2001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없다'가 56%,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44%였다면, 2005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없다'가 66.3%,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33.2%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사생활(일기/소지품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2001년 '침해받은 적이 있다' 57%, '침해받은 적이 없다' 43% 2005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약 5%감소하고, '침해받은 적 없다'가 약 3%정도 높아지게 되었다.

여섯 번째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있어서,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57%, '침해받은 적이 없다' 43%였다면 2005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약 4% 감소했으며, '침해받은 적이 없다'가 3%정도 높아졌다.

일곱 번째 동료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있어서, '침해받은 적이 없다' 59%,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41%였다면, 2005년에는 '침해받은 적이 없다'가 65%, 침해받은 적이 있다'가 34.1%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난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신장 체감 지수는 아주 미세하게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네 번째와 일곱 번째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청소년 단체들의 노력이 소홀했다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생활규칙의 근거인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교사와 청소년단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청소년인권소위원회를 통하여 200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의 연대협력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 지원으로 2005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광주학생권리조례제정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학생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시 교육위원들이 다음해(2006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거를 거치면서 교체되는 과정에서 결국 조례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게 하는 대목이다. 가정이지만 이 때 조례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앞서가는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화가 되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청소년 단체들로서는 청소년 인권을 위해 가장 먼저 조례제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 결과로 남게 되었다.

3. 학교 내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으로부터

청소년 단체에서 학생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 자치조직인 광주학생연합을 바라보는 교육기관의 시선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불순집단으로 여기는 듯 했다.

당시(2001~2002년) 청소년인권센터는 학생 자치조직인 광주학생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광주 우체국 앞에서 학생연합의 집회를 막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수 우체국 앞에 진을 치며 결국 집회를 무산 시켰고 그 때 학생연합이 집회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주요 내용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였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그 주장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보장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스스로 모였던 학생연합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으며, 여전히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외롭고 고독하게 소수자로 활동했던 그들의 주장이 이제는 공론화 되어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학생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며, 이렇게 법제도화 되었을 때 이 후 조례안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청소년 단체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4. 담론에서 구체적인 실험으로

학생 인권신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여 인권시범학교가 정해지고, 다양한 모델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실험속에 우선적으로 담겨야 할 것은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할까 한다.

첫째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헌법상의 모든 인권에 해당하지만,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자치권과 학교선택권, 교육내용선택권 교육내용 결정 기타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등이 들어가고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권리들이 거의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학교내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위한 조직·기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는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학생이 희망하는 동아리 조직이나 계발활동을 제한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는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 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및 유희시설 우선 배정, 강사 지원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수학여행, 수련활동, 교복, 앨범, 체육복 선정, 보충 자율학습 실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부분에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학교는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의 징계는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을 통한 심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청문(학생, 학부모)의 기회보장,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는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몰수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학생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부당하고 임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교내에 인권보호기구를 설치하여 학생의 인권보호와 그 침해의 예방, 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정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신장을 위한 완결된 형태의 답은 제시되지 않을지라도 부족하나마 담론이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다양한 실험들이 구체화 되어 나이 먹어 병든 학교가 아니라 젊은 학교, 역동적인 학교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본다.

Session III.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방안

Successful Implantation of Human Rights Culture in Schools:
Rol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발표(Presentation)

인권교육 도입하기 - 도전, 문화, 교육과정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Change, Culture and Curriculum
(Prof. Audrey Osler, University of Leeds, UK)

사례발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체험프로그램 운영사례

이경아 (전북 옥구초등학교 교사)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방안

최형찬 (전북 설천고등학교 교사)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체험프로그램 운영사례

이경아

(전북 옥구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는 말

‘하늘은 뜻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天不生無意之人),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地不長無名之草)’ 이것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우리학교는 이를 가르침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삶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 자신 및 타인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이다. 이런 초등학생들의 대표적 공동체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습득하도록 도와야 할 교사들이 먼저 天不生無意之人 地不長無名之草 를 실현 할 때 비로소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민주시민의 전제가 되는 다양성과 타인에 대한 존엄성의 인정은 아동이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시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을 줄어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타인에 대한 우호감을 높여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자 존귀한 인간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생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인권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매우 미숙하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남을 존중하고 신체적, 능력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들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은 나뿐만이 아닌 너와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함양하는 인권교육이다.

나와 타인에 대한 인권 존중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일상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한 학습내용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이때, 우리아이들의 인권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로 변화하여 학생의 인권을 싹 틔워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러 인권관련 기관과 선행연구학교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 및 교육주체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것이다.

II. 학교 실태

1. 교육환경 실태

본교는 도시 근교에 위치한 6학급 소규모의 전형적인 농촌 읍 소재지 학교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개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학교이며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많은 학교이다. 그러나 열악한 농촌의 현실로 본교 학부모의 대다수는 농사가 아닌 도시에서의 맞벌이 취업이 대부분(95%)을 차지하고 있고, 결손가정이 많아 자녀교육에 문제점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넓은 들판에 자리하고 있어 학생 및 지역주민의 놀이 공간 등의 문화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작은 가구 단위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바쁜 부모와 가족 구성원의 관심 소홀로 상호 이해와 배려에 서투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적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을 배경으로 학생들의 상호이해와 배려의식의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2. 인권교육 실태

가. 조사대상 : 본교학생, 교사, 학부모

나. 조사내용 및 결과

1) 인권 이해 및 인식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은 교사(90%), 학부모(73%), 학생(54%)순으로 낮음

2) 인권교육의 실태

학생(34%), 교사(30%), 학부모(20%)순으로 인권교육을 받거나 교육받았음

3) 인권교육의 필요성

교사(95%), 학부모(90%), 학생(81%)순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4) 인권교육의 방향

교사, 학부모 모두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에 우선을 두어 지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5) 기타 53%의 학생이 따돌림을 경험 하였고, 72%의 학생이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9%의 학생이 다른 사람을 대체로 존중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다지는 활동과 교과, 재량활동에서의 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에서의 다양한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 실천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Ⅲ. 본교 인권교육 실천 사례

1. 교육환경 여건 조성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기반 조성

먼저 인권교육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여건 조성 과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인식을 구축하는 활동을 하였다.

첫째,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여건 조성

가.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해소와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 · 학습 자료로 인권 관련 도서(교사용, 학생용), 인권 영상자료, 인권잡지, 인권교육자료 등을 구입 비치하여 교사 연수, 학생 지도에 활용 하였으며,

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외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다양한 인권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쉼터, 자유 독서대, 어린이 자치실, 대자보, 인권 체험터, 사이버 인권마당 등 학생들의 권리 함양을 위한 환경 구성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인권환경을 조성하였다.

다. 또한 학급에서의 인권존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 존중 학급 운영 실천과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자기 평가지'를 활용한 인권교사 실천 프로그램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인권의식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고 상호 존중되는 교실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한 교직원 활동

학교에서의 인권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에 대한 지식 과 인권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대상으로 교내에서 월2회 집단연수, 인권 워크숍, 세미나 5회, 인권연구 학교 방문 3회, 하계휴가 중 30시간 개인연수, 인권 강사 초청연수 1회, 휴가중 개인별 인권 연수 각 1회, 수업 연구 7회 등 실시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인권 마인드를 형성하고 나아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인권교육을 주도할 교사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춰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나. 학생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배움터의 영상 자료와 학교에서 구입한 인권비디오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매주 화요일 아침 시간에 인권영상을 시청하고 교사와 함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월2회 토요일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인권존중, 상호이해, 차별, 환경권, 평등, 자아존중 등 인권을 생각 할 수 있는 노래를 선정, 부르도록 하는 시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권방송 및 인권노래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상황을 알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다. 학부모의 인권의식 고취 활동

가정에서의 바른 자녀교육과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학생 인권신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1회 인권통신, 연2회 학교 신문의 인권코너, 학부모 대상 인권연수 1회,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인권마당의 학부모 방을 운영 하였다. 이로써 학부모의 인권적 마인드 형성을 돕고 학부모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생활과 실천의 장을 갖도록 하였다.

2. 교과 및 재량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첫째. 교과시간을 이용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자료의 '초등학교 학년별 인권관련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우리교과서의 인권이야기',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선행 정책연구학교의 교과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도덕(저학년은 바른생활), 국어,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인권지도요소를 추출하고 각 학년별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 지도함으로써 교과와 관련한 인권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둘째,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 재량활동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시간을 17시간 확보하였으며

나. 재량활동 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선행연구학교 자료를 활용하였고

다. 인권교육 재량활동교육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고자 저, 중, 고학년별로 '인권생활의 길잡이' 책을 구안·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라. 인권생활의 길잡이는 인권 영역에 따라 저, 중, 고학년 연계가 되도록 모두 6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인권생활의 길잡이 구안·제작

·국가인권위원회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	·인권 영역별 6개의 단원 구성	·단원에 따른 제재 선정	·연간 총 17차시 연간지도 계획 수립	·학생용 인권 교육자료 ‘인권생활의 길잡이’ 구안 제작
---------------------------------	-------------------	---------------	-----------------------	--------------------------------

3. 다양한 인권체험 활동으로 인권 실천의지 다지기

특별활동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 어린이 자치활동, 학교 행사를 통한 인권체험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였다.

첫째. 어린이 자치활동의 활성화로 학교생활과 학급생활 속에서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의 기본 자질 및 태도를 형성하여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를 실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모든 부분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이 공정한 선거를 거쳐 전교 임원을 조직 하였고

나. 월2회 매주 금요일 자치활동 시간을 활용 4~6학년 전학생 모두 참석하는 어린이회를 운영하고 운영 후 협의 된 사항은 교직원과 학교운영 협의회와 협력하여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다. 또한 교사 내에 어린이 자치 활동실을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토론, 의사소통, 학교행사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 의견이 공유 되도록 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여 자치회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학교 행사를 통한 인권체험 활동 전개

교내외의 행사 속에서 다양한 수준의 인권개념을 반영하고 인권교육 성과를 적용하도록 하고자 학교 행사 활동을 통한 인권체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펼쳤다.

가. 장애인의 달 주간 행사로 장애 이해 비디오 시청, 장애 시설 ppt, 장애체험 등을 전교생 실시하였으며

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5,6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정보 탐색 대회를 1회 개최 하였고, 환경 체험 3회, 북녘 어린이 돕기 알뜰 바자회 1회, 인권 사랑 도예 체험 6회, 인권독서 골든벨 1회, 인권 단체 견학 1회, 교내 인권표현의 날 1회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체험 활동 전개

교내외의 행사 속에서 다양한 수준의 인권개념을 반영하고 인권교육 성과를 적용하도록 하고자 학교 행사 활동을 통한 인권체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펼쳤다.

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화합의 교육풍토를 가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과의 1교 1시설 자매결연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상의 장애 이해교육 1회, 학생 장애체험교육 3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체험교육 2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나. 월2회 실시되는 토요일 휴업일에 인권상황에 대한 활동자료를 10회 제공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실천함은 물론 인권자료를 읽고 부모와 학생의 생각을 적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가정에서의 인권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IV. 마치는 글

본교는 2006년 1년 동안 인권시범학교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 실천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 · 학습 자료 확충,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친인권적 교실 문화 만들기를 통해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 하였고,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연수, 인권방송, 홍보 등의 활동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 하였으며 인권생활의 길잡이 책을 구안 제작하여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교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자치활동의 활성화, 다양한 행사활동으로 인권 상황별 체험활동을 통해 인권의식을 내면화 하는데 주력 하였다.

1차년도의 이 모든 활동은 인권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밑거름으로 하여 2007학년도 2차년도 운영에서는 교육공동체들의 인권의식이 좀 더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인권의식을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실천적 인권체험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방안

최형찬

(전북 설천고등학교 교사, ethchoi@hanmail.net)

학생생활지도의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다. 학생생활지도는 주로 학생지도부 교사의 고유한 영역으로 학생들의 복지, 고충처리보다는 비행학생사안을 해결하는 게 주가 되었다. 학생부 교사의 악명은 단위학교 교사 중 으뜸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아름다운(?) 전통은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권력”을 안겨주었다. 교사라는 이름만으로 무소불위의 합법적 폭력을 가능케 했다.

토론자는 십여 년의 짧은 교육경력 중 절반을 학생부장, 교내외 생활지도 등 학생부 업무를 맡았다. 5~6 년 전 ○○중학교에서 학생부 업무를 담당하던 토론자가 행사한 권력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등교시간 정문에서 등교생지도를 한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정문을 통과하고 규정을 위반 학생이 늘어간다. 1학년 학생이 실내화를 가지고 오지 않아 물어보았더니, 앞서간 3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의 것을 가져갔단다. 앞서간 학생을 소리쳐 부른다. 학생이 올 때 까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교사는 학생에게 달려가 발길질을 한다. 학생은 운동장 바닥에 나뒹군다. 주변학생들은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학생은 먼지를 툭툭 털며 일어난다.”

여기서 토론자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싶다. 하나는 교사의 교육적 폭력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와 학생의 생활인권의 문제이다.

먼저 교사의 교육적 폭력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란 말을 납득하지 못하듯이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폭력의 사용을 납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기위한 것인데, 폭력은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시민을 육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은 인권침해의 대표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는 교육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권위의 정당성을 권력의 정당성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권력과 권위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개념은 무력이나 강제와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권위의 개념은 도덕성, 동의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합법적이고 무제한적인 폭력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서 거부될 것이다. 최근 공교육 위기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토론자는 공교육 위기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가 비인권적인 교육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를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도덕성과 동의에 의해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찾아 교사와 학생이 상호소통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 된다. 왜냐하면 지식의 독점을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했던 시절은 지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인권 문제이다. 교사는 실내화를 두고 다니는데 학생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교사는 교사용 신발장에 실내화를 넣어두지 출퇴근시에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너무도 당연하게 학생들은 실내화를 신발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야 한다. 각 교실에 신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내화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교사가 만든 학생생활규정 때문이다. 생활규정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첫째, 실내화의 분실우려가 있으며 둘째, 운동화를 신고 건물 내에 드나들면 흙먼지가 많아져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 때문이다.

토론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3년 전 일본의 ○○고등학교와 교환학습을 한 바 있다. 교환학습을 다녀온 교장선생님의 소감 중 하나는 “일본학교에는 중앙 현관에 학생들의 신발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실내화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을뿐더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에 우리학교에도 현관에 신발장이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현관신발장의 용도는 일과시간에 운동장을 나갈 때 실내화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뿐 등하교시에는 여전히 실내화를 들고 다녀야 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교내에 신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은 실내화를 들고 다녀야 하는가?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 실내화를 소지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을 피교육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사례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담당부서의 명칭을 학생지도부가 아니라 학생인권(복지)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생활지도 담당부서는 더 이상 학생생활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부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 성장과 인권 향상을 돕는 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관련 결정례

(2001. 11. ~ 2006. 12.)

I. 학교 관련

1.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2002.9.9.)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할 것을 권고

2.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2002.10.28.)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2004.5.24.)

교원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2003.9.25.)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위헌결정 당시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들에 대하여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5.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2003.5.12.)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사례

6.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4.10.1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인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7.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2005.3.25)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사례

8. 2003.5.21.자 03진인26 결정[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9. 2005.6.27.자 05진차204의 2건 결정[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 [1]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임
- [2]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없음
- [3]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권고

10. 2005.8.31.자 05진인1055[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이의 방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 조치할 것을 권고

11. 2005.9.28.자 05진차517 결정[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12. 2005.9.28.자 05진차250 결정[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

- [1]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2] 위 [1]의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

13. 2006.6.28.자 06진인1030 결정[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향후 학생 징계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14. 2006.10.9.자 05진차100 등 병합 결정[**사회적신분(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임을 확인하고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대학 및 수시전형에서 어느 한 유형이라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었던 대학의 장에게 입시제도의 시정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에게도 시정 권고
15. 2006.8.29.자 04진차386 결정[**화교학교 학력 미인정 차별**]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화교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화교학교 출신학생이 한국학교로의 전·입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시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 권고

II. 장애 관련

1.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3.4.14)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결격사유와 재취득 제한규정, 초보운전자 관리 기간제도 등의 관련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경찰청에 개정 권고한 사례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004.4.26.)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에 있어 적용제외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2]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있어 자격검증을 거친 인력을 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권고한 사례

3. 2002.11.18.자 02진인1402 결정[**장애인 이동권침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도시철도공사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된 경우,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4. 2004.10.12.자 04진인1093 결정[**보도교설치관련 직권남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를 설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2.4.11.자 01진차1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1] 공무원 승진임용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의 의미
- [2]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상 우선적인 임용 대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

[3] 차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언론매체를 통한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4]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별행위가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직을 물러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출마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6. 2002.9.9.자 02진차2 결정[장애판정시 남녀차별]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등급을 상위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가 평등권 침해의 남·여 차별임을 인정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

7. 2003.6.30.자 01진차45, 02진차58, 103, 03진차7, 47(병합) 결정[운전면허 발급시 장애인 차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면허취득시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과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중 핸들조작의 합격기준은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진정한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권고

8. 2004.10.25.자 04진차115 결정[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제도개선 의견표명]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9. 2004.11.8.자 04진차53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1] 국립대학교에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정한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당해 대학교 근무성적평정치침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0. 2004.11.22.자 03진기675, 04진차17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1]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해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험시간연장, 컴퓨터 사용 등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 2004.2.16.자 03진차27 결정[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1]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례

12. 2005.6.20.자 04진차207의 8건 결정[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제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

13. 2005.3.28자 04진기95 결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점자선거공보의 규격을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격화한 규정 개정 권고

14. 2006.4.10자 06진차4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

○○○에서 운영하는 ○○○역, ○○○역, ○○○역은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층에 서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당 역사에서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바, 장애인들이 해당역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

15. 2006.12.11자 06진차411 결정[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아동을 승하차시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서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 개선 권고

III. 기 타

1.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2.10.)

- [1] 산업연수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도입 재권고 및 입법추구
- [2]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및 이를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개정
- [3]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기초자료 개발 및 번역

2. 민법 제778조(호주제)(2001헌가11 내지 15),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호주제)(2001헌가9,10)에 대한 의견(2003.3.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의견을 제출할 권한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호주제 사건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사례

3. 2002.7.31.자 01진차3 결정[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 [1]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 [2] 국제화·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소극)
- [3] 민간기업인이 특정 색깔의 제품에 '살색'이라는 표기를 부착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2002.7.11.자 01진차11 결정[원격대학수료자에 대한 차별]

-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 소정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생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2] [1]의 경우, 보건복지부장에게 동자격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5. 2002.5.23.자 02진차22 결정[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모집 과정의 차별행위]

- [1]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 [2] 대학당국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

6. 2004.8.16.자 04진인1581 결정[입국사증 발급불허관련]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허처분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7. 2004.11.8.자 04진인3883 결정[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회 임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하여 '무시험' '낙하산' 등으로 표현하고 피해자 측이 부정입학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는 언동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같은법 제59조 친절공정의무, 같은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권고한 사례

8. 2005.3.14.자 04진인3256 결정[○○중학교의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피해 학생의 담임과 교감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과할 것, 교장은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9. 2005.5.9.자 04진인4270 결정[스마트카드 학생증 강제 발급에 따른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 등 개선조치 이행,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

10. 2003.6.30.자 03진차5 결정 [성별에 의한 재화 차별]

안면에 흉터가 남은 휴유장애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 2003.11.17.자 02진차90, 02진차91, 02진차92, 02진차93 (병합) 결정[보건휴가 관련 평등권 침해]

- [1]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관계증빙서류 요구 등으로 사실상 보건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특별시교육감에게 보건휴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등에게 보건휴가 사용 제한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

12. 2004.6.28.자 03진차119 결정[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관련 평등권침해]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응시연령을 40세이하로 규정한 것이 연령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사례

13. 2003.9.15.자 03진차127 결정[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1]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 사례

14. 2004.3.22.자 03진차75, 85, 46 결정[기간제교원 고용차별]

[1] 기간제교원의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인들에 대한 미지급된 방학기간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

15. 2003.3.31.자 02진차80, 130 결정[성적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등 침해]

[1]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헌법상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규정 중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례

16. 2005.7.19.자 04진차355 결정[병력을 이유로 한 용역이용 차별]

한센인에 대한 방문정보화교육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므로 재발방지 권고

17. 2006.2.27.자 05진차540 결정[학력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등]

고등학교 졸업후 2년내에는 실업여자축구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선수선발규정은 여자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실업팀에 들어가려는 선수에 대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18. 2006.4.10.자 06진차59 결정[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진정인은 2006학년도 ○○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랍

19. 대학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대한 의견표명(2006.3.27자)

국회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보장범위를 일정 정도 조정할 수 있다.

IV. 주요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

□ 2003.5.21자 03진인26 결정[학교내 장애인 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내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임용·전보 및 입학·전학시에 ‘장애인등’에게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교육감 외 1인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교사 및 학생의 신규 임용·전보 및 입학·전학 시에 ‘장애인등’에 해당하는 자가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담임배정이나 교실의 배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시설에서도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년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가 약간 짧은 상태인 바, 지난 26년간 교사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시설이 없는 계단을 수도 없이 오르내려 퇴행성관절염을 앓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학교에 엘리베이터 등 이동시설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근무하는 ○○중학교는 2001년도에 설립된 학교로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시설을 상당부분 갖추었으나, 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

2.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자료, 위원회의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근무하는 ○○중학교는 ○○교육청이 2001년도에 설립한 공립중학교이며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등’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003. 4. 현재 5명이다(교원 3, 학생 2).

나. 진정인은 54세의 ○○과 ○학년 교사로서 본관동의 3층에 ○○과 연구실이 있으며, 같은 층에 있는 ○학년 학생들에 대한 주당 21시간의 ○○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1층 교무실에 가기 위하여 하루 4회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02. 11. ○○. ○○한방병원에서 관절염(슬통)으로 4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위 중학교는 설립 당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비교적 장애인편의시설을 잘 갖추었으나, 장애인 이동수단의 핵심시설인 승강기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6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체시설인 경사로도 없는 상태이다.

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학교의 경우 본관동과 교사동 2개 동의 건물 57개실 중에서, 본관동 1층에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정보실, 인쇄실 및 ○○반 교실이 있고, 교사동 1층에는 식당, 보건실, 각 교과별 연구실 등이 있어 1층에 있는 교실은 ○○반 1개 교실에 불과하다.

바. 장애인화장실은 각 층별로 본관동 4개, 교사동 5개 등 9개가 있으나 남녀용 구분이 없으며, 본관동과 교사동을 연결하는 통로의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경사로는 없는 상태이다.

사. ○○지역에 2002년도부터 신설된 학교는 장애자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설치학교 : ○○초동, ○○중, ○○여고, ○○고, ○○고).

5)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제1호.

3. 판 단

가. 진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상의 '장애인등'에 해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위 학교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시설은 비교적 설치가 잘 되어 있으나, 권장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체 경사로도 없는 상태인 바,

다. 다층 건물에서의 승강기 및 경사로는 '장애인등'에게 주요한 이동수단이며, 특히 지하 1층 지상 5층인 위 학교의 경우 보통사람들도 걸어 올라가면 힘이 들어 설사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절염을 앓고 있는 진정한 같은 경우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승강기의 설치는 위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를 전부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이외에 실제적으로 진정한을 포함한 '장애인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 즉 층간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1층 공간으로 교실을 배치한다거나 또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에의 우선적 배정 등이 함께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한이 근무하는 위 학교는 관련규정에서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및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에 해당하는 진정한이 위 학교의 시설이용 및 이동에 있어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5. 21.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

□ 2005.6.27.자 05진차204외 2건 결정[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장
 2. ○○고등학교장
 3. ○○중학교장

【주 문】

1.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공업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관행과 여학생의 머리를 묶지 못하게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학생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침해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공업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공업고등학교는 두발단속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고, 이 때문에 올해 신입생의 80%가 머리를 강제로 잘린 적이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고등학교는 학생의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고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어, 진정인의 경우 지금까지 7차례 머리를 잘린 적이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중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귀밑 5cm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머리를 묶으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는 바, 진정인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묶지 않으면 더 지저분하고 불편한데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업고등학교장의 주장

1) ○○공업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은 이전에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 5cm, 여학생의 경우 귀밑 3cm의 단발형이었던 것을 상당히 완화하여 2004년도부터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상의 칼라를 덮지 않아야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 상고머리형(장교형)으로 한다”, 여학생의 경우 “커트형,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지 않을 정도의 단발형으로 하되, 단발형이 아닐 경우 단정히 뒤쪽으로 묶어야 하며, 묶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지 않아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장의 방침에 의해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생활습관 여부에 따라 두발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학생들에게 현재의 학교 규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2) 그런데 학교 규정이 완화 및 자율화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여 현재 규정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두발과 복장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 및 학교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두발을 규정에 맞게 지켜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계속적으로 두발규정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차원과 학생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에 의해 문제가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입생의 80%가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공업고등학교는 2005. 5. 23.~2005. 5. 28. 기간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두발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나. ○○고등학교장의 주장

1) ○○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4cm이내, 뒷머리는 셔츠 깃을 덮지 않는 스포츠형으로 조발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두발검사는 전교사가 수시로 하며, 규정을 어긴 학생은 학생 스스로 규정에 맞게 자르도록 한 뒤 생활지도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두발검사시 규정을 어긴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관행은 없었으나, 간혹 교사에 따라 다른 교칙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자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바, 앞으로 가능한 한 학생 스스로 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

3) ○○고등학교는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2005. 5.경 대의원회의에서 학생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학부모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다. ○○중학교장의 주장

1) ○○중학교는 2004년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한 바, 두발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로 앞머리가 4cm, 여학생은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학생의 경우 귀밑 5cm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용의규정을 준수하여 머리가 단정하면 지도교사 및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 쉽게 래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교과지도 및 학습활동에서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둘째, 학생들의 머리가 길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학생들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른들의 용의와 행동을 모방하고자 하므로, 두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전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인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본교의 두발규정이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본교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지도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지도는 하지 않고 스스로 단정하게 자르도록 하고 있다.

4) ○○중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복장, 용의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관심거리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전반에 관련한 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가. ○○공업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공업고등학교의 두발규정,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아래 표 <2>를 보면, “두발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66.7%를 차지하고,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95.2%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공업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 ○○공업고등학교의 두발규정(2005. 4. 7. 현재)

용의복장규정 제4조(머리형태) 청결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1.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상의 칼라를 덮지 않아야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 상고머리형(장교형)으로 한다.
2. 여학생	
가. 커트형,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지 않을 정도의 단발형	
나. 단발형이 아닐 경우 단정히 뒤쪽으로 묶어야 하며, 묶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지 않아야 한다.	
다. 머리끈, 머리띠, 머리핀의 색깔은 검은색, 검색으로 하며 장식 있으면 안된다.	
3. 무스, 젤, 왁스, 스프레이, 헤어로션 등 어떠한 것도 바르지 않는다.	
4. 염색, 탈색, 퍼머를 금한다.	
5. 특수한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받는다.	

<표 2> ○○공업고등학교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5. 6. 7.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업고등학교 실시조사시 설문조사)

설문조항	답변	응답자 수(명)			전체(%)		
		1학년 (총32)	2학년 (총31)	전체 (총63)			
두발단속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	19	23	42	66.7 [42명/63명]		
	② 다음 날까지 자르고 오도록 하여 검사한다	20	19	39	61.9 [39명/63명]		
	③ 자르도록 주의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	0	0	0	0		
	④ 단속을 거의 안 한다	0	0	0	0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본인:37명, 친구:25명, 선후배:10명		29	31	60	95.2 [60명/63명]
	② 없다	3	0	3	4.8 [3명/63명]		

2) ○○고등학교의 경우

가) ○○고등학교의 두발규정,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아래 <표4>를 보면“두발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36.9%를 차지하고,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58.5%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고등학교에서도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표 3> ○○고등학교의 두발규정(2005. 5. 6. 현재)

학생용의복장규정 제2조(두발)	
①	앞머리는 4cm이내, 뒷머리는 셔츠 깃을 덮지 않는 스포츠형으로 조발한다.
②	삭발, 염색, 퍼머, 드라이어나 무스 등을 사용한 머리손질 및 가르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표4> ○○고등학교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5. 5. 30.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등학교 실시조사시 설문조사)

설문조항	답변	응답자 수(명)			전체(%)
		1학년 (총34)	2학년 (총31)	전체 (총65)	
두발단속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① 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	5	19	24	36.9 [24명/65명]
	② 다음 날까지 자르고 오도록 하여 검사한다	27	28	55	84.6 [55명/65명]
	③ 자르도록 주의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	2	3	5	7.7 [5명/65명]
	④ 단속을 거의 안한다	0	0	0	0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본인:21명, 친구:31명, 선후배:19명	10	28	38	58.5 [38명/65명]
	② 없다	24	3	27	41.5 [27명/65명]

나) 단, 진정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강제이발을 당한 적이 없고, 2005. 6. 1~2005. 6. 3. 기간동안 두발단속이 실시되었는데 이때도 강제이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현재는 ○○고등학교의 강제이발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학교의 두발규정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여학생의 경우 “머리의 길이를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 5> ○○중학교의 두발규정(2005. 4. 29. 현재)

학교생활규정 제52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두발)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파마, 염색, 고대 및 드라이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머리의 길이는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 -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로 앞머리가 4cm 이내로 한다.
③	혐오감을 주는 머리나 성인용 모양은 금하며, 머리에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다.(머리띠와 머리핀은 검정색 계통만 허용한다)
④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 젤리, 헤어크림, 헤어로션 등)사용을 금한다.

4. 판 단

가. ○○공업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위 3. 인정사실 기재 가.항의 내용과 같이 ○○공업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강제이발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두발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3)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강제이발은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써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학교생활규정과 절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곱슬머리 등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 ○○공업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위원장 조영황 위원 최영애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위원 김만흠 위원 나천수 위원 이해학 위원 최금숙

위원 신혜수 위원 원형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3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을 검토한 결과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주 문】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유】

I. 검토배경

1.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여 우수 학생을 선정한 후 교감과 교장이 선정된 각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해 시상학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본 위원회에 조회하였다.

2. 본 사안은 초등학교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많은 초등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초등학교 교육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였다.

II.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및 제18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및 제16조의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조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III. 판단

1. 일기검사의 현황과 목적

일반적으로 일기란 개인의 하루하루의 경험,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로서 주관적 사유와 양심을 내용으로 하는 내면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일기작성의 습관화, 생활반성, 쓰기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일기장을 관행적으로 검사해 왔으며, 일기검사를 통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도 이루어져왔다.

2. 기본권적 주체로서의 아동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통하여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내면적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과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아동기는 독립적 자아를 형성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이나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내면적 양심을 가진 권리의 주체이다.

3.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의 기본권 침해여부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일기장을 검사할 경우,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여 일기를 작성하게 되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이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양심형성에 교사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고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될 것이라는 불안을 제거하기 어려워 솔직한 서술을 사전에 억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일기의 본래 의미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아동 자신이 공개를 목적으로 일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학교가 아동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검사하고 나아가 시상할 경우 일부 아동에게는 일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공개를 아동 본인의 자발적 동의와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초등학교 일기검사의 교육적 목적으로 제시되는 일기작성의 습관화와 생활반성, 글짓기 능력 향상, 글씨공부 등을 살펴볼 때,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아동기에 일기쓰기를 습관화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며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할 교육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적 의미로서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되도록 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일기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글짓기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기검사를 통한 교육적 효과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기검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일기검사와 같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기검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검사·평가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기를 강제적으로 쓰도록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05. 3. 25.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4

□ 2005.9.28자 05진차517 결정[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출석부 번호 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진정요지

○○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대략 30번부터 부여하는 바,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II. 피진정인 주장요지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여학생에게는 41번부터 부여하면서, 각 성별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부여하는 바, 이는 다수 학생들의 남녀 구별관리 등 관리상 편리함 때문이다.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 순 등 기타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III.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출석부 번호 부여 시 남녀를 구별하여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여학생에게는 41번부터 부여하면서, 각 성별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부여하고 있다.

IV. 판단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이다. 피진정인은 학생관리의 편리함 때문에 성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성차별적 관행이 초래하는 폐해와 행정적 편의를 비교할 때 결코 행정적 편의가 우위일 수 없으며, 상시적인 성별 구분관리의 필요성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행정적 편리함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V.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8.

위원장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